



제18322호 2014. 8. 6.(수)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5530호(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5531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5533호(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56
○대통령령제25534호(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59
○대통령령제25535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0
○대통령령제25536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1
○대통령령제25537호(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2
○대통령령제25538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76
○대통령령제25539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78
○대통령령제25540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9
○대통령령제25541호(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82
○대통령령제25542호(주거급여법 시행령)	83
○대통령령제2554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86
○대통령령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중정정	90

【부 령 령】

○법무부령제822호(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91
○법무부령제823호(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92
○안전행정부령제87호(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3
○산업통상자원부령제73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2
○산업통상자원부령제74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4
○보건복지부령제254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109
○교육부령제43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162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24호(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162
---	-----

(이면 계속)

○법무부고시제2014-405호(국적회복)	163
○국방부고시제2014-214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64
○국방부고시제2014-215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65
○국방부고시제2014-216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65
○환경부고시제2014-131호(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166
○환경부고시제2014-132호(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	169
○환경부고시제2014-133호(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	171
○환경부고시제2014-134호(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	177
○환경부고시제2014-135호(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180
○환경부고시제2014-136호(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8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69호(신기술 지정).....	182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73호(신기술 지정중정정).....	183
○해양수산부고시제2014-88호(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184
○산림청고시제2014-61호(보전산지 지정)	184
○산림청고시제2014-62호(보전산지 변경지정)	185
○산림청고시제2014-63호(보전산지 지정해제)	185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1호(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개정)	187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2호(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88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3호(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일부개정)	190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81호(황해경제자유구역 포송지구 실시계획).....	19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79호(도로구역 결정<변경>)	225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6호(항로표지 설치<신설>)	22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6호(시설항로표지 폐지)	226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4-9호(항로표지 신설).....	2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0호(하천수사용 허가)	2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1호(하천수사용 허가)	22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4호(하천수사용 허가)	22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4호(하천수사용 허가).....	228
○부경대학교고시제2014-1호(부경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민자사업<BTL>)	229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7호(공시송달)	2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83호(금융투자업 등록).....	231
○법무부공고제2014-172호(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31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67호(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3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69호(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23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52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5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60호(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6
○병무청공고제2014-34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236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48호(의연금품 관리·운영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256
○문화재청공고제2014-224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지정)	25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47호(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25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5호(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25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4호(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26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5호(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26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6호(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263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8호(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263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43호(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264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4-138호(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264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76호(공시송달)	266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77호(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67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5호(공시송달)	267

【법 원】

○대법원규칙제2545호(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270
○대법원규칙제2546호(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271
○대법원규칙제2547호(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271
○대법원규칙제2548호(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72
○대법원규칙제2549호(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73
○대법원규칙제2550호(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274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4-10호(학교<광양남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275
○괴산군고시제2014-98호(철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토지 및 지장물)	278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	290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	293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293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8월 6일

국 무 총 리 정 흥 원

국 무 위 원
기 획 재 정 부 장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5530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10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 및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자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지출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만 선금(先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 대상을 넓힘으로써 소규모 공공조달 계약에 대한 참여비율이 높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국고금 관리 과정에서 수집·처리하는 납세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국고금 관리 대행기관인 한국은행 등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흥 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관
장 정 종 섭

●**대통령령 제25531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안전행정부장관(제62조제3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0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부터 피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차목(중전의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자.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2	600	1200	2400
-------------------------------------	-----------------	-----	------	------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 정도에 따른 산정기준액에 나목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다목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라목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위반 정도	산정기준액	비 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5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등”이라 한다)된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2억 3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일반 위반행위	1억원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나. 1차 조정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 2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추가적 피해 발생 여부,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산정

개인정보처리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분실·유출 등을 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8월 6일

- | | |
|-----------------------|-----|
| 국무총리 | 정홍원 |
|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 최경환 |
| 국무위원
미래창조
과학부장관 | 최양희 |
|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 |
|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 황교안 |
|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 한민구 |
|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 정종섭 |
| 국무위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 |
| 국무위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 이동필 |
| 국무위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 윤상직 |
|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 윤성규 |
|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 이기권 |
|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 김희정 |
|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 서승환 |
|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 이주영 |

●**대통령령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조(「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자는 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환급대행자는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제26조에 따른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4조(「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의 개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국장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직원의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연금관리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제42조의3으로 하고,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진흥재단은 법 제5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우편법 시행령」의 개정)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제9조의2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재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에 의한 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2. 법 제51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제6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 중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이용약관(요금 반환에 관한 내용만 해당한다)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

제10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제22조의4로 하고,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진술 및 청취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무

제11조(「전자서명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전파법 시행령」의 개정)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주과수할당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제13조(「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법 제4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제41조의3으로 하고,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제3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訴請審査)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 관리에 관한 사무

제18조(「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제28조의3으로 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에 따른 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54조의3에 따른 임명의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에 관한 사무

제19조(「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비용 등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06조의2”를 “법 제30조의4제2항 또는 이 영 제106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제104조의7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제42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학력심사의위원회는 제98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제98조의3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장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고등학교의 장은 제98조의4에 따른 고등학교 학년결정 및 입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민감정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로 하고, 같은 조 중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전사상 급여금의 지급과 법 제10조에 따른 보상 및 가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지휘에 관한 사무와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지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국적법 시행령」의 개정)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무소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4 및 이 영 제18조의4에 따른 복수국적자 통보 및 기록표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3항, 이 영 제2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18조의2제6항(제1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하는 통보에 관한 사무

③ 법 제14조의4에 따라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를 하거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자 통보를 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8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9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무

제28조(「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 관리기관 및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제1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제30조(「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의 개정)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치료감호법 시행령」의 개정)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무

제32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취업 승인이나 허가등의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허가등에 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허가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제5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34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장은 외부인의 교정시설 출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36조(「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제37조(「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9조(「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해군인 및 유가족의 위로를 위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군 간부에 대한 전세금 대부에 관한 사무

제40조(「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 숙소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사무

제41조(「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제42조(「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개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제43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제13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보칙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사무
4.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자에 대한 입찰 참가 통지에 관한 사무
5. 제23조에 따른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관한 사무
6.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한 사무
7. 제51조에 따른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무
8.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무
9.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제44조(「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66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67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 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72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87조에 따른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제10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5조(「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계측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에 따른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제46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제20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제47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의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제48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대책본부장(법 제10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49조(「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2.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제50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제66조의3으로 하고,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그 배우자 등이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에 그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 및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 취득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8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활용 및 자격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또는 지국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뉴스통신진흥회는 법 제16조 및 제25조제4호에 따른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26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 임원의 추천·임명의 권한이 있는 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재단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실적의 인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제3조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제53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비축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제3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판장의 개설자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승인에 관한 사무

제54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취약계층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제18조제2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55조(「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57조(「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8조(「식물방역법 시행령」의 개정)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9조(「양곡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이 영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및 판매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 및 정부매입가격과 산지(產地)가격의 차액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용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0조(「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마주등록 자격의 확인, 마주등록 취소 또는 마주활동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사 면허, 기수 면허 또는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제62조(「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제63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제64조(「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제22조제3호에 따른 광산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보조에 관한 사무
4.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제65조(「에너지법 시행령」의 개정)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6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5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8조에 따른 협회 또는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무
- ② 협회 또는 조합은 법 제3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7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제40조의3으로 하고,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리권자(제40조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8조(「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합은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의2 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으로 한다.

제69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제70조(「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1조(「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제31조의3으로 하고,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2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

제73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특정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보건소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신고·보고·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9.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및 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감염병의 방역·예방 조치에 관한 사무
11.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3. 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

제75조(「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76조(「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정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제7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주거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제78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79조(「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 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관한 사무

제81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제40조의3으로 하고,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묘지의 일제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 화장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장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관한 사무

11. 법 제2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에 관한 사무

15.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관한 사무

제82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제83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무

제84조(「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도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5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로 하고,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1조나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3, 제20조의3 또는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6조(「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회”를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제회(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의뢰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제2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사무

제88조(「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의 용자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무

제89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2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사무

12.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9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을 “고용노동부장관(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흉부 엑스선 사진의 보존에 관한 사무

8.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사업 및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91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19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치료보호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제92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93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제9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시설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확인에 관한 사무

제95조(「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96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3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고용 촉진 및 고용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관한 사무

제97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를 제87조의3으로 하고,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확인 및 등록사항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 3.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또는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 5.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 6.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태조사, 재무관리상태진단 등에 관한 사무
-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시책 수립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 ② 금융기관등은 법 제10조제4호 및 이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8조(「건축사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에 관한 사무
-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고에 관한 사무
-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따른 건축사 업무 수행 신고의 수리를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의 제한 사항 확인에 관한 사무
- 5.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신고에 관한 사무
- ② 건축사협회는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사업 및 자금의 용자를 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9조(「골재채취법 시행령」의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제40조의3으로 하고,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2. 법 제16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수리를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10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제50조의3으로 하고,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代土)보상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7항·제8항에 따른 채권보상에 관한 사무
 10. 법 제70조에 따른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1. 법 제71조에 따른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2. 법 제76조에 따른 권리의 보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14.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등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6. 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토지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1조(「교통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에 제1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법 제43조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56조의2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

제10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3호의4, 제6호의2, 제7호의2, 제7호의3, 제9호의2,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35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4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의3. 법 제49조의2 및 제49조의7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4. 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9조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무

제45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3조 및 제59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60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3조(「외국인토지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계약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 계속보유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제104조(「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관리센터의 이사장 또는 감사의 임면과 관련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5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성능시험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관한 사무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직무 정지 및 해임에 관한 사무
3. 법 제76조제1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무

제106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를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를 제121조의3으로 하고,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과 이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4에 따른 주택임차료의 보조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무
 4. 법 제46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7.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의 본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무
 10. 법 제63조제1항제8호 및 제16호의2에 따른 용자에 관한 사무
 11.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증 또는 보증이행에 관한 사무(보증 또는 보증이행 업무의 수행에 따른 채권행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2. 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무 중 보증 또는 보증이행에 관한 사무(보증 또는 보증이행 업무의 수행에 따른 채권행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 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 대지 신탁의 인수에 관한 사무
4. 제10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른 보증상품 가입을 위하여 보증 대상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협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법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⑤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7조(「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제108조(「항공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9조(「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재해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0조(「선원법 시행령」의 개정)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구직·구인등록기관 및 센터는 법 제109조에 따른 선원의 구직등록 및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의 구인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1조(「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사무
5. 법 제32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9. 법 제51조에 따른 어선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54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제112조(「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측량업의”를 “측량업의 등록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0조(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제11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4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6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7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8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9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0조(「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1조(「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성명·생년월일”로 한다.

제6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10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제66조의3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집행기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 단서에 따른 수상기의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66조에 따른 수신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③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요금 반환에 관한 내용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④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에 따른 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2조(「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12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 취소, 사업 정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무

제37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제125조(「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6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제18조의3으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법 제81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3항(법 제61조 및 제7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40조제1항(법 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53조제2항(법 제69조 및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법 제8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독·보고·검사에 관한 사무

② 조합등은 법 제46조 및 제67조(법 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7조(「공사채 등록법 시행령」의 개정)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법 제4조에 따른 공사채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8조(「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허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9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인정, 신고수리 또는 승인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소각·병합 명령에 관한 사무

제130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7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른 검사, 제재, 보고 및 자료 제출과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제22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조,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추천·제청·임명의 권한이 있는 자는 그 추천·제청·임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1조(「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2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고용 제한 또는 업무 위임·대리 제한의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3조(「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6호 중 “등록”을 “등록 및 자격시험 운영·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3조제3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사실 통보의 접수에 관한 사무

제102조제4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제2항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5. 제84조제6호에 따른 보험가입 조회에 관한 사무

제10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험회사등은 법 제84조, 제87조 및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8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4조(「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호예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부대업무에 관한 사무

제135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등을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겸업 업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사무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채용·고용 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등을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등을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6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제24조의2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1조의2제6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제한 확인에 관한 사무

제2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임원 등의 자격제한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 대리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④ 조합 또는 중앙회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 또는 제7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2. 「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

4. 「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제137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업무의 관리를 위한 법 제14조의4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상담·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신용카드회원등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출입국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6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교환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무

제138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위촉·추천·제청·임면의 권한이 있는 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9조(「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34조제2항제4호 및 이 영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도 기준 준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52조의2 및 이 영 제24조의4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의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제14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13호 중 “법 제134조”를 “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및 제143조”로, “공개매수신고서”를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문서, 철회신고서 및 공개매수결과보고서의”로 한다.

제387조의2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의2. 법 제145조에 따른 주식등 처분명령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1항제15호 중 “법 제147조”를 “법 제147조, 제150조”로,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대량보유 등의 보고, 위반 주식등의 처분명령”으로 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16호 중 “법 제153조”를 “법 제153조 및 제155조”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 및 의견표명 서면의”로 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17호 중 “법 제158조”를 “법 제156조, 제158조”로, “자료제출”을 “정정요구, 자료제출”로 한다.

제387조의2제1항에 제21호의2 및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40의2. 법 제435조에 따른 위법행위 신고·제보의 접수·처리·통지 등에 관한 사무

40의3. 법 제44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40의4.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제16호 또는 제17호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되는 관련 자료의 접수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41조제3호에 따른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및 소속 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88조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289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를 “제7호의2,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37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 중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조사·감리에 관한 사무

7의3. 법 제38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5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5항제2호 중 “법 제296조제6호”를 “법 제296조제3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304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309조에 따른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6항 중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관리·보고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관리·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323조의17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에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⑧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324조의8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⑨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법 제367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⑩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68조제5항제3호, 제87조제4항제3호, 제99조제4항제4호 또는 제10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직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⑪ 신탁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관리·처분·운용·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⑫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가 소속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에 필요한 사무

2.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⑬ 법 제387조제2항에 따른 회원은 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무로서 이영 제355조에 따른 이상거래를 방지·관리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1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제142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3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제144조(「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

제11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복지사업자는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제정·임명·추천·임면의 권한이 있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5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및 감독업무자를 포함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 사무에 한정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관한 사무
- 2. 법 제106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제146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흥 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 정 종 섭

●대통령령 제25533호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내주도록 하거나, 안전행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정보를 인사상의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3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안전행정부장관이 수집·관리하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는 임명·위촉하려는 직위 등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직후보자등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문 분야, 연락처, 현직 및 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주요 저서 및 논문, 자기 업무 실적 및 성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각종 평가 결과 등
2.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용)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이용할 수 있다.

제3조의3제1항(중전의 제3조의2제1항) 중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 등 공직후보자”를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등 공직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공무원 등”을 “공직후보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9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로, “공직후보자”를 “공직후보자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직후보자”를 각각 “공직후보자등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9조의3제4항”을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급히 인사사무를 처리하거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 제목 중 “공직후보자”를 “공직후보자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공직후보자”를 “공직후보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법 제19조의3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직후보자”를 “공직후보자등”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권한의 위탁)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② 대통령비서실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전행정부장관(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중 “공직후보자”를 “공직후보자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 수집·관리에 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 정종섭

●대통령령 제25534호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1조(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294의 2번지, 296의 1번지, 297의 1번지, 298의 3번지, 298의 6번지, 298의 7번지, 298의 9번지, 298의 10번지, 300의 4번지, 805의 5번지, 805의 6번지, 806의 4번지, 806의 7번지, 806의 15번지부터 806의 18번지까지, 807의 1번지, 807의 2번지, 808의 6번지, 809의 5번지, 810번지, 810의 1번지부터 810의 5번지까지, 811번지, 811의 1번지, 812번지, 813의 5번지부터 813의 8번지까지, 815의 11번지, 815의 13번지, 822의 7번지, 822의 8번지, 851번지, 852번지, 890의 4번지, 913의 15번지, 913의 16번지, 산82의 2번지, 산83의 6번지부터 산83의 9번지까지, 산85번지, 산86의 1번지, 산91의 3번지 및 산110의 15번지부터 산110의 17번지까지를 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의 22번지부터 산39의 24번지까지, 산39의 34번지, 산39의 35번지, 산39의 44번지, 산39의 48번지, 산39의 49번지, 산39의 54번지, 산39의 58번지, 산39의 85번지부터 산39의 87번지까지, 산42의 25번지 및 산42의 27번지를 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제2조(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12의 6번지, 112의 7번지, 113의 5번지, 113의 6번지, 114의 2번지, 114의 4번지, 114의 6번지, 114의 9번지부터 114의 11번지까지, 115의 1번지부터 115의 3번지까지, 116의 1번지, 116의 4번지, 116의 5번지, 116의 7번지, 117의 11번지, 465의 35번지 및 산33의 9번지부터 산33의 11번지까지를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의 3번지부터 8의 5번지까지, 19의 1번지, 19의 2번지, 19의 6번지부터 19의 8번지까지, 20의 1번지, 24의 3번지, 24의 4번지, 25번지, 25의 1번지부터 25의 6번지까지, 26의 1번지부터 26의 3번지까지, 27의 8번지, 27의 11번지부터 27의 13번지까지, 474의 2번지, 475의 1번지, 산1의 7번지, 산1의 10번지, 산1의 11번지, 산10의 1번지, 산11의 2번지, 산11의 9번지부터 산11의 11번지까지 및 산11의 13번지부터 산11의 15번지까지를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③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1의 5번지, 산29의 3번지, 산30의 2번지, 산30의 3번지, 산32의 3번지 및 산32의 4번지를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고시·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군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군 지역은 변경되기 전 군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충청북도혁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음성군에 속하는 일부지역을 진천군으로 편입시키고, 진천군에 속하는 일부지역을 음성군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흥 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관
장 정 종 섭

●대통령령 제25535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表示燈)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디지털 광고 등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금지된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한 광고를 2018년 6월 30일까지 택시 윗부분의 택시 표시등(表示燈)에 시범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범운영의 지역·기간, 표시방법 및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흥 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장 정 종 섭

●대통령령 제2553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지역본부장”을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및 제6조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3. 재원 확보 방안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시설, 우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역의 주변 여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4. 재해 저감 방법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투시설

- 가. 침투통
- 나. 침투측구
- 다. 침투트렌치
- 라. 투수성 포장
-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2. 저류시설

- 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 나. 운동장저류
- 다. 공원저류
- 라. 주차장저류
- 마. 단지내저류
- 바. 건축물저류
- 사. 공사장 임시저류지
- 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 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5조의3 중 “법 제35조제1항제12호”를 “법 제35조제1항제14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본부장”을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 본부장”이라 한다)”을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및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본부장”을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

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검토서 작성”을 “검토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 업무
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대행자 실태 점검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

·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경력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5. 법 제40조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6.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 10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4. 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32조의5(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5. 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의2제1항 전단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시·도 본부장”을 “시·도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도 본부장”을 “시·도대책본부장”으로, “시·군·구 본부장”을 “시·군·구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시·도 본부장”을 “시·도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도 본부장”을 “시·도대책본부장”으로, “시·군·구 본부장”을 “시·군·구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 본부장”을 각각 “시·도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역본부장”을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지역본부장”을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지역본부장”을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
2.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1조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중 “지역본부장”을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補修教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65조 중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50명”을 “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73조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시·도 본부장”을 “시·도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제58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행자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4. 법 제65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제74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2015년 1월 1일
3.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32조의4에 따른 확인·점검의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절차: 2015년 1월 1일
6. 제5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유출저감대책에 포함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인력의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5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별표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소방방재청장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라.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

가.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아래 1)의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 대행자 업무 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필수인력과 다른 종목 또는 전공 분야의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다. 여러 분야의 대행자 업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2개 업무 분야까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필수인력 확보기준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2명 이상(지진 부문의 비상 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등록 할 때에는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이상	토질 및 기초공학, 수자원공학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전공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 나. 이 표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비고: 필수인력은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과 토질 및 기초공학 분야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할 때에는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2)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림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 및 교통공학, 농업토목공학, 지질 및 지반공학, 산림공학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전문대학에서 전공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토목공학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이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도시계획학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림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 및 교통공학, 상·하수도공학, 건설안전공학, 농어업토목공학, 산림공학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회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토목공학
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도시계획학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회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공학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회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도시계획학
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 및 교통공학, 상·하수도공학, 건설안전공학, 농어업토목공학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회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공학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회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도시계획학

마)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림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 및 교통공학, 상·하수도공학, 건설안전공학, 농어업토목공학, 산림공학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회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토목공학

바)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 부문)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4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만 및 해안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해안항만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공학, 건설안전공학, 농어업토목공학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회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토목공학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건설안전기사,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회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공학, 건축공학,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공학, 도시계획학

사)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 부문)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4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철도기술사, 가스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사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구조공학, 건축구조공학, 도로 및 교통공학, 해안항만공학, 전기공학, 철도공학, 가스공학, 건설안전공학, 정보통신공학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회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공학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토목기사, 전기기사, 가스기사, 정보통신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회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토목공학, 건축공학, 철도공학, 전기공학, 가스공학, 정보통신공학

◇개정이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특별시장 등은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1993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특별시장 등이 매년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에 포함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보유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기술인력에 대하여 보수교육(補修教育)을 받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등(제16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확보 방안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제32조의5 신설)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자격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제41조의3 신설)

정부가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보유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제58조제4항 신설)

기술인력을 갖추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그 기술인력이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관
장 정종섭

●대통령령 제25537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명씩 추천하는”을 “추천하는”으로 한다.

제2장에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방향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의3(지진방재정책심의회 구성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방재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지진방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한다.

⑤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심의회”로 본다.

제9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본부장”을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장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범위 및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정보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4. 대피안내요원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5. 대피소와 대피로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6. 표지판과 대피안내지도 등의 제작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낮아진 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⑦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피소 및 대피로의 관리
2.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3. 대피안내지도의 비치 및 배부
4. 경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대피안내요원의 지정 및 관리
6. 대피훈련의 실시 및 홍보

7.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의 기록 관리

8.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점검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② 법 제14조제1항제3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설비를 말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가.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나. 지반분류

다.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라.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마. 설계지진 분류체계

바. 내진등급 분류체계

3. 그 밖에 시설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2001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지진방재정책심의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제8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하는 지진방재시행계획에는 소관 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방향,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지진방재정책심의회 구성 등(제8조의3 신설)

지진방재정책심의회 위원장은 소방방재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부 및 기상청 등 9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함.

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등(제9조의2 신설)

지역대책본부장은 과거에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 이주영

●대통령령 제25538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납입할”을 “납입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업적·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장려하고 농어업경영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및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허위로 영농·영어조합법인이나 농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부당한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조합원 및 설립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그 설립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출자금을 불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영어조합법인 설립 시 납입할 출자액이 아닌 납입한 출자액을 등기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553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제43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공제는 제1항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산업단지 입주업종 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증설을 위하여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부하여야 하는 지가 차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의 종류 추가(제6조제2항)

- 1) 현행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연구개발업 등 13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제조업과의 융합·연계효과가 높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일부 지식산업의 입주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등 7개 업종의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추가로 허용함에 따라 산업시설구역 내 관련 산업간의 융합이 활성화되고 입주업종의 고도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단지 내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산업용지 등 기부 부담의 완화(제43조의2제3항 신설)

- 1)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을 위하여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차액을 기부하는 동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음.
- 2)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차액을 기부받을 때 입주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그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범위에서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흥 원

국무위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윤 상 직

●대통령령 제2554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법 제11조의3제1항”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의5제1항 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법 제11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6 및 제1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의7(독촉)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중전의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법 제11조의3제1항 및 법률 제1260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1억원 미만	20%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0%
100억원 이상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9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법 제11조의3제2항(법 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11조의3제2항(법 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100만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되, 부과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부가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비용이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3퍼센트(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재부가금 산정 시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에 따라 단일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재부가금의 부과율 변경】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현 행	개 정 안
1억원 미만	20% 이상 40% 미만	20%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 이상 60% 미만	4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0% 이상 80% 미만	6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0% 이상 100% 미만	80%
100억원 이상	100% 이상 150% 미만	100%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흥 원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윤 성 규

●대통령령 제25541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6명의 위원으로”를 “20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로, “광역시·도”를 “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무위원회의”를 “실무위원회”로, “11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하는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됨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두는 자문위원회가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 및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때 세종특별자치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하는 주민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산업계 대표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씩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거급여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흥 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 서 승 환

●대통령령 제25542호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법 제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4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月借賃)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

2.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주거급여의 일부(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중지

③ 보장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주거급여를 재개(再開)한다.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수급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한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가.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수급자 및 임대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을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급여의 중지 또는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제12333호 주거급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상 필요한 준비행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제1호 또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하고, 주거급여의 범위, 임차료·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 및 신청조사·확인조사의 대상 등 주거급여의 실시상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 주거급여의 중지 및 금융정보 등의 요청·제공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제2조)

주거급여의 수급권자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이거나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등으로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또는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하여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나.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제3조 및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보장기관 등은 임차료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신청조사 및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또는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제4조)

1) 수급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하여 주거급여 중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

2)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받은 수급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하거나 연체된 월차임 전부를 지급한 경우 등에는 주거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주거급여를 재개하도록 하여 주거급여 재개 사유를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8월 6일

국 무 총 리 정 흥 원

국 무 위 원
국 토 교 통 부 관
장 서 승 환

●대통령령 제2554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제1호”를 “법 제17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3조의7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을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으로, “법 제16조제4항”을 “각각 법 제1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사항이 교통 분야에 한정된 사항이거나 특별히 교통 관련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인 경우를 말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1항제7호”를 “법 제33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7항제3호”를 “법 제36조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학부속병원 및 수련병원의 교육용 시설물”을 “교육을 위한 강의실·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6조제7항”을 “법 제36조제8항”으로 한다.

- 5의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병원·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 중 “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으로, “법 제36조제7항”을 “법 제36조제8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부과대상 시설물”을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의 경감률”을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로 한다.

-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8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구청장”을 “구청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경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8조를 적용할 때 “시장”은 “구청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직권 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및 제110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부담금 경감률(%)
1. 주차수요 관리	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	종사자 및 이용자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10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	20
	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	종사자 및 이용자	주차요금 부과	5
			동일지역(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10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20
	다. 주차면수 감축 비율	시설물 소유자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라.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	시설물 소유자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20	

	마.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정보공유	시설물 소유자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0
			주차정보 제공	5
2. 대중교통 이용 촉진	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종사자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2
			월 4회 이상 운영	5
	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	전체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10
			전체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20
	다.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0
3. 승용차 수요 관리	가. 10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10
	나.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			20
	다. 2부제			30
	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	종사자 및 이용자	승용차 1대 운행	2(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3(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마. 승용차 함께 타기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5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	10
			40퍼센트 이상 참여	15
4.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	상시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5
			20퍼센트 이상 참여	10
5. 시차 출근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 출근	종사자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참여	5
			80퍼센트 이상 참여	10
6. 자전거 이용	상시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10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참여	20
			30퍼센트 이상 참여	30
7. 통근버스 운행		종사자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10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20
8.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시설물 소유자	매월 2일 이내 시행	5
			매월 3일 이상 시행	10

9. 경차 주차구획 운영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시설물 소유자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비고

1.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ext{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times (1-b) \times (1-c)] \times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중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은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가.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인 경우

$$\text{감축 비율} = [1 - (\text{해당 연도 주차면수} / \text{기준 연도 주차면수})] \times 100(\%)$$

나.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인 경우

$$\text{감축 비율} = [1 - (\text{해당 연도 주차면수} / \text{기준 주차면수})] \times 100(\%)$$

※ 1) “주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 시설”이란 시설물 건축 이후에 주차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 시설을 말하며,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이란 주차상한제 지역에서 신축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준 연도 주차면수”란 2010년 1월 1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수를 말한다.

3) “기준 주차면수”란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면수를 말한다.

◇개정이유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2016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교육을 위탁한 수련병원 및 수련한방병원 등의 강의실·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되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련병원 및 수련한방병원 등의 강의실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대학부속병원의 강의실·실험실습실 등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제도와 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교육을 위탁한 수련병원·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나.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명시(제36조 신설)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직권 조정에 관한 사항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

<p>제100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 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p> <p>1. ~ 7. (생략)</p> <p>8. 법 제35조에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p> <p>9. ~ 42.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100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p> <p>② ----- ----- ----- -----..</p> <p>1. ~ 7. (생략)</p> <p>8. 법 제35조에 따른 ----- -----</p> <p>9. ~ 42. (생략)</p> <p>③ ~ ⑤ (생략)</p>	<p>관보 제18305호 제84쪽 제4행</p>
---	--	--------------------------------

부 령

● **법무부령 제822호**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인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각급 검찰청의 장과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제245조의3 및 이 규칙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수사절차에의 참여 및 관련 서류의 검토 등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와 수사절차에의 참여 및 관련 서류의 검토 등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823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6일

법무부장관 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중전의 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 등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업무
-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청구,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관리, 검색·회보, 삭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
-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제11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업무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사건의 처리 등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및 보호사건에 관한 업무
- 9. 「소년법」 제49조에 따른 검사의 송치, 같은 법 제49조의2에 따른 검사의 결정 전 조사, 같은 법 제49조의3에 따른 조건부 기소유예 등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업무
- 1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보상,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무죄재판서의 게재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업무
- 11. 그 밖에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같은 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이 수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 등 법령에서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안전행정부령 제87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지역대책본부장은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4(중전의 제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를 “영 제15조”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시·군·구 고시 제 호

주민대피지구의 지정(해제) 고시

「지진재해대책법」 제10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주민대피지구 지정(해제)			주민대피소			지정(해제) 사유	비고
명 칭	위 치	침수 예정 면적(ha)	명 칭	위 치	수용인원 (명)		

210mm×297mm[일반용지 80g/㎡(백상지)]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관리번호	
------	--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지구명 :)

지방자치단체명

주민대피지구 개요

(제2쪽)

주민대피지구명		위 치	
침수예정면적(ha)		가구수 / 인구(명)	/
재해약자(명)		고시번호	
지정일자	년 월 일	비 고	

대피장소

명 칭	위 치	수용인원 (명)	해발고도(m)	해안으로부터 대피장소까지 거리(m)

표지판

구 분	위 치	규격(cm)	설치일자	비고

※ 구분: 대피안내 표지판,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재해약자 관리

(제3쪽)

성 명	주 소	연 령	성 별(남, 여)	대피안내요원	비고
				○○○(이동전화번호)	

 대피안내요원 지정

구 분	대피안내요원	주 소	지정일자	비고
	○○○(이동전화번호)			

※ 구분: 재해약자, 대피장소, 대피로, 병원, 해수욕장, 관광지 등 충분한 대피안내요원 지정

경보시설 관리

(제4쪽)

장비명	위 치	설치일자	관리책임자	비고
			정: ○○○(이동전화번호) 부: ○○○(이동전화번호)	

유관기관·민간단체·군부대 등 지원체계

기관·단체명	지원내용	업무 담당자		비고
		기관·단체	지방자체단체	
		○○○(이동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위치도 및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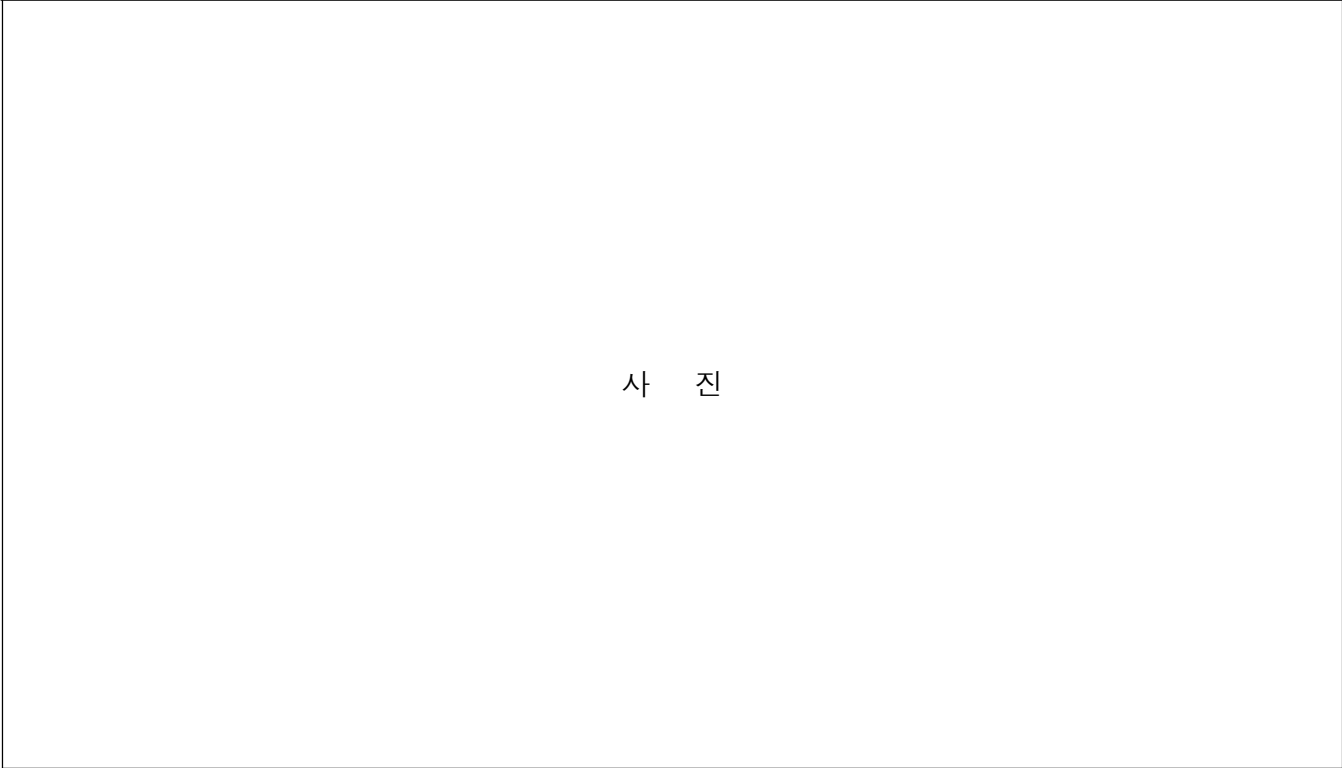
<지구 위치도>



※ 침수구역, 대피장소, 대피로 표시

<지구 전경>

(제5쪽)



<대피장소 전경>

사 진	사 진
○○ 대피장소	○○ 대피장소

사 진	사 진
○○ 대피장소	○○ 대피장소

<표지판 전경>

(제6쪽)

사 진	사 진
○○	○○

사 진	사 진
○○	○○

※ 대피안내 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의 위치 기재

조사·점검(확인) 및 조치사항

일자	점검(확인)결과	점검자(서명)	조치사항	확인자(서명)

※ 대피장소 및 대피로, 표지판, 경보시설, 재해약자, 대피안내요원 지정 등

조사·점검(확인) 및 조치사항

(제7쪽)

일자	점검(확인)결과	점검자(서명)	조치사항	확인자(서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정된 주민대피지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537호, 2014. 8.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주민대피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위치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며, 지정된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및 제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재부가금의 부과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재부가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각 1명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산업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을 “영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의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재부과금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영 제35조에 따른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업자”라 한다)로 한다.

⑥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의4제1항 중 “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기관(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에너지 관리자	부서	성명	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팩스번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1.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구분	에너지원	단위	()년도 사용량 실적					()년도 사용량 계획									
			고유단위		toe ^주			고유단위		toe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연료	B-C유	kl															
	()	()															
	()	()															
	()	()															
	소계	toe					1)										3)
전력	수전전력	천kWh					2)										4)
	자가발전	천kWh															
	판매전력	천kWh															
계	toe					1)+2)										3)+4)	
원료용 에너지	()	()															
	()	()															
	소계	toe															

주) toe(tonnage of oil equivalent)란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2. 에너지절약 실적 및 계획

(제2쪽)

구 분	대책사항	공정 및 설비	에너지원	연간 절감량		절감액 (천원)	투자비(천원)		투자완료	
				고유단위	toe		용자	자체	년	월
() 년도 절약 실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 년도 절약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주) 투자완료 시점에 해당하는 분기에 기재(다만, 절감량은 1년치에 해당하는 연간 절감량을 기재합니다)

3. 주요 에너지사용설비^{주1)} 현황

설비명	형식	용량	단위	대수	()년도 에너지사용량		설치연도	효율(%)	용도
					에너지원	사용량 고유단위 toe			
열사용 <small>주2)</small>									
전기사용									
수송									

주1) 열·전기사용설비의 경우 해당설비군의 에너지사용량이 총 에너지사용량의 5%이상인 설비만 기재합니다.

주2) 보일러, 요(窯), 로(爐)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4. 발전설비

(제3쪽)

발전방식	용량(kW)	총발전량(천 kWh)	()년도 에너지사용량			설치연도
			에너지원	사용량		
				고유단위	toe	

5. 주요 수·배전용 변압기

계약전력(kW)	최대부하(kW)	용량(kVA)	대 수	설치연도

6. 대지 및 건물 현황

(제4쪽)

대지 현황	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건물 현황	준공연도		층수(층)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난방면적(m ²)		냉방면적(m ²)	
단열 현황	구분	지붕	전후벽	측벽	바닥	창문
	단열두께(mm)					이중창률 (%)
냉·난방 현황	연간난방일수(일)		평균난방실내온도(℃)			
	연간냉방일수(일)		평균냉방실내온도(℃)			
냉·난방방식	난방방식		냉방방식			
절약형설비						

7. 제품별 에너지사용실적 및 계획(해당 사업장만 기재합니다)

구분	생 산 품 명							
단 위								
() 년 도 실 적	생산능력							
	생산량							
	연료(toe)							
	전기(천kWh)							
	생산액(백만원)							
	연료비(백만원)							
() 년 도 계 획	전력비(백만원)							
	생산량							
	연료(toe)							
	전기(천kWh)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도록 하고 도입한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료 및 전력 등 에너지의 연간 사용량이 기준량 이상인 자는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사적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대상을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석유환산톤(toe) 이상인 자로 정하고, 분기별 신고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량 신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5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의13서식, 별지 제20호의15서식 및 별지 제20호의16서식을 각각 별지 4부터 별지 6까지와 같이 한다.

제6조(「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 7부터 별지 15까지와 같이 한다.

제7조(「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16 및 별지 17과 같이 한다.

제8조(「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8과 같이 한다.

제9조(「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19 및 별지 20과 같이 한다.

제10조(「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의 개정)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21과 같이 한다.

제11조(「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 22부터 별지 26까지와 같이 한다.

제12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 27부터 별지 35까지와 같이 한다.

제13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 36부터 별지 39까지와 같이 한다.

제14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0과 같이 한다.

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 41 및 별지 42와 같이 한다.

제16조(「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43과 같이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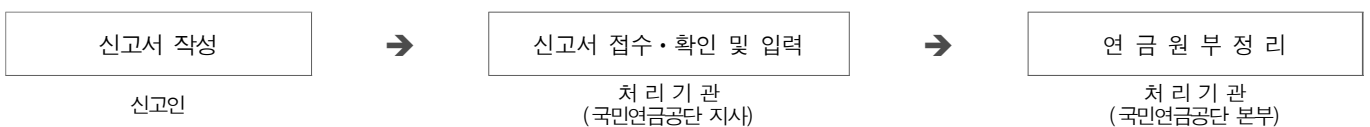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신고인의 경우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 종별”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급여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소멸사유 발생일”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의 발생일로서 사망일, 사망추정일, 재혼일, 입양일 등을 적으십시오.
※ 사망추정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을 말합니다.
5. “소멸사유”란에 열거된 사유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시고, 소멸사유가 ‘기타’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6. “사망추정 경위”란은 소멸사유가 사망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적으십시오.

처리 절차



[별지 2]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면허증(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	-----	-----	------	----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우편번호 : -)		
면허증(자격증)번호		면허증(자격증) 취득 연월일	
신청 사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면허증(자격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본증명서(성명 변경시)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 가로 3cm, 세로 4cm) 2장 ※ 신청인의 주소는 우송받을 수 있는 현재의 주소지로 할 것	수수료 : 수입인지 2,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증 대 조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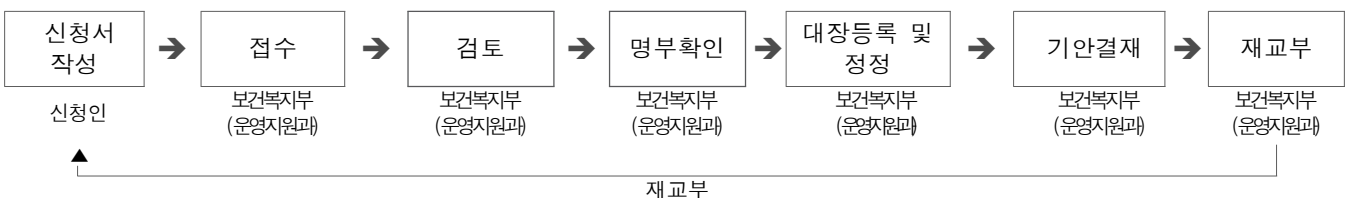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별지 3]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기재)
	주소 (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시설 설비	거실	m ²	사무실	m ²	상담실	m ²
	도서실	m ²	오락실	m ²	의무실	m ²
	목욕실	m ²	세탁실	m ²	조리실	m ²
	프로그램실	m ²	자활사업장	m ²	강의실	m ²
	자원봉사자실	m ²	운동장	m ²	창고	m ²
	대지	m ²	기타	m ²		

직원	총 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예산	수입 총액	지출 총액
	명	명		원	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유·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사본 1부(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인

시·군·구(노숙인사업 담당 부서)

[별지 4]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3서식]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중앙 []지역)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기관 개요	시설의 명칭(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기관의 장 성명 생년월일
	설치 연월일

설비	사무실 m ²	상담실 m ²	프로그램운영실 m ²
	기타		

직원	총인원 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사회복지사 자격 이외 전문자격 소지자 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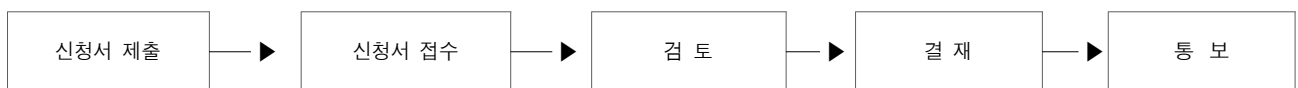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1부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1부 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1부 5.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보건복지부, 시·도(노인복지담당부서)

[별지 5]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5서식]

**[]기관의 장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소재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기관	명칭			
	기관의 장 성명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기관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계획			
	소재지 (시설의 구조)	현재		
변경 후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1.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1부 2. 변경사항에 따른 서류 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 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 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각 1부 다. 소재지(구조)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 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별지 6]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6서식]

(앞 쪽)

제 호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영한 것)

성 명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60mm × 90mm [백상지 120g/m²]

(색상: 연하늘색)

(뒤 쪽)

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7에 따른 노인학대행
위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이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7]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의 료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모자보건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상자	구 분	[] 임산부 사망 [] 사산 [] 신생아 사망		
	성 명 (사산은 모의성명)	성 별 [] 남 [] 여 [] 불확실		
	생년월일(사산은 모의 생년월일)			
	주 소			
	사망·사산일	사망·사산장소 [] 의료기관 [] 병원이송 중 사망 [] 주택 [] 기타		
임신주수·체중 및 사망·사산 원인	임산부 사망	사산		신생아 사망
	임신()주 또는 분만 후 ()일, 주	모체측 원인	태아측 원인	신생아측 원인
		임신()주 사산 사산시()g	임신()주 사산 사산시()g	임신()주 출산 출생 시()g
	진단1 : _____ (질병코드 : _____) 진단2 : _____ (질병코드 : _____)			
* 복합사인의 경우 추가진단명 [(진단3: _____ (질병코드 : _____))] 등 기재 가능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8]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 보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 상 자						임신주수·체중 및 사망·사산원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사망사상일	사망사상장소	임신주수 및 체중	사망·사산원인			
								임산부·모체		태아·신생아	
1.임산부 2.신생아 3.사산	* 사 산 은 모의 성명	남, 여 불확실	*사산은 모의 생년 월일		- 년 - 월 - 일	1.의료기관 2.병원이송 중 사망 3.주택 4.기타	1. 임신 _주 또는 분만 후 _ 일, 주 2. 임신 _주 출산 출생시 _ g 3. 임신 _주 사산 사상시 _ g	진단1	진단2 ~ 진단3	진단1	진단2 ~ 진단3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9]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성명(출생아 모)		생년월일(출생아 모)	
주 소		전화번호	
분만기관명		분만일	
임신관련 정보	보조생식술 여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다태아 여부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생 시 아기 체중 g	임신기간 임신 ()주 ()일에 분만(최종월경일)	
분만 시 발견된 선천성이상아 소견	진단1: _____(질병코드: _____) 진단2: _____(질병코드: _____) *복합사인의 경우 추가진단명[(진단3:____, (질병코드:____)] 등 기재 가능	그 밖의 참고사항	

「모자보건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장 (서명 또는 인)

(요양기관기호:)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별지 10]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앞 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카드

임산부(영유아) 성명		생년월일	배우자(보호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사회보장 여부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				
공적부조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산전진찰 회	진찰장소		특기사항(임신증독증)	
	<input type="checkbox"/> 병원급 이상 <input type="checkbox"/> 의원 <input type="checkbox"/> 조산원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분만기관명 (전화번호:)				
임신관련 정보		보조생식술 여부 <input type="checkbox"/> 체외수정 <input type="checkbox"/> 인공수정		다태아 여부 <input type="checkbox"/> 단태아 <input type="checkbox"/> 쌍태아 <input type="checkbox"/> 삼태아 이상
임신험수 회		분만경험 <input type="checkbox"/> 미숙아 <input type="checkbox"/> 저체중아 <input type="checkbox"/> 선천성이상아 <input type="checkbox"/> 출생 <input type="checkbox"/> 유산(자연, 인공) <input type="checkbox"/> 자궁 외 임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분만 시 아기 상태	체중 g	임신기간 ()주 ()일		분만상태 <input type="checkbox"/> 정상분만 <input type="checkbox"/> 제왕절개

선천성이상 소견

「모자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카드임.

년 월 일

등록인 (서명 또는 인)

(뒤 쪽)

등록관리 기록

일자 (월일)	개월 (월령)	신장 (cm)	체중 (g)	건강상태 및 건강 진단 결과	가정방문 및 관 리내용	보육기·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등	기관명

예방접종 기록

예방접종별 접종일	결 핵 (BCG)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 해 혼합백신 (DTaP)	소아마비 (Polio)	B형 간염	홍역·볼거리· 풍진 혼합백신 (MMR)	기타	접종자 성 명
월 일(주)							

주소지 변경기록

주소 이동 기록	제1이동	
	제2이동	
	제3이동	

[별지 11]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 보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출생아 모		주소 (전화)	분만 기관명 (요양기 관기호)	분만 일	보조생 식술여 부		다태아 여부			출생 시 체중 (g)	임신 기간 (주)	분만 시 발견된 선천성이상아 소견		기타 참고 사항
					체 외	인 공	단 태 아	쌍 태 아	삼 태 이 상			진단1	진단2 (진단3)	
성명	생년 월일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12]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개원연월일	정원(임산부/영유아) 명 / 명					
시설 설비 내역	임산부실	m ²	영유아실 m ²				
	모유수유실	m ²	급식시설 m ²				
	세탁실	m ²	목욕실 m ²				
	화장실	m ²	사무실 m ²				
	그 밖의 시설		m ²				
	설비내역						
직원	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취사부	미화원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 × 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뒤 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합니다) 사본 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모자보건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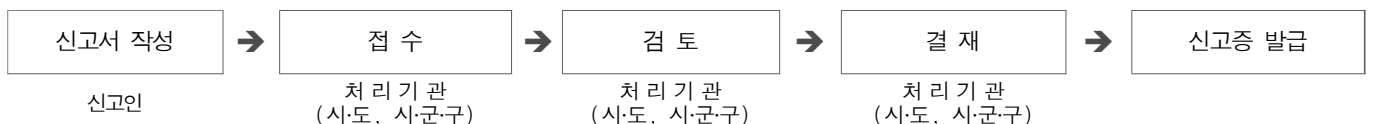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별지 13]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

업소 정보	명칭		
	신고일	신고번호	
	교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물 내역	영업장 면적	건물층수	사용층수
	m ²	층	지상 층/지하 층
건물 소유 구분 [] 자가 [] 임대, 대지면적 : 건물면적 :			
<신고·변경신고·행정처분 내역>			
년월일	내 용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14]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영유아 건강기록부

이름(산모)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분 만 일		출생 시 몸무게							입 원 일							
재원일(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총수유량 (cc)	체 중(g)	아래 해당 항목의 숫자를 보고 영유아의 당일 총수유량과 체중을 각각 표기														
760	7600															
720	7200															
680	6800															
640	6400															
560	5600															
520	5200															
480	4800															
440	4400															
360	3600															
320	3200															
280	2800															
240	2400															
체 중(gm)																
모유수유 횟수																
조제분유 수유량																
1일 대변 횟수																
1일 소변 횟수																
1일 구토 횟수																
체 온																
그 밖의 사항																

* 별지를 사용하여 추가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별지 15]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신고서**
 []재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개요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휴업 또는 재개일

년 월 일

폐업·휴업 또는 재개 사유	
입원자 조치계획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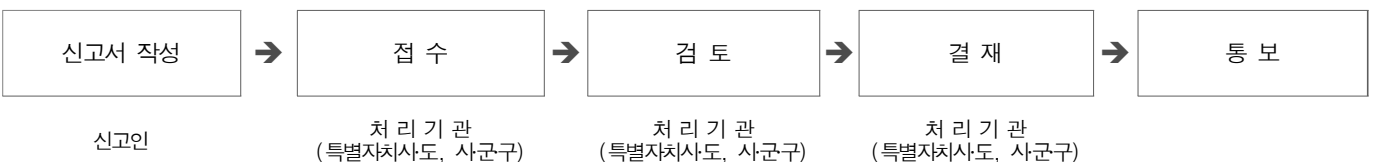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산후조리원 신고증(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폐업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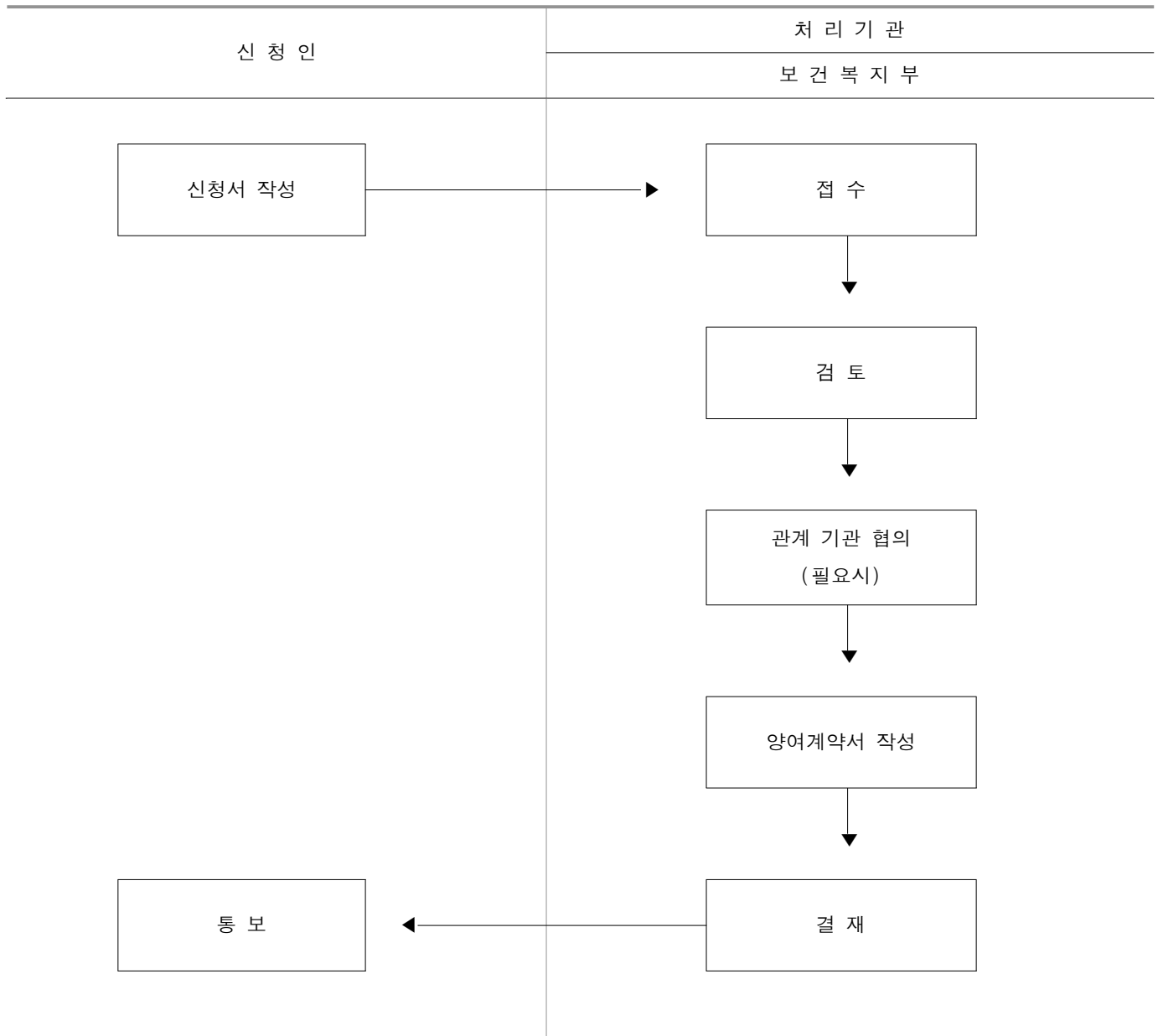
처 리 절 차



(뒤 쪽)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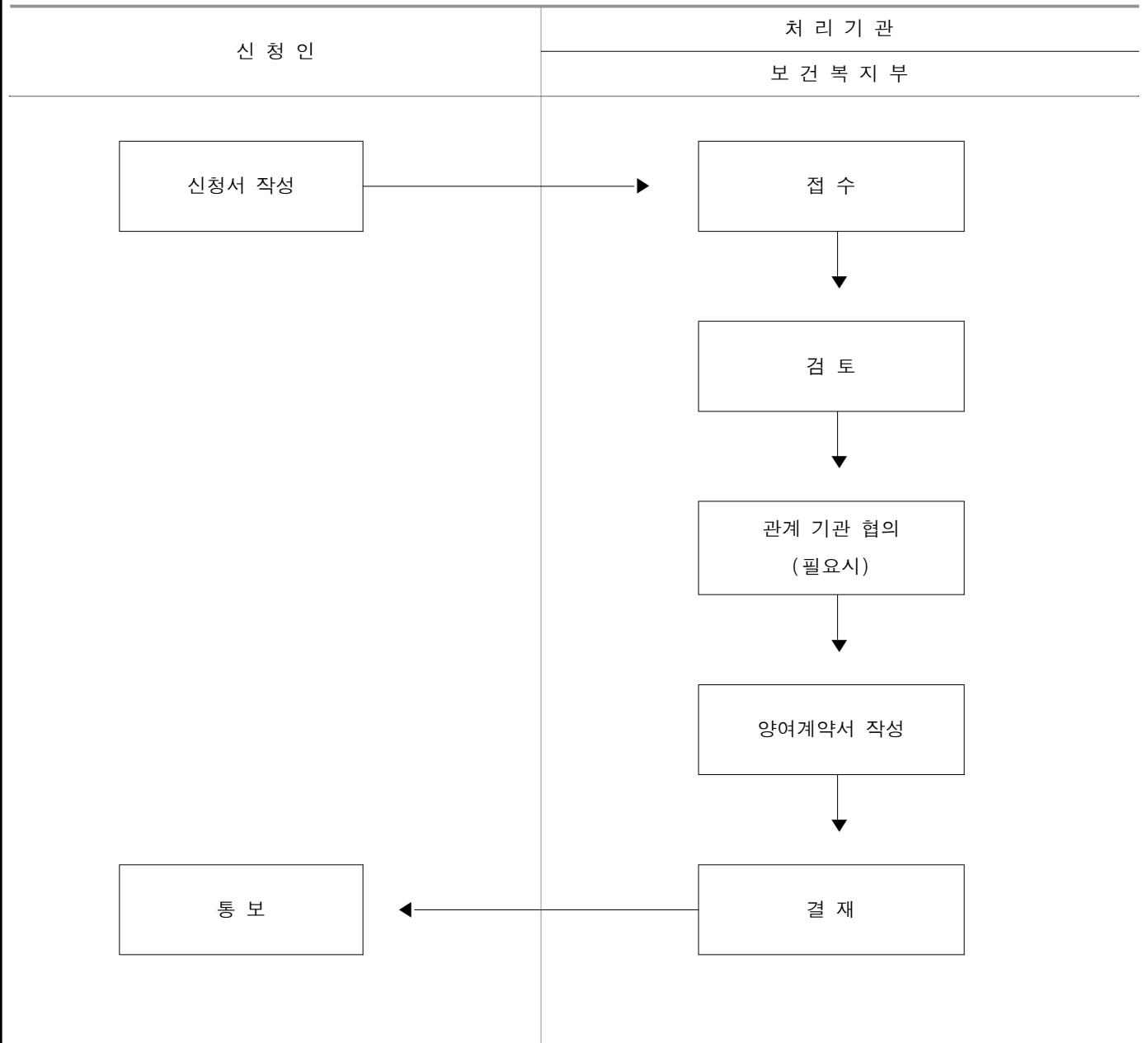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18]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선택진료([]변경·[]해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병록번호

환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진료과목 (진료지원항목)	선택진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	진료과목 (진료지원항목)	선택진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
해지사항				

「의료법」 제46조제2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 ([]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병원장 귀하

참 고 사 항

-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의료기관에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다음 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선택진료 의사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추가,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진료형태(입원, 외래)에 따라 변경·해지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동일질 환으로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입원은 입원단위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진료과에 대한 선택진료신청은 1개 과목, 1명의 선택진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 사본을 요청할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선택진료비 적정 납부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19]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	-----	-----	------	----

신 고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법인만 해당)	전화번호
	주소	

사 업 장	명칭	신고의 종류
	소재지	당연[] 임의[]
		면적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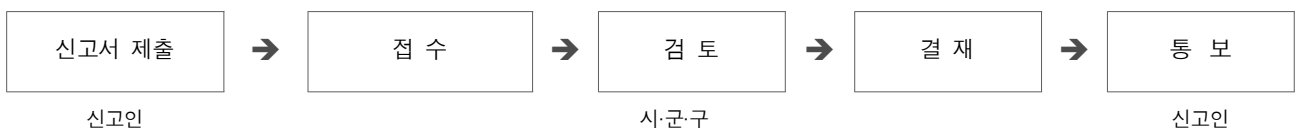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계획서(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3. 사업장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별지 20]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철회(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 업 장	명칭		소재지	
	철회(폐업)일		철회(폐업)사유	
	신고증 분실사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업)를 철회(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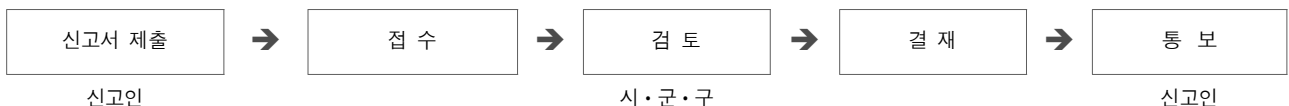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철회 또는 폐업 의결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3. 신고필증 ※ 사업자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별지 21]

■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 번역문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항

신청사유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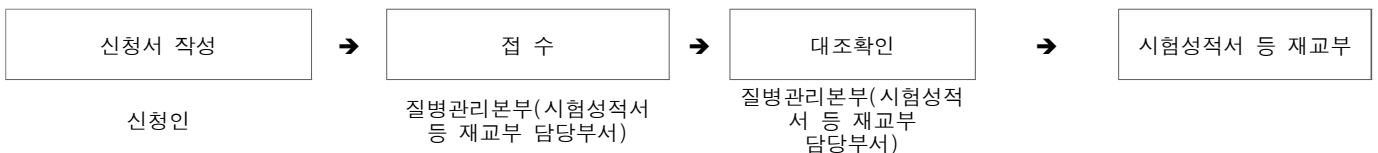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험성적서 등의 원본(혈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시험성적서 500원 외국어번역문 1,000원
-------------	----------------------------------	------------------------------------

처 리 절 차



[별지 22]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한약업사시험 응시원서

응시번호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등록기준지		
사진 (3cm×4cm)			
영업예정지역			
「약사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응시자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수수료 5,000원
	2. 「약사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학력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영업예정지 및 그 약도	

..... 자 르 는 선

한약업사시험 응시표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진 (3cm×4cm)
주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23]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한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험실시 연월일

시험합격 연월일

허가 예정지역

「약사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한약업사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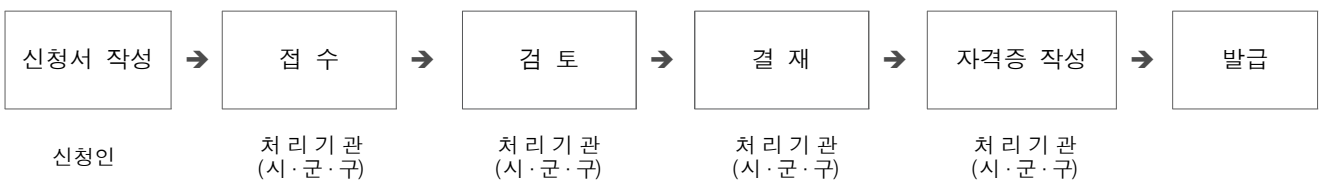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진(3cm×4cm) 2장	수수료 1,000원
-------------	----------------	---------------

처리절차



[별지 24]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한약업사 자격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시험합격 연월일 :

허 가 예 정 지 역 :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영한 것)

「약사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약업사 자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별지 25]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한약업사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5일
------	-----	-----	------	-----

신청인	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영업소의 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약업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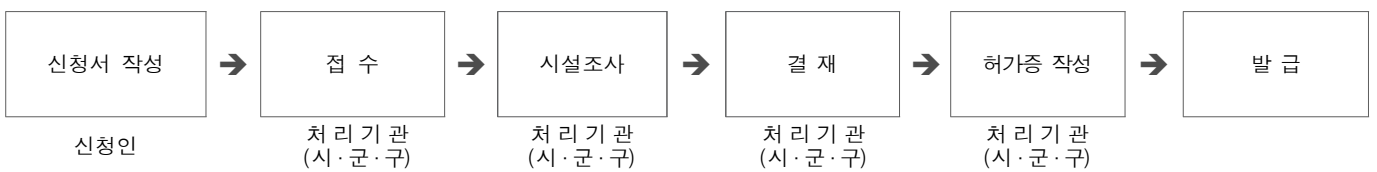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진(3cm×4cm) 2장	수수료 5,000원
-------------	----------------	---------------

처리절차



[별지 26]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험합격연원일				
허가에정지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약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업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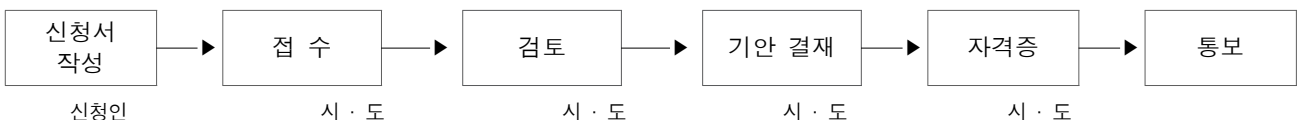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진(3cm×4cm) 2장	수수료 1,000원
-------------	----------------	---------------

처리절차



[별지 2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응급환자진료의뢰서

환자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 소		
보호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도착시간	년 월 일 시 분		
응급처치 시간	일 시 분 ~ 일 시 분		
응급처치 전 환자상태			
응급처치 후 환자상태			
응급처치 사항			
다른 기관으로 이송한 시각	년 월 일 시 분		
이송결정 이유			
송부서류 등			
이송구급차	차량번호 :	동승 응급의료종사자 :	
담당의사소견 기타			
의료기관	년 월 일		
담당의사	면허번호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2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직인

91mm×128mm

(인쇄용지(특지) 120g/㎡)

[별지 2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중앙응급의료센터
- [] 권역응급의료센터
- [] 전문응급의료센터
- [] 지역응급의료센터
-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의료기관	명 칭	개설허가일	
	개설허가번호	허가병상수	
	전문과목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의사면허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3조제3항·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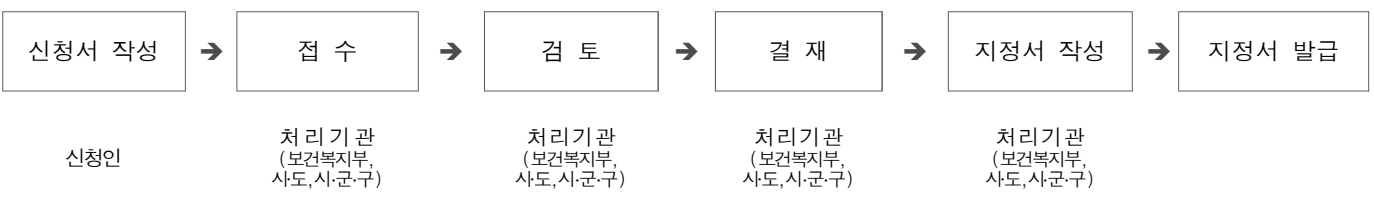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경우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3.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별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별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4.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5.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3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의료기관	명 칭	개설허가일	
	개설허가번호	허가병상수	
	전문과목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의사면허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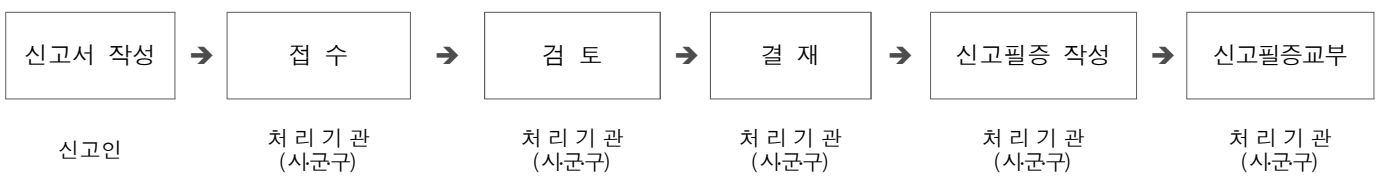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자 제출서류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3.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별지 3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1급·2급)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주민등록증	
대 조 필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성 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자격번호	자격일자

신청사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구조사(1급·2급)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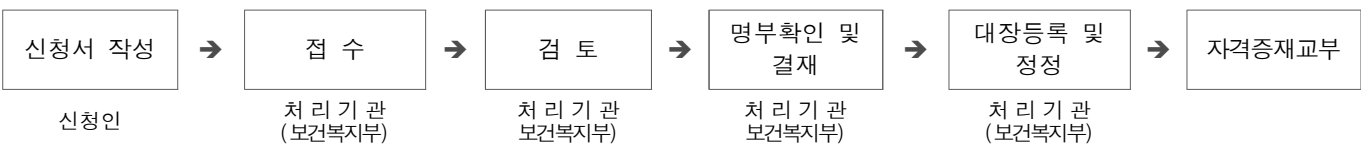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 1부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3.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cm 세로 4cm의 사진) 2매 ※ 신청인의 주소는 우송받을 수 있는 현주소지로 할 것	수수료 2,000원
-------------	--	---------------

처리 절차



[별지 3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면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급		자격번호 제 호		
	소속기관				
	기관소재지				

면제사유

년도 차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면제하여 줄 것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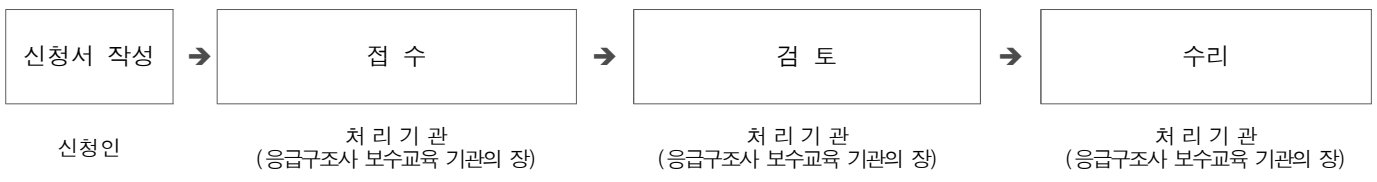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3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관리대장

1. 영업허가신청

업소명	개인
영업허가번호	허가일
제 호	년 월 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 허가조건	
------------	--

2.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신고

년 월 일	내용	기재자	년 월 일	내용	기재자

(뒤 쪽)

3. 업소규모 등

업소규모		종업원수	
대지면적		총원	명
건물면적		응급구조사	
구급차수			

(지도)의사 선임(변경)신고

성명	생년월일	의사번호	소속기관	선임·변경구분	수리일

비고

4. 행정조치사항

년 월 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5. 행정처분사항

처분연월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기간	기재자

[별지 3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 [] 허가신청서
[]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허가 : 15일 신고 : 3일
------	-----	------	-----------------------

대표성명	생년월일
업소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중 위와 같이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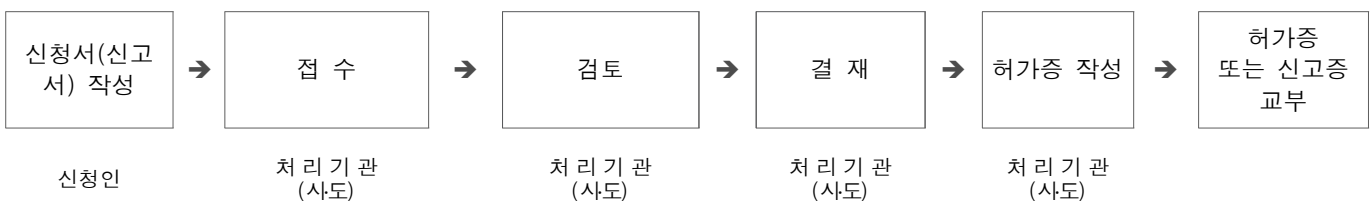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증 1부 2. 변경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별지 36]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본인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	열람하려는 내용 및 사유	
	사본을 발급 받으려는 내용 및 사유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은 상기 신청인()이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비고: 환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별지 37]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수임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은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자필서명)

[별지 38]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개설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종류	
	의료기관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 휴업 [] 폐업 []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의료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39]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의료광고 심의(재심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소재지)	팩스번호	
	E-mail		
심의	광고내용		
	광고매체	광고제작사	
	광고기간	20 ~ 20 (회)	
재심의	재심 신청 대상		
	재심 신청 사유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	20 년 월 일	

「의료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심의기관의 장 귀하

심의 신청시 제출서류	1. 의료광고안 1부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3. 광고 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재심의 신청시 제출서류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의 신청 이유 및 취지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보
처리기관(의료광고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4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대상시설	종류 (용도)		
	소재지 (차적지)		
적용의 완화 신청내용			
적용의 완화 신청사유			
<p>「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광역시·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p>			
첨부서류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4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의지 · 보조기제조업 [] 개설 [] 변경 통보서

업 소	명칭	개설일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설개요	시설총규모	상담실	체형실
	m ²	m ²	m ²
	작업실	기타	장비
	m ²	m ²	종
	상시종사자수	의지 · 보조기기사수	
	명	명	

기 사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변경내역	
------	--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지 · 보조기제조업 개설(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개설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 · 수리를 담당할 의지 · 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개설 또는 의지 · 보조기 기사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통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42]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

(앞 쪽)

1. 개설통보 내용			
업소	명칭	개설일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설개요	시설총규모	m ²	m ²
	작업실	m ²	m ²
	상시종사자수	명	명
	상담실	기타	체형실
	장비	종	
	의지·보조기기사수		명
기사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뒤 쪽)

2. 변경내용

연 월 일	내 용	기재자 성명 (서명)

3. 행정처분 사항

처분연월일	문서번호	내 용	기재자 성명 (서명)

[별지 43]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번호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신청내역	입주 목적
	부지의 위치 및 총면적
	토지이용계획
	시설 등의 설치계획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16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부령제43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318호(2014. 7. 31.)에 게재된 “교육부령제43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8월 6일

교 육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u>	관보 제4쪽 제5행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24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8월 6일

금 용 위 원 회

1. 개정이유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 대부업자는 대부거래, 채권관리 등을 수행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감독을 받으므로 신용정보 집중·관리기관에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 대부업자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신용정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용정보의 집중·관리기관의 변경(안 제25조의2)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대부업자의 범위를 기존 국민행복기금 관련 대부업자에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 대부업자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4-40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최귀호	1932.12.04	남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인화리 32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구자호	1931.11.15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9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두열	1938.03.01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11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광수	1948.01.16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마리 44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양열	1936.06.18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739	2003.12.09	외국국적미포기
정경제	1937.06.17	남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27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손무선	1935.01.02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홍곡리 65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나중찬	1945.12.04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50 401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봉길	1937.05.28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79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서금녀	1946.08.15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106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하정순	1933.01.20	여	중 국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좌연리 98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분연	1940.03.04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이상리 16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손영자	1943.01.10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8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재만	1931.09.27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천리 15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병량	1936.01.25	남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99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순례	1947.05.06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80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45.12.0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14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창순	1936.11.04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형천리 43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순남	1932.05.03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소례리 20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송명숙	1949.07.0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북곡리 40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갑동	1948.10.10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54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운태	1938.07.23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유곡동 16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권금련	1932.02.19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791	1949.01.01	외국국적취득
이인도	1933.05.10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6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변관수	1934.09.07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74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백낙성	1943.04.04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52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철식	1949.05.01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82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복희	1947.04.27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67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춘화	1938.12.22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74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임복숙	1936.08.08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8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춘장	1940.03.15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5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재근	1949.01.28	남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대우리 163	1919.10.01	외국국적취득
김용선	1947.09.16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125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순덕	1936.02.18	여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75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정신	1948.01.13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곡리 68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복순	1942.10.10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용봉리 45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정태명	1947.02.13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112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한창만	1949.09.20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32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곽명숙	1942.03.13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23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해봉	1939.02.13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27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태자	1944.11.12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51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배용식	1945.04.04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 147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고덕주	1938.11.25	남	중 국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15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은영숙	1947.11.07	여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25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성윤숙	1948.06.16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군 계성면 계성리 42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배용태	1942.01.04	남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48-8 관후빌 A동 203호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점순	1935.03.08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92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식이	1945.07.16	남	중 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 59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4-21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군단 00대대 취사식당 등 3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취사식당 신축으로 장병급식 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00군단 00대대 취사식당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249-1번지	6,000	1,468.8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248-2번지	1,941	1,277.5
	계	7,941	2,746.3
00군단 00대대 취사식당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268-1번지	30,713	980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269번지	4,717	2,820
	계	35,430	3,800
00군단 00연대 취사식당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44-4번지	16,235	4,600

4. 사업 시행기간 : '14. 7. 31.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1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대대 창고 증축 등 3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저장 및 정비시설, 생활관 신축으로 장병근무 및 복무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00여단 00대대 일반창고 증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139번지	21,940 (대지면적)	21,940 (대지면적)
00여단 00대대 정비고 신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21-2번지	222,846	2,747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21-9번지	9,613	2,153
	계	232,459	4,900
00사령부 00부대 병영생활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26-2번지	5,559	3,135

4. 사업 시행기간 : '14. 7. 31.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16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병영문화쉼터 등 3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병영문화쉼터 신축으로 장병 복지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00사단 00연대 병영문화쉼터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492번지	3,703	255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493번지	2,195	772
	계	5,898	1,027
00사단 00연대 병영문화쉼터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350번지	3,139	3,139
00사단 00연대 병영문화쉼터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584번지	1,134	1,134

4. 사업시행기간 : '14. 7. 31.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3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6제5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표시 검사”라 함은 품질표시를 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시(이하 “시험·분석방법 고시”라 한다)』 및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000호, 이하 “품질검사 고시”라 한다)』에 따라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시료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라 함은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유무, 품질표시 방법, 품질표시 내용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시험·분석방법 고시 및 품질검사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품질표시 검사

제3조(품질표시 검사의 신청)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품질표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에서 정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의 검토) ① 시험기관은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검사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에는 작성내용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시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시험기관이 작성한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기관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 시료채취 예정일시에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2. 현장여건 상 계획된 로트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품질표시 검사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시험기관은 시료채취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입회하에 시료채취 예정지를 출입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시료채취자의 자격) 시료채취는 시험기관 내 품질검사 고시 제3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험기관의 장이 임명한 품질검사원이 실시한다.

제7조(시료 채취 및 분석) ① 시료는 수입자의 경우 고품연료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장소(또는 보관시설)에서 채취하고 제조자의 경우 제조시설 또는 보관장소(또는 보관시설)에서 채취한다.

② 품질표시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방법은 품질검사 고시 제9조부터 제14호를 따른다.

제8조(품질명세서의 교부) 시험기관은 검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4호의9서식의 고품연료제품 품질명세서(이하 “품질명세서”라 한다) 및 품질검사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고품연료제품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수입자 또는 제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품질표시의 방법

제9조(품질표시의 방법) ①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고품연료제품의 보관장소(또는 보관시설)에 고품연료제품 품질표시 표지판(이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용기에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표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19조의 신고 또는 제20조의 변경신고를 위해 고품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를 발급받은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표시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품질검사 항목 이외의 항목은 품질표시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품연료제품의 품질이 다양한 경우 품질별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명세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④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경우 즉시 품질표시를 해야 하며 품질명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품질표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제10조(품질표시의 변경주기) ①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고품연료제품의 품질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품질표시 검사를 실시하여 품질표시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 ② 품질표시를 실시한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최종 품질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품질표시를 새로 실시해야 한다.

제4장 품질표시 적정성검사

제11조(품질표시 적정성검사의 시기) 센터는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제조·보관 중인 고행연료제품에 대하여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표시 적정성 검사의 방법) ① 센터는 제12조에 따른 품질표시 적정성검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품질표시의 유무 확인

가. 품질표시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나.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에서 정한 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로 품질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2. 품질표시의 방법 확인

가. 품질표시 사항 중 선택기재 항목을 제외한 필수표시 항목에 대하여 표시하였는지 여부

나. 기타 별표 1의 고행연료제품 품질표시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하였는지 여부

3. 품질표시의 내용 확인

가. 시험기관에서 발급 받은 품질명세서의 내용과 품질표시 내용의 일치 여부

나. 제10조에 따른 품질표시 변경주기의 준수 여부

다. 품질표시 내용과 보관 중인 고행연료제품의 품질 확인

- ② 제1항제3호다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센터는 보관 중인 고행연료제품을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적정성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센터는 고행연료제품 품질표시 적정성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적정성검사 결과 중 부적정한 사항이 법 제39조의2 또는 법 제4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4조(품질표시 검사 결과보고) 시험기관은 전년도 품질표시 검사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센터는 고행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의 원활한 품질표시 업무 수행을 위해 고행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를 대상으로 품질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 업무의 공정성·형평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보장) 시험기관 및 센터는 품질표시 검사 및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수검기관의 정보 및 지식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이 고시는 2017년 8월 6일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관련 예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73호, 2012.12.31)”은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 환경부고시제2014-13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9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시행규칙 별표 9의 검사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8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에 따라 받는 최초검사, 계속검사, 재개검사를 말한다.
2. “최초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계속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최초검사 또는 재개검사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재개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휴·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의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수입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6.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7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검사의 시기 및 신청)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최초검사를 받으려는 자 :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

2. 계속검사를 받으려는 자 : 최초검사일 또는 재개검사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 전 1개월 이내
3. 재개검사를 받으려는 자 :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 개시 전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1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 포함)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명세서

제4조(신청서류의 검토) ① 검사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검사 신청서·보완서류 및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검사 수수료 등을 반려·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검사일자 통보)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지 이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회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회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시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처리대상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의 확보
2. 제조시설의 경우 단위 시설에 대한 기계적 제원과 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건축물 허가 사항
3.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서류(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등)
4.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검사의 연기) ① 신청인이 시험가동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3일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검사기관은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검사일이 연기되는 경우 연기된 일 수는 처리기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7조(검사의 실시) ① 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별표 1의 세부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제8조(검사결과의 판정)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한다.

제9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기관은 검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2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를 신청인과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 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라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처리기한의 연장) ① 검사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다음의 각 호를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상 처리일

2. 연장 사유

제11조(개선명령의 확인)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명령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에 시험가동 준비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함께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수수료) ④ 법 제25조의8에 따라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검사 수수료를 제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접수시 검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이 고시는 2017년 8월 6일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3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검사”라 함은 고�형연료제품이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최초검사, 확인검사로 구분한다.
 2. “최초검사”라 함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확인검사”라 함은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중인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센터가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4. “시료채취”라 함은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시(이하 “시험·분석방법 고시”이라 한다)」 제1장 시료채취 방법을 통해 모집단에서 시료(표본)를 채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시료의 채취과정은 로트별 인크리먼트 채취, 혼합시료의 제작 및 감량화, 분석용 시료의 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5. “인크리먼트”라 함은 전체 품질검사 대상 모집단을 수입·제조·보관 또는 운반되는 장소에서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1회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6. “혼합시료”라 함은 인크리먼트를 겉보기 밀도 등 현장분석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혼합한 시료를 말한다.
 7. “감량화된 혼합시료”라 함은 혼합시료를 시험·분석을 실시할 실험실로 운반하기 위하여 분할·감량하여 제작한 시료를 말한다.
 8. “분석용 시료”라 함은 감량화된 혼합시료를 분석에 적합한 양으로 소량화하기 위하여 혼합·분할·감량 및 분쇄하여 제작한 시료를 말한다.
-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시험·분석방법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품질검사원)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0조의14에 따른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품질검사원으로 임명한다.

1. 폐기물처리기사·폐기물처리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환경학·환경공학·환경계획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센터에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관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으로 임명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검사의 기본원칙)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센터는 고품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현장의 작업여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취된 시료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시료의 채취는 제3조에 따른 품질검사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채취업무가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료채취 도중에 품질검사원을 교체하여서는 안된다.

② 품질검사대상 수입자·제조자·사용자는 품질검사 업무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 대상물량, 시료채취장소 등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작성 관련 정보의 사전 통보
2. 시설안내, 시료채취 장소제공 등 품질검사원이 품질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

제2장 최초검사

제5조(최초검사의 시기 및 신청) 고품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품연료제품에 대한 최초검사(이하 본 장에서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전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품연료제품 품질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서면 또는 법 제25조의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고품연료제품을 수입하려는 자 : 수입신고 40일 이전
2. 고품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 : 제조신고 30일 이전

제6조(신청서류의 검토) ① 센터는 제5조에 따라 품질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내용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서류를 명기하여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품질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7조(수수료) ① 제6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는 품질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센터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② 품질검사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의 ‘환경 시험·검사 및 측정·분석 운영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센터는 제6조에 따른 품질검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제7조에 따른 수수료의 입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③ 신청자는 센터가 작성한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 시료채취 예정일시에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2. 현장여건 상 계획된 로트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 ⑤ 센터는 시료채취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입회하에 시료채취 예정지를 출입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인크리먼트의 채취) ① 품질검사원은 시험·분석방법 고시 제1장 시료채취 방법의 시료채취 장치 및 기구 가운데 인크리먼트를 채취하려는 시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장치 및 기구를 준비하여야 하며, 시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밀봉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 ② 품질검사원은 직접 다음 각 호에 따른 고품연료제품 보관장소를 방문하여 품질상태의 균일도, 냄새 등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한 후 제8조에 따른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의 로트의 크기, 최소 인크리먼트 개수, 인크리먼트의 양 및 채취장소 등에 따라 인크리먼트를 채취하여야 하며, 미세입자 및 휘발성분(수분, 수은 등)의 손실, 이물질의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된 각각의 인크리먼트는 별도의 용기에 분할하여 밀봉한 후 보관한다.

1. 고품연료제품 수입의 경우 :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또는 제조시설)

2. 고품연료제품 제조의 경우 : 제조시설

- ③ 품질검사원은 수동으로 인크리먼트를 채취하는 경우 1회의 동작으로 1회 인크리먼트 채취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④ 품질검사원은 포장된 것을 개봉하여 인크리먼트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의 혼입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⑤ 신청자는 품질검사원이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라 인크리먼트 채취를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채취 장소 등에 관한 세부정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품질검사원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청자 입회하에 합의하여 로트의 크기를 감소하거나, 최소 인크리먼트 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 ⑦ 수입하려는 고품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에 검사신청 대상물량이 모두 집하된 이후 인크리먼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혼합시료의 제작) ① 제9조에 따라 채취된 인크리먼트는 시험·분석방법 고시 제1장 시료채취 방법 중 5. 혼합시료의 준비 방법에 따라 단위 로트별로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의 최종 필요량의 2배가 될 때까지 혼합·분할·감량화한 후 겉보기 밀도 등 현장에서 분석이 필요한 항목을 측정한다. 단, 수입하려는 고품연료제품의 경우 국내 반입과정의 소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여유 있게 제작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량화된 혼합시료는 2점으로 분리하여 각각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즉시 봉인한 후 품질검사원과 신청자가 연명으로 날인한다. 이때 수거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진공·압축 처리한다.
- ③ 품질검사원은 채취된 인크리먼트에서 혼합시료를 제작한 후 남은 시료는 신청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시료채취 확인증의 작성) ① 품질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하며, 시료채취에 앞서 현장에서 시료채취계획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입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은 제10조에 따라 혼합시료 제작이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증 2부를 작성하여 입회자와 품질검사원이 각각 날인한 후 1부를 현장에서 입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료의 운송) 품질검사원은 혼합시료를 오염·파손·손상 또는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제13조(시료의 보관) 혼합시료는 보관과정에서 수분, 유기물 등 함유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사광선 노출 및 고온보관 등을 피하여야 하며, 시험·분석방법 고시 제1장 시료채취 방법 6. 혼합시료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분석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분석) ① 제12조에 따라 운송된 시료는 시험·분석방법 고시 제1장 시료채취 방법 7. 분석용 시료의 준비 방법을 활용하여 혼합·분할·감량 및 분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혼합·분할·감량 및 분쇄된 분석용 시료는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검사항목에 대하여 시험·분석방법 고시의 항목별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시험·분석한다.

③ 운송된 시료 중 1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분석하고 나머지 1점은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간 보관한다.

제15조(검사결과의 판정) 센터는 전체 검사항목이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격 판정을 한다.

제16조(검사결과서의 교부) 센터는 품질검사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검사신청건별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시스템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사의 실시)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최초검사 결과와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입과정에서 수입량, 운반방식 등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서의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선적 및 하역 작업 시 우수침투로 인하여 수분의 변화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입신고 수리 이후 국내 도착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된 경우
4. 기타 수입과정에서 다른 제품들과 혼적하여 운반하는 등 고형연료제품의 성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센터는 제1항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고형연료제품의 출항 또는 입항 예정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단계 중 시료채취가 가능한 시기를 선택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재검사 예정일 3일전까지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검사의 개시와 동시에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1. 국내 하역장에서 수입 고형연료제품 하역 시

2. 수입 고형연료제품 하역 후 수입자 또는 사용자 보관 시

③ 품질검사원은 제2항제1호의 시기에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당해 고형연료제품을 적재한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면 항해(수송)중 피해유무, 혼적여부 등의 입항실태와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수량이 수입 신고 시와 동일한지의 여부를 시료채취 전에 파악하여 시료채취계획보고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④ 품질검사원은 품질상태의 균일도, 냄새 등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한 후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계획보고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18조(재검사 결과의 통보) ① 센터는 제17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품질기준 이내라도 검사항목별 재검사 결과가 당초 검사결과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고형연료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확인검사

제19조(확인검사의 주기) ① 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검사(이하 본 장에서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의 구체적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최초검사 시 시료채취 대상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1. 수입자 : 사용자에게 고형연료제품 인계 이전

2. 제조자 및 사용자 : 매 분기 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3년 간 품질기준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 매 반기마다 1회 실시

2. 6년 간 품질기준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 매년 1회 실시

제20조(검사의 방법) ① 센터는 법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현황 및 법 제25조의7에 따른 사용 신고현황 등을 참고하여 검사 대상을 조사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검사예정일 3일전까지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개시와 동시에 시료채취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품질검사원은 품질상태의 균일도, 냄새 등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한 후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④ 채취된 시료의 운송 및 시험·분석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시료채취 확인증의 작성) ① 품질검사원은 시료채취를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즉시 당해 수입자·제조자·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시료채취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수입자·제조자·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료채취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증 2부를 작성하여 입회자와 품질검사원이 각각 날인한 후 1부를 현장에서 입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결과와 통보) ① 센터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3조(품질검사 결과보고) 센터는 전년도 품질검사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및 홍보) ① 센터는 원활한 품질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고품연료제품 수입자·제조사·사용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품질검사 업무의 공정성·형평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5조(비밀보장) 센터 및 품질검사원은 검사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수검기관의 정보 및 지식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이 고시는 2017년 8월 6일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3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환 경 부 장 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5조의14에 따라 폐자원에너지 생산량·사용량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법 제2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사용자 및 제2호에 따른 매립가스·바이오가스·소각여열·폐기물가스화에 대한 생산(회수)·이용·판매하는 자가 센터의 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3. "정보"라 함은 센터의 장이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수입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나.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제조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다.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라.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수입(제조)신고시 품질검사 신청 내용 및 처리결과

마. 시행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보관 중인 고행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적합여부 확인결과

바.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수입자·제조자가 표시한 품질명세서

사.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적정성검사 결과

아. 시행규칙 제20조의107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자.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신청내용 및 처리결과

차.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소각여열, 폐기물가스화에 대한 생산(회수)·이용·판매자의 실적

카.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정보

4. "불일치 정보"란 사용자가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정보관리시스템 주소) 정보관리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제4조(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① 정보관리시스템은 법 제2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내 센터에서 구축·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상의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자의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정보 및 시스템에 접속한 내역 기록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사용자 등에게 정보입력 및 정보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보의 입력 및 수정 등) ① 사용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의 정보입력 및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

영 및 국가 폐자원에너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정보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 등록
2. 고품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의 신고(변경) 처리결과
3. 고품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금지명령 및 개선·이행결과
-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보 입력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 ④ 센터의 장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제2조제4호에 따른 불일치 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정보관리시스템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불일치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입력기한) ①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 또는 사용자는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량·사용량, 고품연료제품 수입량·사용량 : 해당 월의 정보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
2. 법 제25조의1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사용 시설,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제7조(사용자 등 등록 및 승인) ① 고품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또는 폐자원에너지 생산·이용·판매하려는 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용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③ 센터의 장은 사용자 등록, 변경 등록 또는 탈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기초정보, 신원증명 등을 검토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승인하지 않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센터의 장은 이미 사용자 등록을 마친 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담당자 등록)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보입력을 전담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센터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처리의 문서화 효력) 사용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이 제2조항제3호의 정보와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정보관리시스템의 전산서식을 사용하여 입력하거나 결과를 통보한 경우 문서로서 업무를 처리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허위자료 등의 통보) 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제2조제4호의 불일치 정보가 발생한 경우

제11조(비밀유지) 센터의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는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득한 업무상 정보 및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입력기한과 제5조제4항에 따른 불일치 정보 수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이 고시는 2017년 8월 6일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를 참조바랍니다.

● 환경부고시제2014-13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제25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5, 제20조의9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분석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고행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환 경 부 장 관

고행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5 및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법 제25조의8 및 시행규칙 제20조의 9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위한 품질 시험·분석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험·분석방법은 법 제2조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제10호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에 적용한다.

제3조(고행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행연료제품의 시료채취방법, 모양 및 크기, 물질성상, 발열량, 수분, 회분, 휘발분, 회용융 온도, 겉보기 밀도, 원소분석, 염소, 황, 금속성분, 바이오매스 등의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품질 시험·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정도관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은 고행연료제품의 시험·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25조의6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과학원장이 정도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분야, 평가항목 등이 포함된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이 고시는 2017년 8월 6일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사용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호-201호, 2008.1.2)”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12-147호, 2012.7.31)”은 폐지한다.

● 환경부고시제2014-136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6]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266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환 경 부 장 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45조2항”을 “제45조제2항”로,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모사전송(FAX) 등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다만”을 “모사전송(FAX)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도·점검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대체입력 사유, 기간 등을 검토하거나 현지 확인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입력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개선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중 “기간”을 “기간(제14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제20조 제목 “(장비구매 및 관리)”를 “(장비구매 및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사용자는 장비의 구입 시 현 시스템 환경에 적용되는 적합한 장비를 구매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화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비 및 프로그램을 항상 적정하게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2. 예기치 못한 고장 등 지도·점검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69호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체결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동부엔지니어링(주) (대표자 이문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30-82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안양동)		
	전화번호	02-2122-6795	팩스번호	02-2122-6899
	법인명(성명)	(주)대도엔텍 (대표자 장정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576-843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성덕로 10		
	전화번호	031-919-9524	팩스번호	031-919-9526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 738 호
- 명 칭 :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체결 시공기술
- 기술분야 : 토목 / 수자원 / 보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고무보 폭방향(수심방향)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하여 폭방향과 길이방향에 격자형으로 보강포를 배치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고무보의 고무본체와 고무보 보호커버 통합체결 고정구조를 갖는 개량형 고무보의 시공기술이다.
- 신기술의 범위
고무보 폭방향(수심방향)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의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통합체결 고정구조를 갖는 개량형 고무보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서포트 제작 설치 → Embedded Plate 및 앵커볼트 설치 → 공기배관 설치 → <u>고무보 본체 설치</u> → 클램핑 플레이트 설치 → <u>보호커버 설치</u>
신기술 품	1. 서포트 제작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4-6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간단)] 참조 2 Embedded Plate 및 앵커볼트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4-6 각종 잡철물 설치(간단)/용접공제외] 참조 ☞ 표준품셈 [건축 7-2-5 앵커 볼트 설치] 참조

	<p>3. 공기배관 설치</p> <p>가. 강관 부설 및 접합</p> <p>☞ 관부설 : 표준품셈 [토목 19-3-2 강관부설] 참조</p> <p>☞ 관접합 : 표준품셈 [토목 19-3-7 플랜지 조인트 접합] 참조</p>																																						
<p>신기술 품</p>	<p>나. 아연도금 강관 배관</p> <p>☞ 표준품셈 [기계설비 1-1-2 1.강관배관/가.용접식] 참조</p> <p>다. 스테인리스강관 배관</p> <p>☞ 표준품셈 [기계설비 1-1-2 3.스테인리스 강관 배관/나.용접식] 참조</p> <p>[주] 본 품은 현장여건에 따라 관종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4. 고무보 본체 설치 (㎡당)</p> <table border="1" data-bbox="414 672 1452 828">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규 격</th> <th>단 위</th> <th>수 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력</td> <td>보통인부</td> <td>-</td> <td>인</td> <td>0.057</td> </tr> <tr> <td>특별인부</td> <td>-</td> <td>인</td> <td>0.086</td> </tr> <tr> <td>장비</td> <td>크레인(타이어)</td> <td>50ton</td> <td>hr</td> <td>0.230</td> </tr> </tbody> </table> <p>[주] 본 품은 개량형 고무본체를 설치하는 품이다.</p> <p>5. 클램핑 플레이트 설치</p> <p>☞ 표준품셈 [건축 14-6 각종 잡철물 설치(간단)_용접공 제외] 참조</p> <p>6. 보호커버 설치 (㎡당)</p> <table border="1" data-bbox="414 1075 1452 1232">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규 격</th> <th>단 위</th> <th>수 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력</td> <td>보통인부</td> <td>-</td> <td>인</td> <td>0.025</td> </tr> <tr> <td>특별인부</td> <td>-</td> <td>인</td> <td>0.050</td> </tr> <tr> <td>장비</td> <td>크레인타이어</td> <td>50ton</td> <td>hr</td> <td>0.150</td> </tr> </tbody> </table> <p>[주] 본 품은 개량형 고무본체를 설치하는 품이다.</p>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인력	보통인부	-	인	0.057	특별인부	-	인	0.086	장비	크레인(타이어)	50ton	hr	0.230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인력	보통인부	-	인	0.025	특별인부	-	인	0.050	장비	크레인타이어	50ton	hr	0.150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인력	보통인부	-	인	0.057																																			
	특별인부	-	인	0.086																																			
장비	크레인(타이어)	50ton	hr	0.230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인력	보통인부	-	인	0.025																																			
	특별인부	-	인	0.050																																			
장비	크레인타이어	50ton	hr	0.150																																			

5.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56호(2014.7.29.)로 고시한 「신기술 지정」의 내용 중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당 초	정 정	사 유
<p>1. 신기술 개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평건설(대표자 이종수) - (주)삼안(대표자 황태현) - (주)포스코건설(대표자 김치현) - 한국건설관리공사(대표자 정장원) 	<p>1. 신기술 개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평건설(대표자 윤학수) - (주)삼안(대표자 임종명) - (주)포스코건설(대표자 황태현) - 한국건설관리공사(대표자 김원덕) 	<p>편집오류</p>

●해양수산부고시제2014-8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신규반영 : 4개 지구

연번	신청 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m ²)	비 고 (신청인)
1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용현 지구)	공공시설용지 등	53,400	승주종합개발(주)
2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장좌 지구)	중간재가공공장용지	129,413	고성조선해양(주)
3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내산 지구)	중간재가공공장용지	77,365	삼강엠엔티(주)
4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고정항 지구)	공공시설용지 등	8,159	보령시

면적 변경 : 1개 지구

연번	당초 고시	신청 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m ²)	비 고 (신청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25호 (2008.7.18)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북항 지구)	항만시설용지 등	(당초) 699,497 (변경) 698,256	부산항만공사

※ 기본계획 반영조건,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열람가능

●산림청고시제2014-61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산 립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남양005	임업용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06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100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4-62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산 립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9	NJ52-9-9-029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안양086	NJ52-9-18-086	임업용산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054	NJ52-9-28-054	임업용산지
경기도	이천시	안성038	NJ52-9-27-038	임업용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05	NJ52-9-25-005	임업용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06	NJ52-9-25-006	임업용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32	NJ52-6-25-03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85	NI52-6-7-085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4-6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산 립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9	NJ52-9-9-029	준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개성100	NJ52-9-3-100	준보전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33	NJ52-6-25-033	준보전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32	NJ52-6-25-032	준보전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31	NJ52-6-25-031	준보전산지
강원도	속초시	속초034	NJ52-6-25-034	준보전산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010	NJ52-10-16-010	준보전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99	NJ52-10-9-09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예산019	NJ52-13-11-01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59	NJ52-13-4-05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017	NJ52-14-4-01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87	NI52-6-6-08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77	NI52-6-6-07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98	NI52-6-6-09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97	NI52-6-6-09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86	NI52-6-6-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76	NI52-6-6-07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65	NI52-6-6-06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75	NI52-6-6-07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64	NI52-6-6-06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092	NI52-6-7-09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매물043	NI52-6-14-04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매물044	NI52-6-14-04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매물053	NI52-6-14-05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76	NI52-2-23-07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059	NI52-2-22-05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71	NI52-2-22-07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82	NI52-2-22-08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59	NI52-1-28-05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70	NI52-1-28-07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37	NI52-1-28-03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26	NI52-1-28-02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16	NI52-1-28-01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07	NI52-1-28-00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06	NI52-1-28-00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40	NI52-1-28-04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30	NI52-1-28-03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39	NI52-1-28-03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38	NI52-1-28-03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62	NI52-2-22-06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61	NI52-2-22-06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60	NI52-1-28-06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52	NI52-2-22-05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72	NI52-2-22-07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73	NI52-2-22-07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44	NI52-2-22-04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64	NI52-2-22-06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84	NI52-2-22-08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74	NI52-2-22-07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93	NI52-2-22-093	준보전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94	NI52-2-22-09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85	NI52-2-22-08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016	NI52-6-4-01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95	NI52-2-22-09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96	NI52-2-22-09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86	NI52-2-22-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76	NI52-2-22-07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77	NI52-2-22-07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007	NI52-6-4-00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65	NI52-2-22-06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75	NI52-2-22-07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55	NI52-2-22-05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45	NI52-2-22-04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10	NI52-1-28-01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곤양035	NI52-2-22-03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29	NI52-2-15-029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18호, 2014.07.0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1의 “2014-1-688란 다음에 “2014-1-689”란 및 “2014-1-69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1]

유 독 물(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표시사항(Code)*			
		염류·화합물	유해·위험 문구	그림문자	신호어
2014-1-689	디클로로에테닐메틸실란[Dichloroethenylmethy lsilane; 124-70-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H225 H302 H331 H314	GHS02 GHS05 GHS06	위험

2014-1-690	2,3,3,3-테트라플루오로-2-[1,1,2,3,3,3-헥사플루오로-2-(헵타플루오로프로폭시)프로폭시]프로판산 암모늄염[2,3,3,3-Tetrafluoro-2-[1,1,2,3,3,3-hexafluoro-2-(heptafluoropropoxy)propoxy]propanoic acid, ammonium salt; 13043-05-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H301	GHS06	위험
2014-1-691	1,3-벤젠디메탄티올[1,3-Benzenedimethane thiol; 41563-6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H302 H315 H317 H400 H410	GHS07 GHS09	경고
2014-1-692	1-데실피리디늄 비스(플루오로술폰일)이미드[1-Decylpyridinium bis(fluoro sulfonyl)imide;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H301 H317 H400 H410	GHS06 GHS09	위험

※ 표시사항의 그림문자와 유해·위험문구에 대한 Code는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의 “[별표 2] 그림문자”와 “[별표 3] 제1호의 유해·위험문구(H CODE)”를 참조
별표 2의 “2012-2-80”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네오노나논산 글리시딜[Glycidyl neononanoate;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네오노나논산 글리시딜[Glycidyl neononanoate; 144548-0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로 정정하고, “2014-2-92”란 다음에 “2014-2-93”란 및 “2014-2-94”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4-2-93	1,1,1,2,3-펜타클로로프로판[1,1,1,2,3-Pentachloropropane; 21700-3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014-2-94	9-브로모안트라센[9-Bromoanthracene; 1564-6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부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제9조·제28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12호, 2014.0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4]의 “2014-1-688”란 다음에 “2014-1-689”란부터 “2014-1-692”란까지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유독물 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 어	유해· 위험문구	
2014-1-689	디클로로에테닐메틸 실란[Dichloroethenyl methylsilane]	124-70-9	인화성액체(2.6) 급성 독성-경구(3.1) 급성 독성-흡입(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2 4 3 1	GHS02 GHS05 GHS06	위험	H225 H302 H331 H314	-
2014-1-690	2,3,3,3-테트라플루오 로-2-[1,1,2,3,3,3-헥 사플루오로-2-(헵 타플루오로프로폭 시)프로폭시]프로판 산 암모늄염 [2,3,3,3-Tetrafluoro-2 -[1,1,2,3,3,3-hexafluor o-2-(heptafluoroprop oxy)propoxy]propanoi c acid, ammonium salt]	13043-05-5	급성 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2014-1-691	1,3-벤젠디메탄티올 [1,3-Benzenedimetha nethiol]	41563-69-3	급성 독성-경구(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피부 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2 1 1 1	GHS07 GHS09	경고	H302 H315 H317 H400 H410	-
2014-1-692	1-데실피리디늄 비 스(플루오로술폰) 이 미 드 [1-Decylpyridinium bis(fluorosulfonyl)imi de]	부여안됨	급성 독성-경구(3.1) 피부 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1 1 1	GHS06 GHS09	위험	H301 H317 H400 H410	10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17호, 2014.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일부개정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유번호 2014-3-5827란 다음에 2014-3-5828란부터 2014-3-588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2014-3-5828	Hexahydro-1,3,5-trimethyl-1,3,5-triazine(CAS No. 108-74-7)
2014-3-5829	[총칭명]Heteropolycyclicmethacrylatepolymerwithhydroxycarbomonocyclicalkylmethacrylateandheteromonocyclicalkylmethacrylate
2014-3-5830	[총칭명]Formaldehyde,polymerwith2-(chloromethyl)oxiraneandphenol,reactionproductswithsubstitutedalkane
2014-3-5831	1,6-Hexanediamine polymer with 1,4-butanediamine and 1,6-diisocyanatohexane, 1H-imidazole-1-propanamine-blocked(CAS No. 1190868-91-7)
2014-3-5832	9-Methylene-nonadecane(CAS No. 37624-31-0)
2014-3-5833	1,3-Dibutyl 5-[2-(cyclohexylmethoxy)-2-oxoethyl] dihydro-2,4,6-trioxo-1,3,5-triazine-1,3(2H,6H)-dipropanoate polymer with 1,3,5-tris(2-hydroxyethyl)-1,3,5-triazine-2,4,6(1H,3H,5H)-trione(CAS No. 1259288-67-9)
2014-3-5834	[총칭명]Oxybiscarbomonocyclicacidpolymerwithoxybis[heteropolycyclicketone],(alkyl(C=1~5)substituted)bis[alkane(C=2~6)amine],[halo(haloalkyl(C=1~5))alkylidene]bis[aminocarbomonocyclicalcohol]and[[halo(haloalkyl(C=1~5))alkylidene]bis(hydroxycarbomonocycle)]bis[aminobenzamide]
2014-3-5835	Methyloxiranepolymerwithoxirane,2-aminopropylmethylesterand[29H,31H-phthalocyaninesulphonylchloridato(2-)-N29,N30,N31,N32]copper(CASNo.부여안됨)
2014-3-5836	[총칭명]Methylsubstitutedalkenylterphenyl
2014-3-5837	1,2,4,5-Benzenetetracarboxylic acid, tetraalkyl(C=6~10) esters(CAS No. 263750-17-0)
2014-3-5838	[총칭명]Aminoalkylalanine,metalsaltpolymerwithtrialkyl(C=1~3)aminoalkyl(C=1~3)aminocycloalkane(C=4~7),1,6-diisocyanatohexane,substitutedpolyoxyalkanediyl(C=2~6)andpolyalkyleneglycolalkyl(C=1~3)ether-blocked1,6-diisocyanatohexane-carbomonocyclepolymer,polyalkyleneglycolalkyl(C=2~6)ether-blocked
2014-3-5839	[총칭명]Dialkylatedfluoroterphenyl
2014-3-5840	[총칭명]Polyalkyleneglycolpolymerwith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poly[[methoxysilyl]alkyl]carbamate]ester
2014-3-5841	[총칭명]Carbomonocyclicdicarboxylicacid,polymerwithamino-trialkylcycloalkane(C=4~7)alkanamine,1,6-diisocyanatohexane,alkanedioicacid(C=4~7),alkanediol(C=4~7),substituted-polyoxyalkanediyl(C=2~5)andhydroxy-hydroxyalkyl-alkylalkanoicacid(C=2~3)compd.withdialkyl(C=1~3)alkanamine(C=1~3)
2014-3-5842	[총칭명]Alkylpropenylbicyclicbenzene
2014-3-5843	[총칭명]Methylpropenoicacid,hydroxytricyclodecylester,polymerwithbicycloheptene,methylcarbopolycycloalkylmethylpropenoateandtetrahydro-substituted-heteromonocyclemethylypropenoate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2014-3-5844	1-Ethoxy-2,3-difluoro-4-[2-(trans-4-propylcyclohexyl)ethyl]benzene(CASNo.138366-39-9)
2014-3-5845	N-[(4-Hydroxy-3,5-dimethylphenyl)methyl]-2-propenamamide, homopolymer(CAS No. 863455-98-5)
2014-3-5846	[총칭명]Poly(oxy-1,2-ethanediyl), α -substituted- ω -(methylphenoxy)-,ar-alkenyl-carbomonocyclic,ammoniumsalts
2014-3-5847	4-Ethyl-2-(8-heptadecen-1-yl)-4,5-dihydro-4-oxazolemethanol(CAS No. 68140-98-7)
2014-3-5848	Tetramethylsilane(CAS No. 75-76-3)
2014-3-5849	[총칭명]Alkanediaminepolymerwith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andbis(substitutedalkyl)-o-toluidine,alkyl(C=1~4)-alkanediamine-blocked
2014-3-5850	N,N,N-Trimethyl-3-[(1-oxo-2-propenyl)amino]-1-propanaminium chloride homopolymer(CAS No. 26427-01-0)
2014-3-5851	[총칭명]Heteropolycyclicanhydridepolymerwithdisubstitutedalkanediolandtris(hydroxyalkyl(C=1~6))alkane
2014-3-5852	[총칭명]Carbomonocyclicdicarboxylicacid,polymerwith1,4-benzenediol,dihydroxydicarbomonocycle,substitutedcarbomonocyclicacidandhydroxycarbopolycyclecarboxylicacid
2014-3-5853	[총칭명]Phenol,4,4'-(1-methylethylidene)bis-,polymerwith(chloromethyl)oxirane,heteromonocycle,alkan(C=2~6)-1-olandtrialkyl(C=1~5)alkanoicacidreactionproductswithpolyalkylene(C=1~6),halogenated
2014-3-5854	Cashew, nutshell liquid, polymer with bisphenol A, bisphenol A diglycidyl ether, epichlorohydrin, glycidyl Ph ether and triethylenetetramine, acetate (salt)(CAS No. 932396-47-9)
2014-3-5855	[총칭명]Alkoxy-2,3-dihalogenated-phenoxyalkyl(C=1~4)-alkyl(C=2~5)bicyclohexyl
2014-3-5856	[총칭명]1-Alkoxy-2,3-disubstituted-4-[alkyl(C=2~5)cyclohexylalkoxy(C=1~4)]benzene
2014-3-5857	1-Ethoxy-2,3-difluoro-4-[2-(trans-4-pentylcyclohexyl)ethyl]benzene(CAS No.126162-69-4)
2014-3-5858	4-Ethyl-1,3-dioxolan-2-one(CAS No. 4437-85-8)
2014-3-5859	2-(Octahydro-1,3-dioxo-2H-isoindol-2-yl)ethyl 2-propenoate(CAS No. 106646-48-4)
2014-3-5860	[총칭명]Substitutedphosphoricacid,metalsalt
2014-3-5861	[총칭명]Mixtureof[[[alkyl[substitutedphenyl]alkyl(C=1~5)]phenyl]ethylidene](phenyleneoxyalkylene)-heteromonocycleand[[[alkyl[(heteromonocyclealkoxy)phenyl]ethyl]phenyl]-[(heteromonocyclealkoxy)phenyl]ethyl]cyclicoxy]-propanol
2014-3-5862	[총칭명]Substitutedalkyl(C=1~3)alkenoate(C=2~4)polymerwithheteropolycyclicoxoalkylalkyl(C=1~3)alkenoate(C=2~4)andhydroxyalkenylcarbopolycycle
2014-3-5863	[총칭명]Alkanoicacidreactionproductswithalkyl(C=1~6)alcohol,titaniumsalt
2014-3-5864	6-Chloro-N-methyl-3-pyridinemethanamine(CAS No. 120739-62-0)
2014-3-5865	[총칭명]Alkyl(C=1~5)methacrylatepolymerwithsubstitutedalkyl(C=1~5)alkenoate,alkyl(C=1~4)alkenoate,alkenoicacidandreactionproductofalkane(C=1~6)dioicacidpolymerwithdialkyl(C=1~5)alkanediol,1,6-hexamethylenediisocyanateandhydroxyethylalkenoate
2014-3-5866	4,4'-(1-Methylethylidene)bisphenol polymer with 5-amino-1,3,3-trimethylcyclohexanemethanamine, 1,3-benzenedimethanamine, 2-(chloromethyl)oxirane and α -hydro- ω -hydroxypoly(oxy-1,2-ethanediyl)(CAS No. 145183-62-6)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2014-3-5867	N,N'-(2-Hydroxy-1,3-propanediyl)bis[N-(carboxymethyl)glycine](CAS No. 3148-72-9)
2014-3-5868	4-Chloro-2,6-diaminopyrimidine(CAS No. 156-83-2)
2014-3-5869	[총칭명]Formaldehydepolymerwithsubstitutedcarbopolycycle
2014-3-5870	[총칭명]Formaldehydepolymerwithsubstitutedcarbopolycycleand1-hydroxypyrene
2014-3-5871	[총칭명]Methacrylicacidpolymerwithsubstitutedmethacrylateandalkanepolyolhomopolym erglycidylether,metalsalt
2014-3-5872	[총칭명][Substituted[fluorobutyl]alkyl]acrylatepolymerwithalkyl(C=15~20)acrylate
2014-3-5873	[총칭명]Formaldehydepolymerwithsubstitutedcarbopolycycleandpyrene
2014-3-5874	Methanesulfonic acid, silver(1+) salt (1:1)(CAS No. 2386-52-9)
2014-3-5875	5'-Chloro-2'-methoxyacetoacetanilide(CAS No. 52793-11-0)
2014-3-5876	N-Octadecyloctadecanamide(CAS No. 13276-08-9)
2014-3-5877	[총칭명]Alkanedioic(C=6~10)acidpolymerwithheteropolycyclic-dioneandalkanediol,dibenz oate
2014-3-5878	[총칭명]1-Alkoxy-4-[[alkyl[1,1'-bicyclohexyl]-4-yl]alkoxy(C=1~5)]-2,3-disubstitutedbe nzene
2014-3-5879	[총칭명]2,3-Disubstituted-1-alkoxy(C=1~4)-(alkyl(C=2~5)cyclohexylalkoxy(C=1~4))ben zene
2014-3-5880	3,5-Bis(1,1-dimethylethyl)-4-hydroxybenzoic acid(CAS No. 1421-49-4)
2014-3-5881	[총칭명]Alkylcarbamicacid,mixedesterswithalkyl(C=16~19)carbamicacidandpolyalkylene(C =2~4)glycoletherwithglycerol
2014-3-5882	[총칭명]Amide,from(C>14)fattyacids,alkylenediamineand(C=36)fattyaciddimers
2014-3-5883	[총칭명]Resinacidsandrosinacids,hydrogenated,alkylestersreactionproductswithdecarbox ylatedrosin,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andhydroalk ylalkyl(C=1~5)carbopolycyclicalcohol
2014-3-5884	[총칭명]1-Alkoxy-2,3-disubstituted-4-(alkyl(C=3~7)cyclohexyl)biphenyl
2014-3-5885	[총칭명]2,3-Disubstituted-4-alkoxy(C=3~7)-4'-(alkyl(C=1~4)cyclohexyl)biphenyl
2014-3-5886	[총칭명]Biphenyl-(dialkyl-carbopolycyclyl)-(phenyl-heteropolycyclyl)-substitutedamine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81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실시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4호(2014. 7. 4)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성명	주소	비고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평택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적

- 산업, 물류가 연계되는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국 동부연안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경제거점지역을 육성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 ²)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계	2,074,342	2,073,465.3	△876.7	100.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116,378	76,727.0	△39,651.0	5.5	3.7
	공동주택용지	75,143	37,934.0	△37,209.0	3.6	1.8
	단독주택용지	38,374	36,431.0	△1,943.0	1.8	1.8
	도시형생활주택	2,861	2,362.0	△499.0	0.1	0.1
근린생활시설용지		12,469	10,735.0	△1,734.0	0.6	0.5
상업 시 설	소 계	20,110	20,110.0	-	1.0	1.0
	상업시설용지	20,110	20,110.0	-	1.0	1.0
산 업 시 설 용 지	소 계	805,251	792,445.0	△12,806.0	38.9	38.1
	자동차부품	274,948	259,519.0	△15,429.0	13.3	12.5
	기타기계	103,912	100,064.0	△3,848.0	5.0	4.8
	전자부품	166,723	161,217.0	△5,506.0	8.1	7.7
	화학물질	259,668	271,645.0	11,977.0	12.5	13.1
물류시설용지		583,266	588,526.0	5,260.0	28.1	28.4
공 공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505,820	512,601.3	6,781.3	24.4	24.8
	도로	285,339	279,408.3	△5,930.7	13.8	13.5
	공원	105,705	100,659.0	△5,046.0	5.1	4.8
	수도용지	-	7,740.0	7,740.0	-	0.4
	광장	2,680	-	△2,680.0	0.1	-
	공공녹지	94,120	100,314.0	6,194.0	4.5	4.8
	종교시설	1,194	1,200.0	6.0	0.1	0.1
	오수처리시설	-	1,020.0	1,020.0	-	0.1
	공공청사	6,300	6,292.0	△8.0	0.3	0.3
	공공공지	-	964.0	964.0	-	0.1
	주차장	9,018	12,886.0	3,868.0	0.4	0.6
	보행자도로	1,464	2,118.0	654.0	0.1	0.1
	기타	소 계	31,048	72,321.0	41,273.0	1.5
유보지		-	41,855.0	41,855.0	-	2.0
복합지원용지		31,048	30,466.0	△582.0	1.5	1.5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나. 면적 : 2,073,465.3m²

4. 개발사업시행기간 : 2008년 ~ 2020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 개발계획 참조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41-351-6211)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송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평택시 포송읍 회곡리, 신영리, 만호리 일원	-	증)2,073,465.3	2,073,465.3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73,465.3	-	2,073,465.3	100.0	
주거지역	소 계	-	증) 153,964.0	153,964.0	7.4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74,591.0	74,591.0	3.5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651.0	1,651.0	0.1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증) 44,802.0	44,802.0	2.2	
	준주거지역	-	증) 32,920.0	32,920.0	1.6	
상업지역	소 계	-	증) 690,511.0	690,511.0	33.3	
	일반상업지역	-	증) 37,237.0	37,237.0	1.8	
	유통상업지역	-	증) 653,274.0	653,274.0	31.5	
공업지역	소 계	-	증) 1,010,791.0	1,010,791.0	48.8	
	일반공업지역	-	증) 921,809.0	921,809.0	44.5	
	준공업지역	-	증) 88,982.0	88,982.0	4.3	
녹지지역	소 계	-	증) 218,199.3	218,199.3	10.5	
	자연녹지지역	-	증) 218,199.3	218,199.3	10.5	
관리지역		734,916.0	감) 734,916.0	-	-	비도시 지역
계획관리지역		849.3	감) 849.3			
농림지역		1,337,700.0	감) 1,337,700.0	-	-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 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58	14,488	281,526.3	12	9,087	210,052	37	4,374	57,538	9	1,027	12,035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25	12,806	264,748	12	9,087	210,052	8	2,779	43,226	5	940	11,470
소로	33	1,682	14,877	-	-	-	29	1,595	14,312	4	87	565
기타	-	-	1,901.3	-	-	-	-	-	-	-	-	-

주)기타면적은 가감속차로 각각면적임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	24	집산도로	878	중1-4	중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2	24	집산도로	618	중1-4	서해안 고속도로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3	24	집산도로	1,414	중1-7	중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4	24	집산도로	859	국도38호선	중1-3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5	24	집산도로	645	중1-4	중1-7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6	24	집산도로	570	중1-4	중1-7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7	24	집산도로	798	국도38호선	중1-3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8	20	집산도로	626	중1-3	중1-9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9	20	집산도로	1,645	중1-3	중1-3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0	20	집산도로	441	중1-9	중1-9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1	20	집산도로	426	중1-9	중1-9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2	20	집산도로	167	중2-6	중2-7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	15	집산도로	360	중1-7	중2-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	15	집산도로	210	중1-7	중2-1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3	15	집산도로	394	국도38호선	중2-4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4	15	집산도로	670	중1-7	중2-6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5	15	집산도로	285	중2-4	중2-6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6	15	집산도로	583	중1-3	소2-16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7	15	집산도로	187	중1-12	완충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8	15	집산도로	90	중1-19	완충08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	12	집산도로	202	중2-3	중2-4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2	12	집산도로	140	중3-1	중3-1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3	12	집산도로	186	중2-3	중2-4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4	12	집산도로	285	중2-4	중2-6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5	12	집산도로	127	중1-12	구역계북측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	9	국지도로	148	중3-3	중3-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10	소2-1	소2-20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10	소2-1	소2-2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10	소2-7	소2-2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5	9	국지도로	164	중3-4	중3-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6	9	국지도로	44	중3-4	소2-7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7	9	국지도로	331	중3-4	중3-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8	9	국지도로	44	중3-4	소2-7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9	8	국지도로	10	소2-7	소2-2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0	9	국지도로	72	중2-4	중3-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1	9	국지도로	130	소2-10	중3-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2	8	국지도로	10	소2-11	소2-27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3	9	국지도로	177	중2-4	중2-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4	9	국지도로	132	소2-14	소2-1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5	8	국지도로	11	소2-14	소2-28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6	8	국지도로	12	중2-6	구역계동측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7	8	특수도로	31	중1-7	중2-1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18	8	특수도로	34	중1-7	중2-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19	8	특수도로	49	중2-2	공원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0	8	특수도로	12	중2-3	소2-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1	8	특수도로	11	중2-4	소2-3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2	8	특수도로	11	중2-4	소2-4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3	8	특수도로	22	중2-5	소2-7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4	8	특수도로	44	소2-7	중3-4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5	8	특수도로	21	중2-4	소2-5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6	8	특수도로	11	중2-6	소2-9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7	8	특수도로	11	중2-6	소2-12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8	8	특수도로	11	중2-6	소2-15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29	8	국지도로	12	중1-9	구역계북측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	4	국지도로	28	중1-8	구역계북측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2	4	국지도로	19	중1-8	구역계북측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3	4	국지도로	25	중1-9	구역계북측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4	4	국지도로	15	중1-9	구역계북측	일반도로			

나)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	12,886		
신설	1	노외주차장	포승읍 회곡리 335-10 일원	4,029		
신설	2	노외주차장	포승읍 회곡리 630-12 일원	1,649		
신설	3	노외주차장	포승읍 회곡리 465-3 일원	1,818		
신설	4	노외주차장	포승읍 회곡리 465-16 일원	1,632		
신설	5	노외주차장	포승읍 회곡리 620-1 일원	912		
신설	6	노외주차장	포승읍 회곡리 612-3 일원	977		
신설	7	노외주차장	포승읍 회곡리 산15-3 일원	933		
신설	8	노외주차장	포승읍 회곡리 산17-13 일원	936		

2) 공간시설

가) 공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4개소	100,659		
소계	-	공원	근린공원	1개소	23,792		
신설	1	공원	근린공원	포승읍 만호리 471-4 일원	23,792		저1중복결정
소계	-	공원	수변공원	1개소	71,375		
신설	1	공원	수변공원	포승읍 회곡리 501 일원	71,375		저2중복결정
소계	-	공원	소공원	1개소	1,911		
신설	1	공원	소공원	포승읍 회곡리 507-1 일원	1,911		
소계	-	공원	어린이공원	1개소	3,581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포승읍 회곡리 495-11 일원	3,581		

나) 녹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15개소	100,314		
소계	-	-	완충녹지	5개소	41,801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회곡리 630-36 일원	7,151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만호리 525-2 일원	17,812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회곡리 298-1 일원	7,154		
신설	4	녹지	완충녹지	회곡리 277 일원	4,034		
신설	5	녹지	완충녹지	회곡리 497-6 일원	5,650		
소계	-	-	경관녹지	10개소	58,513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회곡리 249-2 일원	5,336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회곡리 402-4 일원	2,924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희곡리 산44 일원	13,920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희곡리 453 일원	1,042		
신설	5	녹지	경관녹지	희곡리 485-7 일원	1,877		
신설	6	녹지	경관녹지	희곡리 487-3 일원	3,775		
신설	7	녹지	경관녹지	희곡리 488 일원	1,896		
신설	8	녹지	경관녹지	희곡리 488-10 일원	820		
신설	9	녹지	경관녹지	신영리 206-4 일원	7,759		
신설	10	녹지	경관녹지	희곡리 산19-1 일원	19,164		

다) 공공공지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공공공지		포승읍 희곡리 630-49 일원	964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수도공급설비	송수시설	포승읍 만호리 488-1 일원	7,740		
신설	2	수도공급설비	배수시설	포승읍 만호리 471-4 일원	(1,440)		근1중복결정

4) 방재시설

가) 유수지(저류시설)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포승읍 만호리 473-13 일원	(8,000)		근1중복결정
신설	2	유수지	저류시설	포승읍 희곡리 508 일원	(13,731)		수1중복결정

5)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중계펌프장)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하수도	중계펌프장	포승읍 만호리 471-5 일원	1,020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합 계		36,431	-			36,431
D1	1	1,547	1	희곡리 501-2 일원	258	외국인 전용
			2	희곡리 산18-2 일원	258	외국인 전용
			3	희곡리 산18-2 일원	258	외국인 전용
			4	희곡리 산18-1 일원	258	외국인 전용
			5	희곡리 산18-1 일원	258	외국인 전용
			6	희곡리 산18-1 일원	257	외국인 전용
	2	924	1	희곡리 산18-1 일원	308	외국인 전용
			2	희곡리 산19-1 일원	308	외국인 전용
			3	희곡리 산19-1 일원	308	외국인 전용
	3	912	1	희곡리 620-1 일원	304	외국인 전용
			2	희곡리 산19-1 일원	304	외국인 전용
			3	희곡리 산19-1 일원	304	외국인 전용
D2	1	2,962	1	희곡리 산18-1 일원	246	
			2	희곡리 산18-1 일원	247	
			3	희곡리 산18-1 일원	247	
			4	희곡리 산18-1 일원	247	
			5	희곡리 산18-1 일원	247	
			6	희곡리 산17-2 일원	247	
			7	희곡리 497-9 일원	247	
			8	희곡리 497-9 일원	247	
			9	희곡리 497-9 일원	247	
			10	희곡리 497-7 일원	247	
			11	희곡리 497-7 일원	247	
			12	희곡리 497-6 일원	246	
	2	924	1	희곡리 산18-1 일원	231	
			2	희곡리 산18-1 일원	231	
			3	희곡리 산18-1 일원	231	
			4	희곡리 612-3 일원	231	
	3	2,452	1	희곡리 612-3 일원	246	
			2	희곡리 497-10 일원	245	
			3	희곡리 497-10 일원	245	
			4	희곡리 497-10 일원	245	
			5	희곡리 495-9 일원	245	
			6	희곡리 612-3 일원	245	
			7	희곡리 산17-5 일원	245	
			8	희곡리 산17-5 일원	245	
			9	희곡리 495-11 일원	245	
			10	희곡리 495-10 일원	24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D2	4	912	1	회곡리 495-8 일원	228		
			2	회곡리 495-8 일원	228		
			3	회곡리 495-9 일원	228		
			4	회곡리 495-9 일원	228		
	5	2,923	1	회곡리 612-3 일원	234		
			2	회곡리 612-3 일원	234		
			3	회곡리 612-10 일원	234		
			4	회곡리 612-10 일원	234		
			5	회곡리 612-11 일원	234		
			6	회곡리 산17-5 일원	234		
			7	회곡리 517-25 일원	234		
			8	회곡리 612-3 일원	257		
			9	회곡리 612-13 일원	257		
			10	회곡리 612-11 일원	257		
			11	회곡리 612-11 일원	257		
			12	회곡리 산17-5 일원	257		
	6	2,913	1	회곡리 612-4 일원	243		
			2	회곡리 612-4 일원	243		
			3	회곡리 612-4 일원	247		
			4	회곡리 612-4 일원	243		
			5	회곡리 612-4 일원	243		
			6	회곡리 612-4 일원	242		
			7	회곡리 612-13 일원	242		
			8	회곡리 612-12 일원	242		
			9	회곡리 612-12 일원	242		
			10	회곡리 산17-11 일원	242		
			11	회곡리 산17-11 일원	242		
			12	회곡리 609-4 일원	242		
	D3	1	2,962	1	회곡리 495-9 일원	246	
				2	회곡리 495-5 일원	247	
				3	회곡리 495-5 일원	247	
				4	회곡리 495-5 일원	247	
				5	회곡리 산14 일원	247	
				6	회곡리 산14 일원	247	
				7	회곡리 산14 일원	247	
				8	회곡리 산14 일원	247	
9				신영리 산203-1 일원	247		
10				회곡리 517-23 일원	247		
11				회곡리 495-12 일원	247		
12				신영리 277-3 일원	246		
2		912	1	회곡리 495-7 일원	228		
			2	회곡리 495-13 일원	228		
			3	회곡리 495-13 일원	228		
			4	회곡리 495-8 일원	22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D3	3	3,428	1	회곡리 495-6 일원	244	
			2	회곡리 495-6 일원	245	
			3	회곡리 603-1 일원	245	
			4	회곡리 603-1 일원	245	
			5	회곡리 603-1 일원	245	
			6	회곡리 605-3 일원	245	
			7	신영리 산203-1 일원	245	
			8	회곡리 495-13 일원	245	
			9	회곡리 517-23 일원	245	
			10	회곡리 517-23 일원	245	
			11	회곡리 605-2 일원	245	
			12	회곡리 605-2 일원	245	
			13	회곡리 산15-3 일원	245	
			14	회곡리 산15-3 일원	244	
	4	923	1	신영리 산203-1 일원	230	
			2	신영리 산203-2 일원	231	
			3	신영리 산203-3 일원	231	
			4	신영리 산203-3 일원	231	
	5	2,340	1	회곡리 517-23 일원	234	
			2	회곡리 산15-3 일원	234	
			3	회곡리 산15-3 일원	234	
			4	회곡리 산15-3 일원	234	
			5	회곡리 산15-3 일원	234	
			6	회곡리 517-23 일원	234	
			7	회곡리 산15-3 일원	234	
			8	회곡리 산15-3 일원	234	
			9	회곡리 산15-3 일원	234	
			10	회곡리 산15-3 일원	234	
	6	881	1	신영리 산203-3 일원	220	
			2	신영리 산203-3 일원	221	
			3	신영리 산203-3 일원	220	
			4	신영리 산203-3 일원	220	
	7	2,250	1	회곡리 606-3 일원	250	
			2	회곡리 산15-3 일원	250	
			3	회곡리 산15-3 일원	250	
			4	회곡리 산15-3 일원	250	
			5	회곡리 산15-3 일원	250	
			6	회곡리 산15-3 일원	250	
			7	신영리 산203-3 일원	250	
			8	신영리 산203-3 일원	250	
			9	신영리 산203-3 일원	25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D4	1	2,250	1	희곡리 606-1 일원	282	
			2	희곡리 606-1 일원	281	
			3	희곡리 606-1 일원	281	
			4	희곡리 산15-3 일원	281	
			5	희곡리 산15-3 일원	281	
			6	희곡리 산15-3 일원	281	
			7	신영리 산203-3 일원	281	
			8	신영리 산203-3 일원	282	
	2	3,079	1	희곡리 산15-3 일원	305	
			2	희곡리 산15-3 일원	305	
			3	희곡리 산15-3 일원	305	
			4	희곡리 산15-3 일원	305	
			5	희곡리 산15-3 일원	305	
			6	신영리 산202-1 일원	306	
			7	희곡리 산15-3 일원	312	
			8	희곡리 산15-3 일원	312	
			9	신영리 산202-1 일원	312	
			10	신영리 산202-1 일원	312	
	3	937	1	신영리 산202-1 일원	312	
2			신영리 산202-1 일원	313		
3			신영리 산202-1 일원	312		

2)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합 계		37,934	-		37,934
A	A-1BL	37,934	신영리 256-7 일원		37,934

3) 도시형생활주택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합 계		2,362	-		2,362
도시	도시1	2,362	희곡리 501-2 일원		2,362

4)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합 계		20,110	-			20,110
일상	1	3,882	1	희곡리 630-7 일원	1,941	
			2	희곡리 630-7 일원	1,941	
	2	3,544	1	희곡리 630-7 일원	1,772	
			2	희곡리 630-7 일원	1,772	
	3	1,649	1	희곡리 630-7 일원	1,649	
	4	2,784	1	희곡리 465 일원	1,392	
			2	희곡리 465-1 일원	1,392	
	5	2,350	1	희곡리 465-2 일원	1,175	
			2	희곡리 465-3 일원	1,175	
	6	4,044	1	희곡리 465 일원	2,022	
			2	희곡리 465-1 일원	2,022	
	7	1,857	1	희곡리 465-2 일원	1,857	

5) 근생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합 계		10,735	-			10,735
근생	1	2,034	1	희곡리 501 일원	1,019	
			2	희곡리 501 일원	1,015	
	2	2,421	1	희곡리 501 일원	800	
			2	희곡리 499-1 일원	800	
			3	희곡리 501 일원	821	
	3	6,280	1	희곡리 501-1 일원	807	
			2	희곡리 501-1 일원	825	
			3	희곡리 501-2 일원	825	
			4	희곡리 산18-1 일원	1,357	
			5	희곡리 499-2 일원	818	
			6	희곡리 499-2 일원	818	
			7	희곡리 499-1 일원	830	

6)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합 계		792,445	-		-
산업	산업1(외국)	159,908	희곡리 299-3 일원		대지분할가능
	산업2	15,806	희곡리 249 일원		
	산업3	95,931	희곡리 398-1 일원		대지분할가능
	산업4(외국)	147,532	희곡리 산31-1 일원		대지분할가능
	산업5	111,987	희곡리 547 일원		대지분할가능
	산업6	19,474	희곡리 산42-1 일원		대지분할가능
	산업7	80,590	희곡리 531-1 일원		대지분할가능
	산업8	60,088	희곡리 455-2 일원		대지분할가능
	산업9	4,645	희곡리 488-10 일원		
	산업10	9,106	희곡리 488-5 일원		
	산업11(외국)	52,496	희곡리 498-2 일원		대지분할가능
	산업12(외국)	34,882	신영리 129-1 일원		대지분할가능

※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가구 및 획지 조서(인접 획지에 대한 합필 가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산업	산업1 (외국)	159,908	1	희곡리 299-3 일원	12,011	
			2	희곡리 391-5 일원	12,011	
			3	희곡리 391-2 일원	13,940	외국인투자단지
			4	희곡리 329-4 일원	13,940	외국인투자단지
			5	희곡리 372-4 일원	13,941	외국인투자단지
			6	희곡리 717 일원	13,941	외국인투자단지
			7	희곡리 301 일원	12,096	
			8	희곡리 311-2 일원	12,096	
			9	희곡리 312 일원	13,983	외국인투자단지
			10	희곡리 318-2 일원	13,983	외국인투자단지
			11	희곡리 377-3 일원	13,983	외국인투자단지
			12	희곡리 산32 일원	13,983	외국인투자단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산업	산업3	95,931	1	회곡리 398-1 일원	16,000	
			2	회곡리 399-3 일원	13,963	
			3	회곡리 317 일원	13,963	
			4	회곡리 712-8 일원	13,963	
			5	회곡리 406-1 일원	12,680	
			6	회곡리 411-9 일원	12,681	
			7	회곡리 411-24 일원	12,681	
	산업4 (외국)	147,532	1	회곡리 산31-1 일원	10,852	외국인투자단지
			2	회곡리 702-2 일원	10,852	외국인투자단지
			3	회곡리 688 일원	10,852	외국인투자단지
			4	회곡리 687-1 일원	10,852	외국인투자단지
			5	회곡리 658-2 일원	10,852	외국인투자단지
			6	회곡리 658-2 일원	10,852	외국인투자단지
			7	회곡리 351 일원	10,852	외국인투자단지
			8	회곡리 709 일원	11,928	외국인투자단지
			9	회곡리 703 일원	11,928	외국인투자단지
			10	회곡리 산28 일원	11,928	외국인투자단지
			11	회곡리 656-1 일원	11,928	외국인투자단지
			12	회곡리 653-3 일원	11,928	외국인투자단지
			13	회곡리 466-1 일원	11,928	외국인투자단지
	산업5	111,987	1	회곡리 547 일원	11,548	
			2	회곡리 553-2 일원	11,548	
			3	회곡리 468 일원	11,549	
			4	회곡리 468-5 일원	11,549	
			5	회곡리 468-9 일원	11,548	
			6	회곡리 540 일원	10,849	
			7	회곡리 523-5 일원	10,849	
			8	회곡리 518-1 일원	10,849	
			9	회곡리 470-3 일원	10,849	
			10	회곡리 470-6 일원	10,849	
	산업6	19,474	1	회곡리 산42-1 일원	6,027	
			2	회곡리 산45 일원	8,327	
			3	회곡리 455-14 일원	5,12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산업	산업7	80,590	1	희곡리 531-1 일원	6,736	
			2	희곡리 528-5 일원	6,736	
			3	희곡리 528-11 일원	6,736	
			4	희곡리 472-13 일원	6,736	
			5	희곡리 472-7 일원	6,736	
			6	희곡리 472-8 일원	6,736	
			7	희곡리 528-12 일원	6,695	
			8	희곡리 528-15 일원	6,696	
			9	희곡리 산48-1 일원	6,696	
			10	희곡리 473 일원	6,696	
			11	희곡리 473-3 일원	6,696	
			12	희곡리 473-5 일원	6,695	
	산업8	60,088	1	희곡리 455-2 일원	4,009	
			2	희곡리 455-2 일원	4,009	
			3	희곡리 461-2 일원	4,008	
			4	희곡리 459-2 일원	4,008	
			5	희곡리 484-4 일원	4,008	
			6	희곡리 484-5 일원	4,008	
			7	희곡리 484-7 일원	4,009	
			8	희곡리 484-10 일원	4,009	
			9	희곡리 486 일원	4,670	
			10	희곡리 486-3 일원	4,670	
			11	희곡리 486-8 일원	4,670	
			12	희곡리 487-1 일원	4,670	
산업11 (외국)	52,496	1	희곡리 498-2 일원	10,797	외국인투자단지	
		2	희곡리 497-5 일원	10,797	외국인투자단지	
		3	희곡리 497 일원	10,300	외국인투자단지	
		4	희곡리 497 일원	10,301	외국인투자단지	
		5	희곡리 4495-3 일원	10,301	외국인투자단지	
산업12 (외국)	34,882	1	신영리 129-1 일원	11,627	외국인투자단지	
		2	신영리 129-2 일원	11,628	외국인투자단지	
		3	신영리 277 일원	11,627	외국인투자단지	

7) 물류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합 계		588,526	-		588,526	
물류	물류1	131,710	만호리 410-4 일원		131,710	대지분할가능
	물류2	132,800	만호리 463-2 일원		132,800	대지분할가능
	물류3	156,161	만호리 474-1 일원		156,161	대지분할가능
	물류4	167,855	만호리 469-4 일원		167,855	대지분할가능

※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가구 및 획지 조서(인접 획지에 대한 합필 가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물류	물류1	131,710	1	만호리 410-4 일원	32,928	
			2	만호리 421-4 일원	32,927	
			3	만호리 421 일원	32,927	
			4	만호리 467-3 일원	32,928	
	물류2	132,800	1	만호리 463-2 일원	18,235	
			2	만호리 501 일원	18,235	
			3	만호리 413-4 일원	10,005	
			4	회곡리 335 일원	10,005	
			5	회곡리 343-2 일원	10,005	
			6	회곡리 292-2 일원	18,150	
			7	회곡리 327-1 일원	18,150	
			8	회곡리 332-2 일원	10,005	
			9	회곡리 332-4 일원	10,005	
			10	회곡리 335-7 일원	10,005	
	물류3	156,161	1	만호리 474-1 일원	12,030	
			2	만호리 470-4 일원	12,030	
			3	만호리 475-4 일원	36,517	
			4	회곡리 344 일원	36,518	
			5	회곡리 630-71 일원	36,518	
			6	회곡리 630-14 일원	11,274	
			7	회곡리 630-14 일원	11,274	
	물류4	167,855	1	만호리 469-4 일원	21,571	
			2	회곡리 755-1 일원	21,572	
			3	회곡리 759-1 일원	21,572	
			4	회곡리 351-11 일원	21,572	
			5	회곡리 343-10 일원	20,392	
			6	회곡리 671 일원	20,392	
			7	회곡리 349-13 일원	20,392	
8			회곡리 351-5 일원	20,392		

8) 복합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합 계		30,466	-		30,466
복합 지원	지원1	22,910	희곡리 725-1 일원		22,910
	지원2	7,556	희곡리 465-8 일원		7,556

9)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합 계		6,292	-			6,292
공청	공청1	6,292	1	희곡리 465-11 일원	1,158	
			2	희곡리 465-10 일원	1,034	
			3	희곡리 465-12 일원	2,500	
			4	희곡리 465-14 일원	800	
			5	희곡리 465-15 일원	800	

10)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합 계		1,200	-		1,200
종	종1	1,200	신영리 131-4 일원		1,200

11) 주차장용지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합 계		12,886	-		12,886
주	주1	4,029	희곡리 335-10 일원		4,029
	주2	1,649	희곡리 630-12 일원		1,649
	주3	1,818	희곡리 465-3 일원		1,818
	주4	1,632	희곡리 465-16 일원		1,632
	주5	912	희곡리 620-1 일원		912
	주6	977	희곡리 612-3 일원		977
	주7	933	희곡리 산15-3 일원		933
	주8	936	희곡리 산17-13 일원		936

12) 유보지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합 계		41,855	-	41,855	
유보	유보1	41,855	신영리 208 일원	41,855	

13) 오수처리시설용지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합 계		1,020	-	1,020	
하	하1	1,020	만호리 471-5 일원	1,020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주택전용필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1, D4	D1, D4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간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급적 2필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감 형성을 고려하여 지붕면적의 2/3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권장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권장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1m : 도로변
		허 용 가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가구 이하

○ 점포주택필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2, D3	D2, D3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간 제외) - 건축연면적의 40% 범위내에서 지상 1층이하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전면도로로부터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이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감 형성을 고려하여 지붕면적의 2/3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권장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권장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1m : 도로변
		허 용 가 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6가구 이하 • 점포주택 : 점포부분의 5가구 이하

2) 공동주택(아파트)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1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 A :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B : 전용면적 60~85㎡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2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30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 중앙부에는 가급적 탑상형 주동 또는 고층주동이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1동의 길이는 기준층에 대하여 호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로 함, 다만 테라스형 하우스 및 연립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초과의 아파트는 4호이내로 함 -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는 50m이내 또는 6호 이내로 함 • 지붕형태는 통일감 형성이 가능한 형태를 하여야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함 • 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 이하로 함 •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함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르며, 결정도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평택시 조례에 따름 • 인접 도로변으로부터 건축한계선 6m를 지정, 이는 주거동에 한함

3)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도생	도생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도시형생활주택 중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원룸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공동주택과 그 외 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주거용도의 비율은 80% 이상 90%미만으로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일반업무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원, 안마시술소,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80% 이하(주거부분 : 250%이하)
		높이	• 10층이하
		배치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이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감 형성을 고려하여 지붕면적의 2/3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설치 금지
		색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 2m : 도로변

4)근린생활시설용지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 생	근 생1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제외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이상, 5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감 형성을 고려하여 지붕면적의 2/3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며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 담장설치 금지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지정선 2m : 주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이면도로변

5) 상업시설용지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일상	일상1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외의 용도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시행지침 제57조의 규정에 적합한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방향은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단, 20m 이상의 도로가 2개이상 면할 때 임의로 선택가능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에 접한 1층부는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투시형 셔터를 사용 • 건축물의 지붕, 출입구, 계단실, 창문 등은 가급적 박공모양의 디자인을 가미하고, 통일성 있게 계획 • 담장설치 금지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지정선 3m : 주도로변

6) 산업시설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산업1 ~ 산업12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아래의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부수용도에 한함)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공장용지의 경우 학교위생정화 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한다. <p>※유치업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가구번호</th> <th style="width: 50%;">유치업종</th> </tr> </thead> <tbody> <tr> <td>산업 1,2,3</td> <td>화학물질</td> </tr> <tr> <td>산업 4,5</td> <td>자동차부품</td> </tr> <tr> <td>산업 6,7</td> <td>기타기계</td> </tr> <tr> <td>산업 8,9,10,11,12</td> <td>전자부품</td> </tr> </tbody> </table>	가구번호	유치업종	산업 1,2,3	화학물질	산업 4,5	자동차부품	산업 6,7	기타기계	산업 8,9,10,11,12	전자부품
		가구번호	유치업종										
		산업 1,2,3	화학물질										
		산업 4,5	자동차부품										
		산업 6,7	기타기계										
		산업 8,9,10,11,12	전자부품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하 										
		용 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이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단조로운 외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 • 담장설치 금지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7) 물류시설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물류	물류1 ~ 물류4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조에 규정된 시설 중 아래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터미널 및 창고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 그 밖에 화물의 운송·하역·분류·포장·보관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부대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이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단조로운 외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 • 담장설치 금지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근린공원 • 건축한계선 6m : 지원 1, 주차장

8) 복합지원시설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지원1 ~ 지원2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의 도시형 공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의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동식물원 중 동물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판매시설(상점, 소매시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한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숙박시설(고시원제외)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10층이하
		배 치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이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형 태	• 건축물의 단조로운 외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형태(고층부 및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지정선 3m :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 물류2 인접대지선

9) 종교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종1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 또는 6에 해당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의 종교집회장과 종교시설중의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및 부속용도(주)에 한한다.(봉안당 제외) ※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배 치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형 태	• 종교시설의 건축물 및 공작물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10) 공공청사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청	공청1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에 해당하는 업무시설 중 공공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고시원 제외) 												
			※권장용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 및 획지번호</th> <th>권장용도</th> </tr> </thead> <tbody> <tr> <td>공청1-1</td> <td>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우체국(분국포함) 등 이와 비슷한 용도</td> </tr> <tr> <td>공청1-2</td> <td>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지구대 등 이와 비슷한 용도</td> </tr> <tr> <td>공청1-3</td> <td>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등 이와 비슷한 용도</td> </tr> <tr> <td>공청1-4</td> <td>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지역자치센터(동사무소) 등 이와 비슷한 용도</td> </tr> <tr> <td>공청1-5</td> <td>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소방서(소방파출소포함) 등 이와 비슷한 용도</td> </tr> </tbody> </table>	가구 및 획지번호	권장용도	공청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우체국(분국포함)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지구대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지역자치센터(동사무소)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소방서(소방파출소포함)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가구 및 획지번호	권장용도											
			공청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우체국(분국포함)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지구대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지역자치센터(동사무소)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소방서(소방파출소포함) 등 이와 비슷한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배 치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이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함 개방감을 주기 위해 투시형서터를 1층 벽면의 1/2이상 설치하도록 함 담장설치 금지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11) 주차장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주1 ~ 주8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제8호에 해당하는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주2,주3 : 480%이하 • 주4,주5,주6,주7,주8 : 320%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주2,주3 : 6층이하 • 주4,주5,주6,주7,주8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2) 하수도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하수도	하1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제8호에 해당하는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80%이하
		높 이	• 2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D1 ~ D4, 근생1	D1 ~ D4, 근생1	차량의 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및 점포형주택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차통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세대)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점포주택은 1가구당 1대와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에 대한 법정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구조 및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구획과 건물 내벽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주차장 바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의 이용을 권장하며,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독주택의 차고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지 않으며, 주건축물과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생활녹지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한다. 다만 차량진출입 및 보행을 위한 공간은 예외로 한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대지내 조경 및 옥외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급적 옥외마당은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점포형주택은 건축물 측면에 설치하고 단독주택은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축물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하고 지상 조경부에 대중에 상시 개방될 수 있는 휴식공간(벤치, 파고라등)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공동주택(아파트)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A-1	A-1	차량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의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차량출입구가 폭 20m 이상도로와 접속할 경우에는 가·감속 차선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척한다. 	
		단지내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중 근리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단지내 보행자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보행자통로는 단지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성되되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아파트)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시에는 총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의 친환경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3대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한 건축한계선내의 공간에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2m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아파트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포켓공간을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결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아파트단지 각각부의 쌈지공원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생1	도생1	보행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여 높이차를 3cm이하로 한다. 건축물 주출입구에서 0.3m 전면에는 점형 블럭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차량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의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설치기준은 가구수에 따라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15cm이하로 한다. 	

4)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일상1	일상1	보행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여 높이차를 3cm이하로 한다. 건축물 주출입구에서 0.3m 전면에는 점형 블럭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차량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불허한다. 차량출입구가 지정되는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가로에 면한 건축물 전면부에 배치를 금지한다.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등을 계획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 • 가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한다.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15cm이하로 한다.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5) 산업·물류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산업1 ~ 산업12, 물류1 ~ 물류4	산업1 ~ 산업12, 물류1 ~ 물류4	차량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점도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물류시설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변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6) 복합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원1 ~ 지원2	지원1 ~ 지원2	차량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에서는 차량출입이 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변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되 각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7)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종1, 공청1, 주1 ~ 주8, 하1	종1, 공청1, 주1 ~ 주8, 하1	차량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접도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용지내 전체 주차대수의 50%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변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주차장 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용지는 결정도에 지정된 위치에 차폐조경을 하여야 한다. • 하수도시설은 결정도에 지정된 위치에 차폐조경을 하여야 한다. 단 차량출입구간은 제외한다. • 차폐조경의 경우 교목은 주변가로와 동일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고 하부에는 관목류나 화관목류를 식재토록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7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224호(2006.01.05), 제2009-253(2009.07.24), 제2012-369호(2012.09.05), 제2013-314(2013.11.21), 제2014-99(2014.03.31)로 고시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부여-의 정부)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탕정면 용두리		충 남 아산시 남 동 95-5답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58-19임		4.9
변경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부여-의 정부)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탕정면 용두리		충 남 아산시 남 동 95-5답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58-19임		4.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남동교차로 가·감속차로 추가 설치에 따른 편입토지의 세목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05년 12월 ~ 2014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사업지역 : 충남 아산시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배방읍 공수리	781	구거	202	781-1	150		국(농수산부)				
배방읍 공수리	841	답	99	841-1	28		이미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0 탑마을 507-1802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여주, 이천지사)	근저 당권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배방읍 공수리	862	답	326	862-1	273		이병근	아산군 배방면 남리 91			
배방읍 공수리	911	구거	808	911-1	147		국(건설교통 부)				
배방읍 구령리	821	답	1,984	821-1	116		임왕혁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651 산들마을 204-1102			
배방읍 구령리	853	답	1,466	853-1	1,275		국(건설부)				
배방읍 구령리	901	구거	453	901-1	411		국(농수산부)				
배방읍 구령리	1383	답	490	1383-1	309		김종원	천안시 신방동 874 성지새말아파트2 단지 201-1402			
아산시 남동	161-8	구거	1,117	161-19	101		국(농수산부)				
아산시 신동	166-5	답	3,057	166-21	85		김영진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16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1)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6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8월 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해리) 명목					
경인항 협성등부표	N 37°33' 38.5" E 126°35' 40.0"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4. 7.31.	특수 표지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울산신항한라 파고관측등부표	N 35° 27' 42.0" E 129° 23' 24.0"	F1(5)Y20s	2	황구형 (0.7m)	2014. 7.30.	방파제 축조공사 주변 파고 관측용	<소유자> (주)한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4-9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외병도 등표	N 34°22' 23.70" E 125°56' 36.82"	FIG5s	12	9	녹 원형 콘크리트조 14m	2014. 7.30	항행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44호)
-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대원 대전 죽동 A2BL 대원칸타빌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A2블럭
 - 성명 : 현장대리인 남윤수
-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552-32천
 - 허가량 : 50m³/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석천(지방하천)
-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8. 1. ~ 2016.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3-041호)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코오롱글로벌(주) 경부고속철도 6-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옛신탄진로 2 코오롱워터에너지 2층
 - 성명 : 현장대리인 김현오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456천
 - 허가량 : 12m³/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동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8. 2. ~ 2016.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북 완주군 용진면 구역리 38-3 (유)우정토건
3. 공 사 명 : 소양천 상운지구 하천정비사업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3가 56 만경강수계 소양천(지방)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4 만경강수계 소양천(지방)
6. 허 가 량 : 26m³/일
7. 허가기간 : 2014년 7월 31일 ~ 2015년 8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정선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4. 하 천 명 : 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503-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400m³/일
 8. 허가기간 : 2014. 7. 31. ~ 2019. 7. 30.
 10. 공작물 설치내역 :
 ○ 집수정(B3,000×L2,000×H5,000)
 ○ 집수매거 및 송수관로(D100) 628.5m
 ○ 펌프(7.5HP×2대)

●부경대학교고시제2014-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한 『부경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같은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부경대학교 총장

1. 사 업 명 : 부경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개요 및 규모
 가. 부경대학교

(단위 : 백만원, m², 명)

사업위치	사업규모				공사기간	비 고
	총사업비	연면적	층수	수용인원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29,726	20,152.38	지하1 지상19	1,100	착공일로부터 604일	

나. 한국해양대학교

(단위 : 백만원, m², 명)

사업위치	사업규모				공사기간	비 고
	총사업비	연면적	층수	수용인원		
부산시 영도구동삼동 1168번지일원	40,397	27,060.01	지하1 지상5	1,500	착공일로부터 604일	

3.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가. 법 인 명 : 부산에코에듀(주)

나. 주 소 :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5층(02-729-2239)

4. 주무관청에 관한 사항

가. 주무관청 : 부경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

나. 주 소

- 부경대학교 :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051-629-5153)

- 한국해양대학교 :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727(051-410-4057)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7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금 용 위 원 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김성희	640902-1××××××	인천시 남동구 만수서로 55, 127동 1405호 (향촌휴먼시아 1단지)	3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증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아르테미스트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4.07.31.

●법무부공고제2014-172호

「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인수·합병(이하 “M&A”) 시장 확대가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M&A 관련 법 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이에 다양한 M&A 구조를 도입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실무상 혼란이 있는 M&A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M&A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의 도입(안 제360조의3, 제530조의6 등)

1) 2012년 개정 「상법」은 합병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존속회사의 모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제523조의2),

※ 삼각합병 : A 회사의 자회사인 S 회사가 T 회사를 합병하면서, 소멸하는 T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교부함

2) 인수대상 회사가 합병의 존속회사가 되는 ‘역삼각합병’은 M&A에서의 실제적 수요(인수대상회사가 가진 상호, 영업권, 특허권 등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경우 등)를 충족시키는데 유용한 구조임에도 해당 법문언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음

3) 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에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여 이러한 삼각주식교환을 통해 역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함

4) 아울러 회사 분할합병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함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회사를 활용한 다양한 M&A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M&A에 대한 경제적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도 도입(안 제374조의3)

- 1) 「상법」 제37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행위를 하려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를 있거나, 주식 90 % 이상을 그 거래 상대방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 하려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2) 이를 통해 「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제도와 균형을 맞추어 간이한 방식을 활용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함

다.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 완화 등(안 제360조의10, 제527조의3 등)

- 1) 2012년 개정 「상법」에 의해 소규모합병의 요건은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기능·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소규모 주식교환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2) 아울러 「상법」은 소규모합병이나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에 관해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무상 혼란이 존재하고, 결국 이러한 절차를 활용한 M&A 거래의 법적 불안정성이 제기될 수 있음
- 3) 이에 신주발행과 자기주식의 교부를 포함하여 소규모 주식교환과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정비하고, 소규모 주식교환과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해당 제도를 이용한 M&A 거래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소규모 주식교환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함

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정비(안 제360조의5, 제374조의2 등)

- 1) 현행 「상법」은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무의결권 주주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2) 이에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 때 무의결권 주주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함
- 3) 따라서 M&A 과정에서 무의결권 주주의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주주총회 소집통지 문제 등에 관한 법적 혼란을 해소하여 M&A 거래 안정과 반대 주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마. 분할·합병 관련 규정 정비(안 제530조의5 등)

- 1) 회사의 분할시 분할하는 해당 회사를 “분할회사”, 분할을 통해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를 “단순 분할신설회사”, 분할(흡수)합병의 존속회사를 “분할승계회사”, 분할(신설)합병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합병신설회사”로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함
- 2) 분할기일, 분할시 자기주식의 교부 허용 등 분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함

3. 제출의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67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피선거권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공포·시행 2014. 6. 11)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의 자격요건을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함(안 제8조)
- 나. 금고나 중앙회의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금고나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제외함(안 제11조 및 제29조)
- 다. 중앙회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함(안 제24조)
- 라. 중앙회 임원 피선거권제한사유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 마. 안전행정부장관, 중앙회, 금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새마을금고지원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안전행정부홈페이지(www.mospa.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03호(우편번호 : 110-760)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00-8591), FAX(02-2100-8579), 전자우편 : jsiee2000@mosp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69호

점차 확대되는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구축·관리기준 제시, 보안강화 등을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으나, 특히 모바일 대민서비스에 대한 개발방법 등 구축·관리기준 및 사이버공격의 예방·대응대책이 미흡하여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보안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이 구축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3. 주요내용

- 모바일 대민서비스 관리 원칙 정의
 - 모바일 앱 개발기준 및 서비스 현황관리 기준 마련
 - 웹 브라우저, 단말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성 확보 의무화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성 강화
 - 소스코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모바일 웹·앱 서비스 및 관련 서버의 취약점 점검·조치 의무화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공통기반 시스템
 - 위·변조 방지, 암호화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공통기반의 구축 및 공동활용방안 등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정보자원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 정보기반보호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1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69/ 3666, (팩스) 02-2100-4220
 - 메일주소 : blrosefr@korea.kr, hskim24@korea.kr
- 참고사항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안)」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www.mospa.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 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52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재해보험의 공적기능 강화 및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729호, 2014. 6. 3. 공포)됨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

- 1) 매년 1회 시험을 실시하고(필요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장소, 시험방법 및 과목 등을 공고
- 2) 손해평가인 및 손해사정사로서 손해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 면제
- 3) 전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필요시 전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나. 농업재해보험 관련 전담기관 지정(안 제18조의2)

- 1)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 1) 전자우편(이메일) : shlee29@korea.kr
-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 3) 팩스 : 044-868-0186
-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전화 044-201-1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60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의 내용정보 종류 및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심의기관의 내용정보 심의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과 매체물 제작자와 유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시 미부착 및 시정 명령 불이행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 등급 구분과 함께 덧붙일 수 있는 매체물 내용정보 종류 및 표시방법을 규정한 조항(제8조 제3항) 삭제
 - 매체물의 내용정보의 종류 및 표시방법(별표1) 삭제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미부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제48조)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2 2.개별기준 제자호)

3. 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매체환경과 전화 02-2100-6293(과태료부과), 6303(매체물의 내용정보),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4-3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8월 6일

병 무 청 장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단장 준부2급	성명	최영훈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최영훈	57.10.19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2.03.28 ⑤ 전역(해제)사유 : 명예전역		② 계급 : 준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3.11.30
장남	최진원	90.10.18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11.04.25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3.04.24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장관 장관	성명	한민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한민구	53.08.30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5.03.28 ⑤ 전역(해제)사유 : 합참의장 임기만료		② 계급 : 대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1.10.26
장남	한경훈	82.10.24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4.06.10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06.06.09

1. 신고의무자					
소속	국방부	직위	과장 이사관	성명	오종석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오종석	59.02.2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5.07.13 ⑤ 전역(해제)사유 : 원에 의한 전역		② 계급 : 중위 ④ 전역(해제)일자 : 1988.07.31

1. 신고의무자					
소속	국세청	직위	담당관 서기관	성명	진종록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진종록	62.01.2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5.03.02 ⑤ 전역(해제)사유 : 명예전역		② 계급 : 대령 ④ 전역(해제)일자 : 2014.02.28
장남	진윤현	89.01.10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11.10.01		② 계급 : 중위 ④ 소속 : 학생중앙군사학교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보좌관 4급상당	성명	문창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문창준	45.09.25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67.08.10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70.06.20
장남	문양일	76.07.24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96.06.07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98.08.06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수석비서관 1급상당	성명	김성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성	53.12.11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5.12.23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상병 ④ 전역(해제)일자 : 1978.07.18			
장남	김동일	82.08.20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9.04.28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② 계급 : 이병 ④ 전역(해제)일자 : 2012.04.22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비서실장 차관급	성명	김성동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성동	54.10.26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7.08.01 ⑤ 전역(해제)사유 : 원에 의한 전역 ② 계급 : 대위 ④ 전역(해제)일자 : 1981.07.31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전재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전재진	55.09.20	① 1975년 징병검사연기 가사사정 ③ 1977년 보충역 ② 1976년 감중 ④ 1977년 소집면제 생계곤란			
장남	전성	88.10.08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9.02.24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0.12.30			
차남	전승	93.08.23	① 병역처분일자 : 2012.08.01 ③ 처분근거 :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④ 비고 :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비서관 2급상당	성명	정용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정용대	57.06.26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0.02.23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중위 ④ 전역(해제)일자 : 1982.06.30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한병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한병진	60.05.18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1.05.06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3.12.15			
장남	한대량	90.02.0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10.06.01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2.03.15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보좌관	성명	김대승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대승	61.09.20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2.02.13 ⑤ 전역(해제)사유 : 독자 ② 계급 : 이병 ④ 전역(해제)일자 : 1982.08.19		
장남	김균영	93.07.2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13.03.26 ② 계급 : 상병 ④ 소속 : 25사단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보좌관	성명	강상욱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강상욱	63.06.10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4.09.20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7.02.03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보좌관	성명	진정삼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진정삼	64.12.18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4.10.31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7.04.30		
장남	진창희	88.02.27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7.12.24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0.02.12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보좌관	성명	이상표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상표	65.02.01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5.10.07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② 계급 : 일병 ④ 전역(해제)일자 : 1987.01.06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비서관	성명	김종규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종규	67.01.10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8.08.16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90.11.15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정책연구위원	성명	김동진
		직급	1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동진	67.06.21	① 1986년 ~1988년 징병검사연기 재학생 ② 1989년 5급 제2국민역 질병또는심신장애 (골수염, 대퇴골)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박영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박영민	68.08.13	① 구별(복무분야) : 육군 ③ 인영(입관)일자 : 1989.04.17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91.08.08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신세종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신세종	68.09.21	① 구별(복무분야) : 육군 ③ 인영(입관)일자 : 1991.10.17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93.12.30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정책연구위원 2급상당	성명	김종욱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종욱	69.11.23	① 구별(복무분야) : 육군 ③ 인영(입관)일자 : 1995.03.21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97.04.10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송교석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송교석	71.10.02	① 구별(복무분야) : 육군 ③ 인영(입관)일자 : 1992.04.13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② 계급 : 상병 ④ 전역(해제)일자 : 1993.10.12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김병운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병운	72.01.14	① 구별(복무분야) : 육군 ③ 인영(입관)일자 : 1992.07.20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94.09.29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비서관 3급상당	성명	김성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성원	73.10.15	① 구별(복무분야) : 육군 ③ 인영(입관)일자 : 1994.05.02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② 계급 : 상병 ④ 전역(해제)일자 : 1995.11.01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이상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상민	75.05.21	① 1994년 4급 현역병입영대상 ② 1995년 ~1996년 입영기일연기 대학진학 ③ 1996년 ~1997년 입영기일연기 대학1년 ④ 1997년 5급 제2국민역 질병또는심신장애 (건강관찰의 습관성 탈구)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비서관 4급상당	성명	장우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장우진	75.06.21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1998.02.12 ④ 전역(해제)일자 : 2000.04.11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장진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장진영	76.06.10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이병 ③ 입영(입관)일자 : 2003.05.26 ④ 전역(해제)일자 : 2005.08.13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단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서상열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서상열	77.10.20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1998.04.06 ④ 전역(해제)일자 : 2000.08.05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최성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최성수	78.07.17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이병 ③ 입영(입관)일자 : 2001.07.30 ④ 전역(해제)일자 : 2003.11.22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단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기남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기남형	79.01.08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1998.11.24 ④ 전역(해제)일자 : 2001.01.23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보좌관 4급상당	성명	정의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정의일	79.03.30	① 1998년 5급 제2국민역 질병또는심신장애 (근시)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비서관 4급상당	성명	김인국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인국	80.11.10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대위 ③ 입영(입관)일자 : 2003.08.01 ④ 전역(해제)일자 : 2010.07.31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직급	정책연구위원 4급상당	성명	김혜련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혜련	81.03.17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청다오아물류유한공사	직위 직급	대표이사 4급상당	성명	성광돈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성광돈	64.07.25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1985.08.01 ④ 전역(해제)일자 : 1988.03.31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직위 직급	본부장	성명	이상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상영	45.09.07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중위 ③ 입영(입관)일자 : 1969.02.20 ④ 전역(해제)일자 : 1971.06.30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장남	이기철	76.08.16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이병 ③ 입영(입관)일자 : 1998.04.13 ④ 전역(해제)일자 : 1998.08.04 ⑤ 전역(해제)사유 : 의병		
차남	이정열	78.07.24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이병 ③ 입영(입관)일자 : 2009.04.20 ④ 전역(해제)일자 : 2012.04.19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직위 직급	본부장	성명	박기성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박기성	55.10.2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1976.09.07 ④ 전역(해제)일자 : 1979.06.12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장남	박태환	95.08.20	① 병역처분일자 : 2014.06.13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③ 처분근거 : ④ 비고 :		

1. 신고의무자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미사회	직위 직급	본부장 상임이사	성명	이종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종대	58.10.17	① 1978년 병종 제2국민역 질병또는심신장애 (법발성부비동염 및 다발성비용)		
장남	이형빈	91.02.14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2011.03.21 ④ 전역(해제)일자 : 2013.02.20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미사회	직위 직급	본부장 임원	성명	임성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임성한	60.02.15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1986.10.13 ④ 전역(해제)일자 : 1988.12.22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장남	임광후	93.10.07	① 병역처분일자 : 2012.05.02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③ 처분근거 : ④ 비고 :		

1. 신고의무자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직급	수석비서관 차관급	성명	송광용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송광용	53.04.17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대위 ③ 입영(입관)일자 : 1978.06.24 ④ 전역(해제)일자 : 1981.06.30 ⑤ 전역(해제)사유 : 원에 의한 전역		
장남	송해엽	83.05.04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2004.03.09 ④ 전역(해제)일자 : 2006.03.08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직급	수석비서관 차관급	성명	김영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영한	57.09.27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② 계급 : 중위 ③ 입영(입관)일자 : 1985.04.20 ④ 전역(해제)일자 : 1988.01.31 ⑤ 전역(해제)사유 : 원에 의한 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직급	수석비서관 차관급	성명	윤두현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윤두현	61.05.12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1982.05.11 ④ 전역(해제)일자 : 1984.08.02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김영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영일	57.07.06	① 1977년 감중 전역병입영대상 ③ 1980년 보충역및 소집면제 생계곤란		② 1978년 ~1979년 입영연기 생계곤란
장남	김준수	86.10.22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6.02.07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08.02.04
차남	김윤수	89.03.07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9.06.02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1.04.02

1. 신고의무자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최금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최금주	58.09.1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9.03.02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1.12.17

1. 신고의무자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이종국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종국	58.12.08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8.11.02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1.07.30

1. 신고의무자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홍병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홍병수	60.03.05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2.11.02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4.11.08

1. 신고의무자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김수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수한	61.05.04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3.08.03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5.10.26
장남	김은동	87.09.16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7.11.15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② 계급 : 이병 ④ 전역(해제)일자 : 2009.12.18

1. 신고의무자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직위 직급	팀장 전문계약직가급	성명	김장언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장언	75.05.19	① 1994년 5급 제2국민역 질병또는심신장애 (근시)		

1. 신고의무자					
소속	문화체육관광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조상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조상준	81.04.13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② 계급 : 중위 ③ 입영(입관)일자 : 2007.07.01 ④ 전역(해제)일자 : 2010.06.30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위 직급	상임이사 임원	성명	이성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성원	57.05.06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1977.11.12 ④ 전역(해제)일자 : 1980.08.07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장남	이일민	88.02.0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2008.02.12 ④ 전역(해제)일자 : 2010.01.05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김영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영민	59.02.01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중위 ③ 입영(입관)일자 : 1981.02.23 ④ 전역(해제)일자 : 1983.06.30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장남	김세현	91.09.20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2011.04.25 ④ 전역(해제)일자 : 2013.04.24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손병호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손병호	63.10.29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1985.03.06 ④ 전역(해제)일자 : 1987.06.04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박위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박위규	73.12.25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계급 : 중위 ③ 입영(입관)일자 : 1999.02.01 ④ 전역(해제)일자 : 2002.01.31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박재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박재정	75.03.02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95.11.09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98.01.08	

1. 신고의무자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이창훈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창훈	75.03.26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99.04.09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완료			② 계급 : 이병 ④ 전역(해제)일자 : 2004.02.08	

1. 신고의무자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권기성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권기성	76.02.07	① 1995년 5급 제2국민역 질병또는심신장애 (근시)				

1. 신고의무자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김도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도엽	76.03.27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97.07.10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99.09.09	

1. 신고의무자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김의중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의중	76.05.1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98.04.13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00.06.12	

1. 신고의무자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직위 직급	서기관	성명	김봉석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봉석	78.03.01	① 1997년 7급 재신체검사대상 ③ 1998년 5급 제2국민역 질병또는심신장애 (상악골, 하악골 결손)			② 1998년 7급 재신체검사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직위 직급	기술서기관	성명	전동욱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전동욱	79.01.26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5.02.01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중위 ④ 전역(해제)일자 : 2008.01.31		

1. 신고의무자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한전KPS(주)		직위 직급	본부장(전무) 입원	성명	김중식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중식	57.09.20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0.05.06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2.08.05		
장남	김형민	87.02.28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10.03.01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중위 ④ 전역(해제)일자 : 2012.06.30		

1. 신고의무자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위 직급	감사담당관 서기관	성명	장선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장선영	72.01.01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직위 직급	사무총장	성명	김종국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종국	57.08.25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8.06.27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1.04.02		
장남	김광민	89.08.14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10.07.06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2.04.17		
차남	김경민	89.08.14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11.04.04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3.01.03		

1. 신고의무자						
소속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위 직급	이사장	성명	이일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일규	50.09.15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2.03.28 ⑤ 전역(해제)사유 : 원에 의한 전역	② 계급 : 소령 ④ 전역(해제)일자 : 1978.09.30		

1. 신고의무자							
소속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위 직급	본부장	성명	하종성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하종성	56.02.02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계급 : 이병 ③ 입영(입관)일자 : 1977.04.29 ④ 전역(해제)일자 : 1978.07.22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단료(소집해제)				
장남	하성호	87.09.21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2007.07.30 ④ 전역(해제)일자 : 2009.07.01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위 직급	상임이사	성명	임병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임병재	57.02.25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1978.07.04 ④ 전역(해제)일자 : 1981.04.09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장남	임규옥	83.04.25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2009.04.07 ④ 전역(해제)일자 : 2011.02.08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위 직급	감사	성명	윤정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윤정균	59.12.29	① 1979년 1월중 현역병입영대상 ② 1980년 1월중 현역병입영대상 (2회) ③ 1980년 2월중 현역병입영대상 ④ 1981년 1월중 현역병입영대상 (2회) ⑤ 1982년 병중 제2국민역 질병또는심신장애 (수핵탈출증)				
장남	윤용준	91.07.09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2011.07.11 ④ 전역(해제)일자 : 2013.04.10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차남	윤준우	93.05.11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상병 ③ 입영(입관)일자 : 2013.03.18 ④ 소속 : 9사단				

1. 신고의무자							
소속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위 직급	상임감사	성명	이영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영애	51.09.23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이용전	75.06.27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병장 ③ 입영(입관)일자 : 1995.10.24 ④ 전역(해제)일자 : 1997.12.23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중소기업청			직위 직급	과장 서기관	성명	이구익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구익	62.05.05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계급 : 중사 ③ 입영(입관)일자 : 1981.02.19 ④ 전역(해제)일자 : 1986.02.28 ⑤ 전역(해제)사유 : 원에 의한 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직위 직급	운영본부장 임원	성명 박중식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박중식	60.05.04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3.12.02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6.02.27		

1. 신고의무자					
소속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위 직급	상임이사 상임이사	성명 이길동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길동	58.05.25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8.11.01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1.09.30		
장남	이민형	88.09.06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8.08.26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0.07.09		
차남	이하형	90.09.05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10.08.23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② 계급 : 이병 ④ 전역(해제)일자 : 2012.08.20		

1. 신고의무자					
소속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위 직급	상임이사 상임이사	성명 박일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박일근	60.10.11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1.02.04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3.06.02		
장남	박세홍	88.06.18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9.03.16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1.03.17		
차남	박소준	90.05.18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11.01.04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2.10.07		

1. 신고의무자					
소속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직위 직급	운영본부장 상임이사	성명 김진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진우	64.01.17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5.07.01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② 계급 : 이병 ④ 전역(해제)일자 : 1986.08.31		
장남	김명연	88.07.2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13.09.24 ② 계급 : 이병 ④ 소속 : 백마부대		
차남	김상재	94.01.06	① 병역처분일자 : 2013.11.13 ③ 처분근거 :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④ 비고 :		

1. 신고의무자					
소속	해양수산부 한국수산부역협회		직위 직급	전무이사	성명 이찬복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찬복	55.12.06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6.03.23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79.01.09		

1. 신고의무자					
소속	금정구		직위 직급	국장	성명 민관식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민관식	56.10.27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8.04.15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② 계급 : 일병 ④ 전역(해제)일자 : 1979.06.29
장남	민성현	85.01.12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5.11.09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07.11.08

1. 신고의무자					
소속	금정구		직위 직급	주민생활지원국장	성명 신정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신정기	56.11.30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7.06.28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하사 ④ 전역(해제)일자 : 1980.03.27
장남	신태영	90.09.14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10.05.04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2.02.17

1. 신고의무자					
소속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위 직급	총무부장	성명 조재원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조재원	55.03.01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8.04.08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② 계급 : 이병 ④ 전역(해제)일자 : 1979.06.29
장남	조민규	80.08.25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5.04.07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② 계급 : 이병 ④ 전역(해제)일자 : 2008.04.06

1. 신고의무자					
소속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위 직급	감사팀장	성명 김영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영주	58.12.15	① 1978년 2등급 보충역		② 1979년 소집면제 생계곤란
장남	김재현	88.02.08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8.01.15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09.12.09

1. 신고의무자					
소속	고령군		직위 직급	실장 서기관	성명 김탁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김탁수	55.10.08	① 1975년 감중 현역병입영대상 ③ 1977년 소집면제 수형		② 1976년 보충역
장남	김용훈	92.06.08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11.11.14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3.08.13

1. 신고의무자					
소속	고령군		직위 직급	읍장 서기관	성명 강종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강종환	60.04.07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1.10.10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② 계급 : 일병 ④ 전역(해제)일자 : 1982.12.16
장남	강경현	86.12.0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6.08.14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08.08.09
차남	강지우	92.10.01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12.03.05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3.12.04

1. 신고의무자					
소속	문경시		직위 직급	국장 서기관	성명 권용문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권용문	56.03.06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7.10.24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0.07.17
장남	권구상	86.02.07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8.03.01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중위 ④ 전역(해제)일자 : 2010.06.30

1. 신고의무자					
소속	문경시		직위 직급	단장 서기관	성명 박용운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박용운	56.09.19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8.10.07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② 계급 : 일병 ④ 전역(해제)일자 : 1979.12.20
장남	박규호	84.07.30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4.05.18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06.05.17

1. 신고의무자					
소속	수원시 수원시립청소년육성재단		직위 직급	이사장 임원	성명 김충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충영	55.03.02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6.09.10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79.06.12
장남	김주송	94.12.28	① 병역처분일자 : 2013.07.09 ③ 처분근거 :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④ 비고 :

1. 신고의무자					
소속	수원시 수원지역자활센터		직위 직급	관장	성명 장미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장미선	69.01.20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안산시		직위 직급	서기관 서기관	성명	이규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규환	59.10.27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9.10.24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2.07.22		
장남	이종혁	86.07.21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6.06.20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08.06.10		
차남	이종민	88.12.09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9.03.10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1.01.12		

1. 신고의무자						
소속	안성시		직위 직급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관	성명	유수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유수형	57.05.2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8.02.17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하사 ④ 전역(해제)일자 : 1980.11.13		
장남	유승호	85.10.19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5.08.09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07.08.08		

1. 신고의무자						
소속	안성시		직위 직급	국장 4급	성명	김재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재은	60.03.30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1.10.24 ⑤ 전역(해제)사유 : 독자	② 계급 : 이병 ④ 전역(해제)일자 : 1982.04.28		
장남	김준호	87.01.09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7.01.02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08.12.14		
차남	김신호	89.05.06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9.01.06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0.11.13		

1. 신고의무자						
소속	오산시		직위 직급	국장 서기관	성명	이호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호락	56.09.19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6.09.14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79.06.19		
장남	이승철	86.07.03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6.08.07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08.10.22		

1. 신고의무자						
소속	광주광역시 남구		직위 직급	서기관 소장	성명	이윤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윤지	66.02.15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임영훈	96.02.03	① 병역처분일자 : 2014.01.01 ③ 처분근거 :	② 병역처분사항 : 제1국민역 ④ 비고 :		

1. 신고의무자					
소속	아산시		직위 직급	소장 서기관	성명 이성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성연	56.10.08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7.04.25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② 계급 : 이병 ④ 전역(해제)일자 : 1978.07.07
장남	이상호	82.07.05	① 2001년 6급 병역면제 질병또는심신장애 질병명 비공개		

1. 신고의무자					
소속	예산군		직위 직급	실장 서기관	성명 박시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박시영	55.12.28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6.04.23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79.02.06
장남	박기정	85.12.29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12.12.26		② 계급 : 병장 ④ 소속 : 제12사단 37연대

1. 신고의무자					
소속	예산군		직위 직급	실장 서기관	성명 이용역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용역	56.07.06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7.07.16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0.04.10
장남	이태연	85.10.27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6.01.09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08.03.04
차남	이경연	95.11.03	① 병역처분일자 : 2014.06.27 ③ 처분근거 :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④ 비고 :

1. 신고의무자					
소속	예산군		직위 직급	소장 기술서기관	성명 최승묵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최승묵	59.02.06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0.07.02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3.03.10
장남	최형석	86.08.2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6.06.27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08.06.17
차남	최진석	89.06.0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9.03.17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1.01.19

1. 신고의무자					
소속	예산군		직위 직급	부군수 서기관	성명 이종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종연	57.03.05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8.02.21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0.11.20
장남	이주호	86.08.03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7.06.25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② 계급 : 이병 ④ 전역(해제)일자 : 2009.08.02

1. 신고의무자					
소속	충청남도교육청		직위 직급	부장 교육연구관	성명 장규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장규영	56.12.20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7.02.11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② 계급 : 하사 ④ 전역(해제)일자 : 1983.10.18		
장남	장석원	85.11.25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6.06.19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08.06.09		

1. 신고의무자					
소속	춘천시 밀알재활원		직위 직급	원장	성명 이은화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은화	63.05.10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춘천시 침사랑의집		직위 직급	원장	성명 이은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은영	72.10.15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춘천시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직위 직급	관장	성명 조희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조희정	74.06.04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춘천시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직위 직급	관장	성명 장창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장창우	66.11.19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9.02.11 ⑤ 전역(해제)사유 : 원예 의한 전역 ② 계급 : 중사 ④ 전역(해제)일자 : 1993.02.28		

1. 신고의무자					
소속	춘천시 춘천시니어클럽		직위 직급	관장	성명 김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영	65.06.12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89.04.10 ⑤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② 계급 : 상병 ④ 전역(해제)일자 : 1990.09.18		

1. 신고의무자					
소속	춘천시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위 직급	관장	성명	한영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한영희	61.12.04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춘천시 춘천시역자활센터	직위 직급	센터장	성명	이경화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경화	71.09.27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밀양시	직위 직급	국장 서기관	성명	윤현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윤현철	56.08.10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7.11.30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0.08.21		

1. 신고의무자					
소속	밀양시의회	직위 직급	사무국장 서기관	성명	이두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두배	56.01.21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7.02.24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79.11.15		
장남	이정헌	83.05.20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2.12.20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05.01.12		

1. 신고의무자					
소속	구리시	직위 직급	국장 기술서기관	성명	이철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이철수	57.08.16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8.04.24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1.01.29		
장남	이경석	87.01.14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06.05.22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08.08.09		

1. 신고의무자					
소속	구리시	직위 직급	국장 서기관	성명	김장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역사항		비고
본인	김장렬	58.12.22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③ 입영(입관)일자 : 1979.08.28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1982.05.27		
장남	김규현	90.12.28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③ 입영(입관)일자 : 2011.07.25 ⑤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② 계급 : 병장 ④ 전역(해제)일자 : 2013.07.24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48호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소방방재청장

「의연금품 관리·운영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라 의연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 관리·운영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의연금품의 모집 및 관리·운영을 관장함(안 제2조)

나. 협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의연금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안 제3조)

다. 의연금품의 사용용도를 정함(안 제4조)

라. 의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을 정함(안 제5조)

마. 협회장은 소방방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의연금을 사용하고, 의연품의 지급기준은 의연품 운영계획에 따름(안 제6조)

바. 의연금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국민성금” 표시(안 제7조)

사. 의연품의 수급관리는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에 따름(안 제8조)

아.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기한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437(팩스 : 02-2100-5439)

- 이 메 일 : lss1603@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224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보물 제1336호 「고성 건봉사 능파교」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지정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종별)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용
고성 건봉사 능파교 (보물 제1336호)	4필지 36,183.5㎡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보호구역 지정

나. 사유 :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능파교 및 그 주변을 효과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강원도 고성군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강원도 문화예술과, 고성군 관광문화과)로 연락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033) 249-3316 / 팩스 (033) 249-4052
 - 주소 (우 200-700)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 고성군청 관광문화과
 - 전화 (033) 680-3367 / 팩스 (033) 680-3176
 - 주소 (우 219-801) 강원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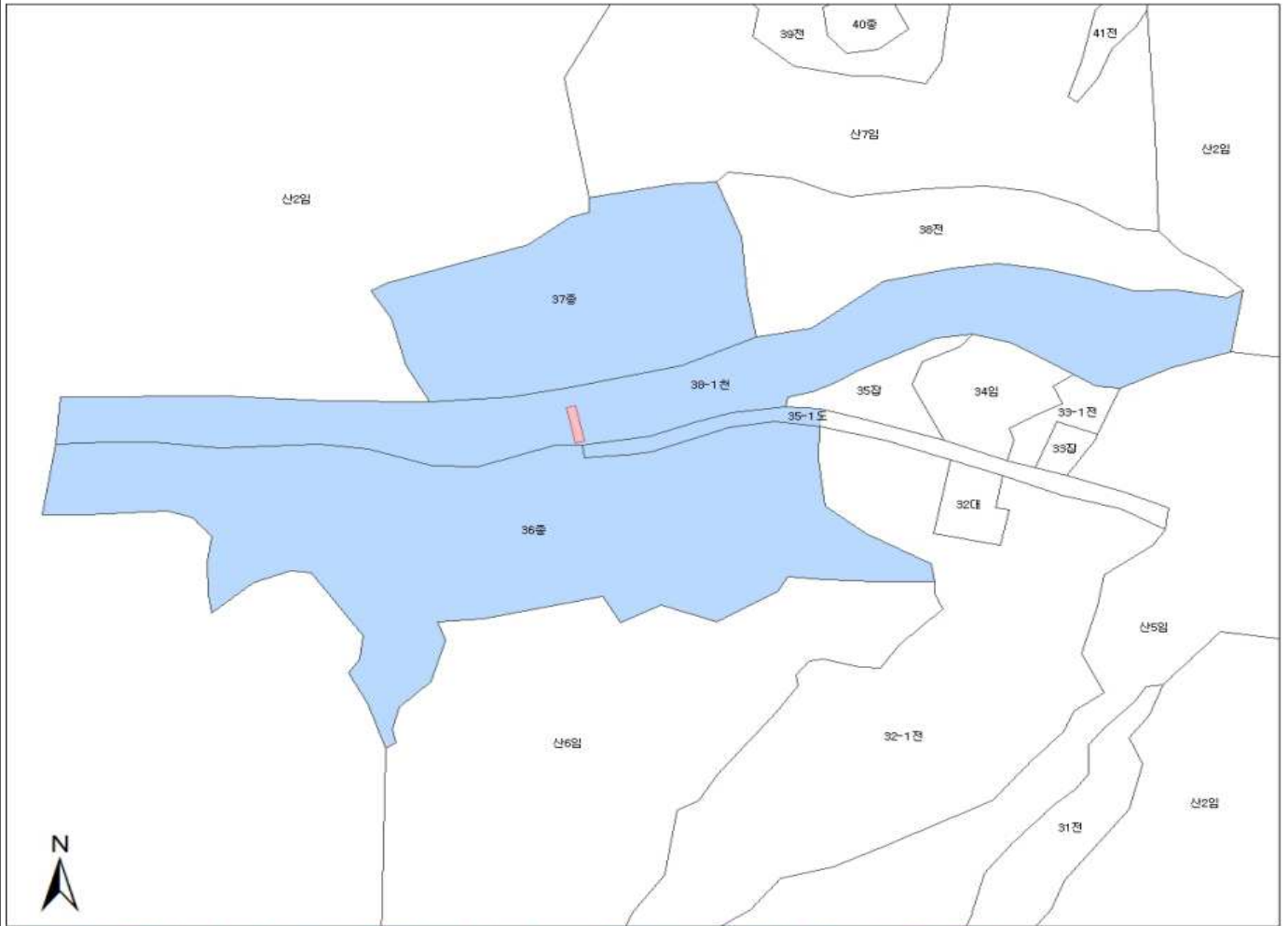
[붙임 1]

「고성 건봉사 능파교」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1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	중	17,131	17,131	건봉사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문화재 체계적 보호 및 효율적 관리
2	"	37	중	7,841	7,841	건봉사	"	
3	"	38-1	천	10,750	10,704.5	건봉사	"	
4	"	35-1	도	1,388	507	건봉사	"	
총계		4필지		37,110	36,183.5			

[붙임 2]

문화재보호구역 도면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4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주)원텍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주)원텍 지정번호 KR0013	<input type="checkbox"/> 전자파흡수율 시험분야 추가 지정 ○ 전자파흡수율 시험종목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GHz 대역)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GHz 대역)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5GHz 대역)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적합성 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변경 ○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종목 추가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2014. 7. 31.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해양수산부에서 2014. 07. 08. 공고 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인 「평택·당진항 LNG 1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 준설공사」의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공고 내역

가. 사업명 : 평택·당진항 LNG 1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 준설공사

나. 공사의 목적

- 동 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의 수심측량 결과, 현재 일부 구역이 계획수심에 미달하여 선박의 긴급출항 및 하역 중 비상사태(선박 좌초로 LNG누설 및 폭발사고 등)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박지 및 선회장 준설을 통하여 적정 수심 유지

다. 공사규모

사업명	공사 장소	사업규모	비고
평택·당진항 LNG 1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 준설공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LNG 1부두 전면 수역	준설량 1,037천m ³ 부대공 1식 (준설면적 246천m ²)	

라. 추정 사업비 : 165억원

※ 사업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추정)

바. 추진방법

- 항만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으로 공고대상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후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 준공된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 귀속여부가 결정되며,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 등이 가능

2. 참여 자격

가. 해당시설의 운영·사용을 위한 실수요자로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이하'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나. 단독 및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참여시 선·화주, 하역사 등 실수요자의 총지분은 50% 이상 일 것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 '업무처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 심사위원 전원의 평균평점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며, 심사결과는 종합집계표에 한하여 공개(심사위원별 심사내용 비공개)

-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사업신청자별로 3인 이내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대표자가 20분 이내 설명
-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 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사업계획, ②참여자의 적정성, ③재원조달능력, ④총사업비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 라.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
- 마. 공동으로 참여 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 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 가.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참여신청서(별지 양식 1) 및 서약서(별지 양식 2)
- 나.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평가항목별)
 - 1)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 사업신청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 2) 사업계획서
 - 공사계획서(공법 및 공기 등 시공계획,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 평택·당진항내 투자비 보전방안(시설, 금액, 기간 등 명시)
 - 공동참여확약서(공중, 공동참여시 해당)
 - 3) 참여자의 적정성
 - 실수요자(선·화주, 하역사 등) 참여의 구성 및 비율
 - 참여자의 최근 3년간('11~'13년) 항만개발·운영에 참여한 실적 및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 4) 총사업비의 적정성
 - 총사업비 산출내역서(「항만법 시행령」 제19조의 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산출근거 구체적 명시)
 -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 다. 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필요시 사용인감계)

- 2)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중)
- 3) 참여업체별 지분을 명시
- 4)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5. 접수 기간 / 장소
- 가. 접수 기간 : '14.09.15(월) ~ '14.09.17(수) 15:00까지 ※우편 접수 불가
- 나. 접수 장소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전화:031-680-7231~2)
6. 심사 및 발표
- 가. 심사 일시 : '14.09.18.(목) 10:00 ~ 18:00
- 나. 선정 발표 : '14.09.19.(금) /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 ※ 사정변경 등 필요 시 선정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 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 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2
- 다. 선정 방법 :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선정
8. 기타사항(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항만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라.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 마.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함
- 바. 제출서류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사. 사업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표와 그림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용지에 15포인트의 글자 크기, 줄 간격 180%로 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함
- 사업계획서는 세부평가항목별 색인목록 작성 제출할 것
- 평가항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우측면에 세부평가 항목별 구분용 견출지 부착
- 아.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 중 파워포인트 자료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할 것
- 자. 기타 본 평가와 관련 선정계획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원 일치에 의해 협의·결정하여 적용함

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동 공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전화 031-680-7231~2)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안) : 홈페이지 참조

[별지 1] 비관리청항만공사 참여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별지 2] 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4. 08. 30.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 가. 대상업체 : (주)현일이에스시스템 (대표 윤용규)
 -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 다. 허가번호 : 제447호, 서울지방경찰청장
 - 라.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27길 26(신사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조종진(☎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4. 08. 30.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 가. 대상업체 : (주)이에스클래식 (대표 이승호)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제2128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55(역삼동, 선릉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조종진(☎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4. 08. 30.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 가. 대상업체 : (주)에텐관리 (대표 김 영 식)
 -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 다. 허가번호 : 제2216호, 서울지방경찰청장
 - 라.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61 대한방직협회빌딩 13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조종진(☎ 700-2818)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8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340번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소교량 가설공사에 따른 접속도로(농로)에 편입되는 부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m ²)	해제면적 (m ²)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강원	평창	대화	개수	산340		2,286,688	353	소교량 가설공사에 따른 접속도로(농로)에 편입되는 부지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평창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330-4020~5)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4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m²)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m ²)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m ²)	해제면적 (m ²)	잔여면적 (m ²)		
합 계				1,431,653	1,431,653	58,196	1,373,457		
증평 도안 노암	산3-1	임야	국 (산림청)	64,843	64,843	11,312	53,531	도로	
증평 도안 노암	산5-3	임야	국 (산림청)	1,366,810	1,366,810	46,884	1,319,926	도로	

2. 문의사항 접수처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850-0340-4)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4-13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예정 지역 : 15개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동화동	1	서울중앙우체국 지원과	(02)6450-14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1	서대문우체국 지원과	(02)390-92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	서울마포우체국 지원과	(02)716-8503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동	1	서울관악우체국 지원과	(02)878-410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1	서울강남우체국 지원과	(02)2040-41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1동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1	서울금천우체국 지원과	(02)856-579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2동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1	서울양천우체국 지원과	(02)2646-094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2동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	서울용산우체국 지원과	(02)797-052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소재 LS용산타워 구내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동	1	서울도봉우체국 지원과	(02)3499-366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장소 : 공고된 설치예정지역 내

5. 시설기준 : 사무실 전용면적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
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

6. 창구환경 시설은 【붙임 2】의 「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7.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4. 8. 6(수) ~ 8.20(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8.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4. 8. 21(목) ~ 8. 22(금).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붙임 3】 및 자기소개서 【붙임 4】

라. 중복접수 제한 : 1인 1지역에 한하여 접수가능하며, 중복접수 시 모두 무효 처리됨

9.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붙임 5】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서울지방우정청에서 별도 구성하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면접포함)를 거쳐 선정합니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탁대상자로 기 선정된 경우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선정결과는 2014. 9. 11.(목) 서울지방우정청과 신청서를 접수한 우체국 홈페이지 및 동 우체국 앞 게시판에 공고예정입니다.

라.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를 접수한 우체국 지원과 또는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2-6450-3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자기소개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신원보증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처분일자
권 영 원	94-2008-30 -000043	영원광주 광산2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2014.7.30.~11.29.)	2014.7.23.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에스케이해운(주)	42-2007-20-0000253 42-2010-30-0000127	600성광호 601성광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유)대산에너지	42-2008-30-0000126	600동서호	전남 여수시 교동
임영희	42-2011-30-0000197	620화이트호	전남 여수시 교동
신정철	42-1998-30-0000060	653대양호	전남 진도군 진도읍
박효영	42-2010-30-0000189	630뉴비너스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김영란	42-2013-30-0000141	642만성호	전남 목포시 죽교동
김주옥	42-2011-30-0000102	600참피온2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박양옥	42-2012-30-0000131	610동진골드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오성안	42-2013-30-0000154	610성만호	전남 여수시 경호동
윤면주	42-2012-30-0000199	651진양호	제주시 건입동
장덕언	42-2004-20-0000382	606영진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청문일시 : 2014. 8. 20.(수) 14:00

6. 장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예 정: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14. 8. 13.(수) 14:00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처 분 대 상: [붙임]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3-56-0000743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NK증평503	엔케이이(NKE)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539-3번지 205호
2	94-2013-56-0000744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NK증평504		
3	94-2013-56-0000742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NK증평502		
4	94-2013-56-0000741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NK증평501		
5	94-2009-51-0000800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소레드음성501	(합)소레드개발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963-18번지
6	94-2009-51-0000801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소레드음성502		
7	94-2009-51-0001028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협성스틸음성503	(주)협성스틸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60번지 (주)협성스틸주식회사
8	94-2009-51-0001032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협성스틸음성507		
9	94-2009-51-0001033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협성스틸음성508		
10	94-2009-51-0001029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협성스틸음성504		
11	94-2009-51-0001030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협성스틸음성505		
12	94-2009-51-0001031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협성스틸음성506		
13	94-2009-51-0001026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협성스틸음성501		
14	94-2009-51-0001027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협성스틸음성502		
15	94-2012-56-0000392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케이엠씨501	케이엠씨(주)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18-5번지 대운프라자 304호
16	94-2012-56-0000393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케이엠씨502		
17	94-2012-56-0000394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케이엠씨503		
18	94-2012-56-0000395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케이엠씨504		
19	94-2013-56-0000378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5	동후산업개발(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20	94-2013-56-0000379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6		1121번지 2층	
21	94-2013-56-0000380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7			
22	94-2013-56-0000381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8			
23	94-2013-56-0000382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9			
24	94-2013-56-0000374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1			
25	94-2013-56-0000383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10			
26	94-2013-56-0000375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2			
27	94-2013-56-0000377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4			
28	94-2013-56-0000376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동후청주503			
29	94-2013-56-0000550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진제천502	(주)진건설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성신빌딩4층401호	
30	94-2013-56-0000549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진제천501			
31	94-2013-56-0000642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1	(주)은혜산업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구미리 202-1번지	
32	94-2013-56-0000643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2			
33	94-2013-56-0000644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3			
34	94-2013-56-0000645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4			
35	94-2013-56-0000646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5			
36	94-2013-56-0000647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6			
37	94-2013-56-0000648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7			
38	94-2013-56-0000756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8			
39	94-2013-56-0000757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은혜청원509			
40	94-2012-56-0001106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병구청주503	강병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442번지	
41	94-2012-56-0001105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병구청주502			
42	94-2012-56-0001107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병구청주504			
43	94-2012-56-0001104	9,450	간이 무선국	신고	병구청주501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4	94-2012-56-000126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승호청주501	송승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8번지 태암베스트윙 102동 1021호
45	94-2012-56-000126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승호청주502		
46	94-2013-56-0000656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대용사창506	김대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동 1299-203호
47	94-2013-56-000065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대용사창505		
48	94-2013-56-000065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대용사창509		
49	94-2013-56-0000657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대용사창507		
50	94-2013-56-000065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대용사창508		
51	94-2013-56-000066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대용사창510		
52	94-2011-56-000063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재용흥덕500	이재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694번지
53	94-2011-56-000063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재용흥덕501		
54	94-2013-55-000001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두성마을901	임윤빈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57-44번지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8월 6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

●대법원규칙 제2545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을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으로 하고, 제76조의2제2항 중 “고유식별정보 및”을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2014. 8. 7.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신설 취지에 따라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7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8월 6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인

●**대법원규칙 제2546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5제1항 중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을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으로 하고, 제132조의5제2항 중 “고유식별정보 및”을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2014. 8. 7.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신설 취지에 따라 법원이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5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32조의5제1항 및 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8월 6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인

●**대법원규칙 제2547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 심판사무
2. 「민사조정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조정사무
3. 사건의 접수, 관련 증명서 발급, 기록 열람,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 등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법원의 재판업무 일반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에 규정함

◇주요내용

- 「법원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일체의 법률상의 재판 심판사무,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사무, 사건의 접수, 관련 증명서 발급, 기록 열람,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 등 법원의 재판 심판사무 및 조정사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8월 6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인

●대법원규칙 제2548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

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
-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또는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
2. 제2항 제2호의 경우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④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하급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주체가 되어 법원 시설 내에서의 증거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
-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증거 목적 녹음·녹화·촬영과 증거의 적법성을 명확히 함
- 증거 목적 녹음·녹화·촬영의 요건과 증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 재판장이 주체가 된 증거 목적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제6조 제1항 신설)
- 증거의 방법을 규정함(제6조제2항 신설)
- 증거의 절차를 규정함(제6조제3항 신설)
- 개인정보 침해 방지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둠(제6조제4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8월 6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인

●**대법원규칙 제2549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및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기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등 등기 관련 사무”를 “등기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 등기 관련 사무 및 법인인감 관련 사무”로 하며, 같은 항에 제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후견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신청서등 열람, 등기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등 후견등기 관련 사무

제5조제1항제2호 중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록부등 기록사항 열람,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탁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열람 및 사실증명 등”을 “공탁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전자공탁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법령에서 정한 전문심리위원, 조정위원, 관리위원 등의 지정 또는 위촉 등”을 “법령에서 정한 전문심리위원, 조정위원, 관리위원, 감정인,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감사,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지정 또는 위촉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내부전산망, 대국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이, 각급 법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무를 각 담당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를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원 행정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법원행정처 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지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사법부 개인정보파일을 등록 및 변경함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원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원 행정사무에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이용 및 운영, 법인인감 관련 사무, 후견등기 관련 사무, 전자공탁시스템 이용 및 운영, 내부전산망, 대국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추가함(제5조제1항)
- 각급 법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을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이, 각급법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제6조제3항)
-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제7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8월 6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인

●대법원규칙 제2550호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이유

○ 법관인사위원의 임기가 법관의 인사주기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관인사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관인사위원의 임기를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하고,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함(제2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지 방 자 치 단 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4-10호

학교(광양남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 1. 학교(광양남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장과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6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 2) 명칭 : 광양남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1) 당초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6-1번지 외 16필지
- 2) 변경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6-7번지 외 17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 (1) 당초 : 18,793.0㎡
- (2) 변경 : 19,143.7㎡(증 350.7㎡)

나) 부지면적(사업시행면적)

- (1) 당초 : 18,793.0㎡
- (2) 변경 : 19,143.7㎡(증 350.7㎡)

다) 건축면적 : 3,097.69㎡(변경 없음)

라) 연 면 적 : 9,914.60㎡(변경 없음)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 8,789.0㎡(변경 없음)

바)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변경 없음)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가) 당초 : 2013. 5. 승인일 ~ 2014. 8. 31.

나) 변경 : 2013. 5. 승인일 ~ 2015. 6.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 광양읍 용강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학생을 수용하고 개정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며 효율적인 학습활동에 부응하고, 융통성 있는 공간구성과 경제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기능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을 창출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의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당초	변경	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및 관리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1		광양읍 용강리	341-2	전	1,613	1,613	1,613	1,613	0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104	청주한씨양정공파익신총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여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2	2		광양읍 용강리	341	답	551	551	551	551	0	광주시 북구 매곡동 42-2 삼익아파트 102-503	윤주상	전남 무안군 삼향읍 여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3	-		광양읍 용강리	342	전	872	212	636	0	-636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1블록 1롯데창덕에버빌 210-904	김순자			편입지분할로 사업시행지 외
-	3		광양읍 용강리	342-2	전	0	650	0	650	650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1블록 1롯데창덕에버빌 210-904	김순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여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342에서 분할
4	4		광양읍 용강리	343	전	317	317	317	317	0	전남 광양시 중동 1322-4	김용훈	전남 무안군 삼향읍 여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5	-		광양읍 용강리	344	전	383	84	292	0	-292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11, 5동 306호(한양아파트)	김명자			편입지분할로 사업시행지 외
-	5		광양읍 용강리	344-1	전	0	299	0	299	299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11, 5동 306호(한양아파트)	김명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여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344에서 분할
6	-		광양읍 용강리	345	전	403	262	143	0	-143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석정길 15-6	김사업			편입지분할로 사업시행지 외
											전남 순천시 조비길 14, 101동 705호(대주아파트)	이건수			
-	6		광양읍 용강리	345-1	전	0	141	0	141	14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석정길 15-6	김사업	전남 무안군 삼향읍 여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345에서 분할
											전남 순천시 조비길 14, 101동 705호(대주아파트)	이건수			
7	-		광양읍 용강리	348	전	1,101	1,024	77	0	-77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9	김흥기			편입지분할로 사업시행지 외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635	김중기			
-	7		광양읍 용강리	348-1	전	0	77	0	77	77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96-9	김흥기	전남 무안군 삼향읍 여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348에서 분할

연번	당초	변경	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및 관리청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635	김중기			
8	-	광양읍 용강리	813	도	394	118	145	0	-145		국유지	국(건설부)			편입지분할로 사업시행지 외
	8	광양읍 용강리	813-2	임야	0	142	0	142	142		국유지	국(건설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813에서 분할
	9	광양읍 용강리	813-3	임야	0	4	0	4	4		국유지	국(건설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813에서 분할
9	10	광양읍 용강리	814	도	136	136	1	1	0		국유지	국(건설부)			
10	11	광양읍 용강리	836-4	구거	1,571	1,571	14	14	0		국유지	국(건설부)			
11	-	광양읍 용강리	921	도	582.4	112.9	466	0	-466		시유지	광양시			편입지분할로 사업시행지 외
	12	광양읍 용강리	921-1	임야	0	465.7	0	465.7	465.7		시유지	광양시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921에서 분할
12	-	광양읍 용강리	산57-12	임야	39,148	38,523	288	0	-288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25 오성타워맨션 102-1309	인동장씨남 산파공무공종 친회			편입지분할로 사업시행지 외
	13	광양읍 용강리	산57-14	임야	0	286	0	286	286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25 오성타워맨션 102-1309	인동장씨남 산파공무공종 친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산57-12에서 분할
13	14	광양읍 용강리	산59-4	임야	949	949	949	949	0		전남 나주시 청암길 17	신성토건(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14	15	광양읍 용강리	산59	임야	5,381	5,327	5,021	5,327	306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104	청주한씨양 정공파익신 총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전남 나주시 청암길 17	신성토건(주)				
15	-	광양읍 용강리	산74-4	임야	449	5	385	0	-385		전남 나주시 청암길 17	신성토건(주)			편입지분할로 사업시행지 외
	16	광양읍 용강리	산74-29	임야	0	425	0	425	425		전남 나주시 청암길 17	신성토건(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산74-4에서 분할
16	-	광양읍 용강리	산76-1	임야	13,952	5,008	7,839	0	-7,839		광주시 북구 일곡동 819-3 일곡4차 청솔아파트 401-1407	박성엽			편입지분할로 사업시행지 외
										서울시 도봉구 창동 373 주공아파트 407- 1104	이영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408번길 13, 117-1602(인덕원 대우아파트)	이강채				
										전남 나주시 청암길 17	신성토건(주)				
	17	광양읍 용강리	산76-7	임야	0	7,816	0	7,816	7,816		광주시 북구 일곡동 819-3 일곡4차 청솔아파트 401-1407	박성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산76-1에서 분할
										서울시 도봉구 창동 373 주공아파트 407-1104	이영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408번길 13, 117-1602(인덕원 대우아파트)	이강채				
										전남 나주시 청암길 17	신성토건(주)				
17	-	광양읍 용강리	산76-3	도	298	25	56	0	-56		국유지	국(건설부)			편입지분할로 사업시행지 외
	18	광양읍 용강리	산76-9	임야	0	66	0	66	66		국유지	국(건설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산76-3에서 분할
계					68,100.4	66,209.6	18,793	19,143.7	350.7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해당 없음
-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 없음
- 자.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 생략(변경 없음)
- 차. 시행계획의 평면도 : 생략(변경 없음)
- 카. 개략설계도서 : 생략(변경 없음)
- 타. 분묘등의 정리계획 : 이전 후 보상(변경 없음)
- 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학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7	44	학 교	마로 초등학교	광양남 초등학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6-1번지 일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6-7번지 일원	18,793	(증)350.7	19,143.7	광양시고시 제2012-122호 (2012.10.12.)		

2) 변경내용 및 사유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44	광양남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 면적 증가 18,793㎡ → 19,143.7㎡(증 350.7㎡) ○ 시설명 변경 마로초등학교 → 광양남초등학교 ○ 도면표시번호 변경 37 → 44 	학교신설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고자 시행한 분할측량의 결과, 구적 오차로 인한 면적 증가(구역계 변경 없음) 및 학교의 명칭 변경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생략

● **괴산군고시제2014-98호**

토지세목(변경)

괴산군 고시 제2014-1(2014.01.03)호로 시행계획승인 된 칠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괴 산 군 수

1. 사업명 : 칠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 위 치 :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사평리, 비도리 일원
3. 사업량 : 구역면적 395ha, 총사업비 10,590백만원
4. 사업시행자 : 괴산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장)

5. 사업기간 : 2012. 01. 01 ~ 2015. 12. 31(4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변경)세목조서 : 붙임참조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면적 (㎡)		변경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공부	현황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계				30필지					5,597		9,468	6건					
1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134-25	134-25	전				2,072	2,072	괴산군	3336				
2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12-4	212-14	대	대	1,720	565	1,720	563	괴산군	3336				
3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12-5		대	대	73	73	73	73	신종철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07-1				
4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12-6		대	대			107	107	괴산군	3336				
5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12-7		대	대			20	20	괴산군	3336				
6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6		대	대	100	100	100	100	괴산군	3336				
7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7		대	대	208		208	208	김학권	천안시 신부동 507-9				
8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11		도	도	66	66	66	36	국(건설부)	232				
9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7-3		잡	대	572	572	572	572	괴산군	3336				
10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7-6		잡	대	14	14	14	14	괴산군	3336				
11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7-8		잡	대	54	54	54	54	괴산군	3336				
12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7-9		잡	대	7	7	7	7	괴산군	3336				
13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8-1		대	대	407	407	407	407	괴산군	3336				
14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8-2		대	대	1,218	1,218	1,218	1,218	괴산군	3336				
15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8-22		대	대	23	23	23	23	괴산군	3336				
16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8-23		대	대	67	67	67	67	김학권	천안시 신방동 한라동백2차아파트 107-701				
17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9-1		대	대	74	74	74	74	괴산군	3336				
18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9-3	239-12	대	대	1,117	250	1,117	250	괴산군	3336				
19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9-4		대	대	70	70	70	70	괴산군	3336				
20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9-5		대	대	78	78	78	78	괴산군	3336				
21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9-6		대	도	50	50	50	50	괴산군	3336				
22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9-7		대	대	169	169	169	169	괴산군	3336				
23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9-8		대	대	60	60	60	60	괴산군	3336				
24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9-9		대	대	257	257	257	257	괴산군	3336				
25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9-10		대	대	82	82	82	82	괴산군	3336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면적 (㎡)		변경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공부	현황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26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40-2		임	대	374	374	374	374	국(건설부)	232				
27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41-2		대	대	703	703	703	703	괴산군	3336				
28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341-1	341-4	구	구	1,402	86	1,402	84	국(농림수산부)	229				
29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15		대	도			1	1	김진현	경남 거제 신현 1140 두산위브아파트 102-1204				
30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737		답	전			1,674.5	1,674.5	괴산군	3336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변경)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동·리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계				15필지				1건		13건			
1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7	가옥 및 점포	목조기와 및 슬레이트지붕	123.05㎡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미등기
					세면장 및 화장실	조립식	7.68㎡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화장실	조립식	2.85㎡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보일러실	조립식	16.68㎡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수돗가		1식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보도블럭		36.68㎡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장독대		1식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가추	목조 썬라이트지붕	6.44㎡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가추	목조 썬라이트지붕	5.75㎡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가추	목조 썬라이트지붕	2.24㎡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동·리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대문	철재	1식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바닥포장		36.68㎡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담장	블록조 L32m,H1.6m	1식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귀퉁나무	일괄	1주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감나무	↑	1주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대추나무	↑	2주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구상나무	↑	1주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철쭉	↑	1주			김관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6		
2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134-25	소나무(반송)	16년생	28주			조영욱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7번길 48 105동204호(개 신동, 삼익아파트)		
					소나무(반송)	8년생	17주			조영욱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7번길 48 105동204호(개 신동, 삼익아파트)		
3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134-25	소나무(반송)	9년생	17주			이석록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43-3		
					주목	15년생	1주			이석록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43-3		
4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134-25	견사	철재	5개			손철모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3길 11		
					가추	철파이프조 슬레이트	1식			손철모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3길 11		
					고무물통		2개			손철모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3길 1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동·리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5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7-3	컨테이너		1식			이석록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43-3		
6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7-5	가추(창고)	시엔블럭조 슬레이트지붕 (1.8mx3.5m H1.6m)	28㎡			손동철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7-5		미등 기
					회양목	W110	1주			손동철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7-5		
7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1	가옥	목조 칼라강판지붕	108.95㎡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미등 기
					창고	목조 슬레이트지붕	33.3㎡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가추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20.72㎡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보도블럭		6.53㎡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장독대		1식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수돗가		1식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화장실	조립식	4㎡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관정	가정용	1식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대문	철재	1식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담장	강판, L1.3m, H1.3m	2식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보일러실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5.94㎡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가추	목조 슬레이트지붕	8.25㎡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담장	철재, L1.3m, H1.6m	1식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담장	조립식, L1.7m, H1.5m	1식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철쭉		2주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목단		1주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사철나무		1주			강홍순	충북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23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동·리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구찌빵나무		1주			강홍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8		
					두릅나무	R10	3주			강홍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8		
					두릅나무	R3	30주			강홍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8		
					매실나무		1주			강홍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8		
					은행나무		1주			강홍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8		
8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9-3	소각장	조적조	1식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반송		3주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반송		26주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오엽송		2주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해송		1주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대추나무		3주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매실나무		4주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은행나무		1주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귀퉁나무		1주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앵두나무		1주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회양목		2주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불당화		3주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가시오가피	10년 생	5주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창고		3.36㎡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담장		1식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동·리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담장		1식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9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9-7	계사	목조 슬레이트지붕	7㎡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가옥	목조 슬레이트지붕	26.7㎡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가옥	목조 슬레이트지붕	19㎡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미등 기
					수돗가		1식			정지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57		
10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9-1	붕당		1식						
11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9-10	가축	목조 및 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13.96㎡	강동 식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21				
					가목	목조 함석지붕	107.95㎡	강동 식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21				
					창고	블록조 슬래브지붕	10.26㎡	강동 식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21				
					가추	목조 슬레이트지붕	27.3㎡	강동 식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21				
					대문	철재	1식	강동 식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21				
					세면대		1식	강동 식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21				
					들마루		2개	강동 식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21				
					바닥포장		11㎡	강동 식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21				
					담장	블럭조	1식	강동 식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21				
12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40-1	축사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25.8㎡	강동 식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21				
13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9-10	관정	가정용	1식	강동 식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2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동·리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담장	블럭조	1식	강동 식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21				
14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9-9	가옥	목조 슬레이트지붕	132.16㎡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미등 기
					창고	블록 및 목조 슬레이트지붕	40.59㎡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미등 기
					창고	블록 및 목조 슬레이트지붕	36.08㎡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미등 기
					건조기		1식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벌크		1식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농기계		1식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아궁이		1식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엄나무		1주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혼곶나무		3주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잣나무		3주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화장실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4.5㎡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화단1		1식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화단2		1식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창고		5㎡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동·리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건사		5㎡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대문		1식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장독대		1식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들마루		2개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가추	철파이프조 션라이트지붕	12.5㎡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보도블럭		24.3㎡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관정	가정용	1식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담장	블록조L22m, H1.6m	1식			김상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8-1			
15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39-4 외	가추	목조 판넬지붕	26.58㎡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주방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33.6㎡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가추	목조 판넬지붕	20.65㎡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식당	목조 목재지붕	25㎡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미등 기
					가추	목조 목재지붕	15㎡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가추	철파이프조 션라이트지붕	11.25㎡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거실 및 화장실	경량철골조 판넬 및 슬레이트지붕	23.1㎡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동·리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가옥	목조 슬레이트지붕	69.3㎡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미등 기
					가추	목조 슬레이트지붕	9.88㎡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관정	가정용	1식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호두나무	R40	1주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호두나무	R4	1주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고욤나무		1주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업나무		3주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머루나무		1주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자두나무		1주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소나무		1주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소나무(분재)		1주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오가피나무		5주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가옥	목조 슬레이트지붕	46.8㎡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미등 기
					창고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23.1㎡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미등 기
					창고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11.34㎡			조명희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미등 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동·리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관정		1식			조명회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장독대		1식			조명회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2길 6-10		
16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41-2	창고	블록조 합석지붕	211.19㎡			군자농 협	충북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33		미등 기
					창고	블록조 및 적벽돌조 합석지붕	190.42㎡			군자농 협	충북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33		미등 기
17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41-2	가옥 및 점포	목조 합석지붕	46.8㎡			신종철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07-1		미등 기
					가추	목조 합석지붕	7㎡			신종철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07-1		
18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212-4	가옥	적벽돌조 합석지붕	52.32㎡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미등 기
					화장실	적벽돌조 슬레이트지붕	3㎡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창고 및 보일러실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9.45㎡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세면대		1식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장독대		1식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가추	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13.87㎡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축사	목조 슬레이트지붕	9㎡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방		10.5㎡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대추나무	R4	1주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대추나무	R1	1주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동·리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오가피나무		2주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오미자나무		1주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향나무		1주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회양목		2주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들마루		1식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건사	조립식	1식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가추	목조 슬레이트지붕	15.9㎡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가추	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17.25㎡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가추	목조 슬레이트지붕	15.9㎡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관정	가정용	1식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담장	블록조	1식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대문	철재	1식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계근대		1식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폐자재		1식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화장실	이동식	1식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동·리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창고	철파이프조 강관지붕	20㎡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미등 기
					담장	블록조	1식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대문	철재	1식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주택	컨테이너식	27㎡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보일러실	조립식판넬조 판넬 지붕	14㎡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미등 기
					비가림시설	철파이프조칼 라강관지붕	8㎡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잣나무	R5	1주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두릅나무		4주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뽕나무		1주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건사	철재	1식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계사	철재	1식			서정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2길 18-4			

기 타

○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8월 6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번호	압제 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 량
14-26160	14-628	윤성현 외6	특수절도등	불상	1	베네통 자전거 1대에 대한 환가대금	10,000원
					2	코렉스 자전거 1대에 대한 환가대금	10,000원
					3	소울700cc (440)자전거 1대에 대한 환가대금	80,000원
					4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에 대한 환가대금	10,000원
					5	소울700cc (430)자전거 1대에 대한 환가대금	15,000원
					6	자전거 바퀴 2개	5,000원
14-28808	14-680	김현철	절도등	불상	2	A6 sports 스포츠 가방	1개
					3	핸드폰충전기(MCS-01KR)	1개
14-25463	14-608	조성주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절도)	불상	8	각종 동전 주화	26개
					10	손목시계(RAYMOND WEIL금색줄)	1개
					11	손목시계(알렉스 금색줄)	1개
					12	교통카드	1개
14-34954	14-811	백지휴	야간건조물 침입절도등	불상	1	빨간색 씨티마스터 125CC 오토바이에 대한 환가대금	16,000원
					2	위 오토바이 열쇠에 대한 환가대금	
14-34634	14-804	김정환 외1	특수절도	불상	1	메시지 빨간색 오토바이 1대에 대한 환가대금	21,000원
14-31987	14-742	김일천	절도	불상	1	파랑색으로 도색된 자전거 1대에 대한 환가대금 (삼천리 신사용 자전거)	5,000원
14-34101	14-793	선민옥 외2	특수절도등	불상	1	동전 500원	12개
					2	동전 100원	76개
					3	동전 50원	5개
					4	이어폰	1개
14-36101	14-837	손주현	특수절도	불상	3	에세원 담배	10갑
14-28809	14-679	김태성	절도	불상	1	일천원권	2장
					2	오천원권	5장
					7	seasons 담배	1갑
14-39463	14-909	신재우	절도등	불상	1	스마트 미라지 자전거 1대에 대한 환가대금	6,200원
14-36456	14-861	김희준 외1	특수절도	불상	1	청색 스마트 자전거 1대에 대한 환가 대금	75,000원
14-32794	14-920	황윤태	절도	불상	11	아르마니 은색 메탈 손목시계(AR-5855)	1개
					12	아르마니 검정 메탈 손목시계(AR-5989)	1개

사건 번호	압제 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 량
					13	아르마니 은색 메탈 손목시계(AR-0585)	1개
					14	아르마니 검정 메탈 손목시계(AR-5920)	1개
					15	아르마니 흰색 손목시계(AR-5920)	1개
					16	캘빈클라인 검정색 가죽시계	1개
					17	MCM 황토색 반지갑	1개
14-19194	14-475	허영우	절도	불상	1	줄리어스 옴므 시계	1개
14-27541	14-653	이상규	절도등	불상	2	롯데상품권 오천원권	1장
					5	오천원권 반쪽	1장
14-18230	14-450	장대중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절도)	불상	5	아디다스 검정색 가방	1개
					6	버팔로 대용량 외장하드(은색)	1개
					8	스포츠 하얀색 선글라스	1개
					10	삼성 노트북컴퓨터(NT-RF510)	1개
					19	잔디로 모자	1개
					23	갤럭시 손목시계	1개
					24	줄리어스 손목시계	1개
					25	블랙박스 리더기	1개
					26	폭스바겐 자동차 열쇠	1개
					28	삼성 노트북컴퓨터(NT550P5C)	1개
					29	삼성 노트북컴퓨터(NT-R65)	1개
					32	삼성 태블릿PC(SHW-M380W),검은색	1개
					33	삼성 대용량 외장하드(S1 MINI 160GB)	1개
					34	삼성 대용량 외장하드(S2 Portable 500GB)	1개
					37	대용량 외장하드(PN:9ZFAN5-500 1TB)	1개
					46	메트로시티 여자 빨간색 중지갑	1개
					47	갤럭시 여성용 시계	1개
					48	현대 자동차 열쇠	1개
					49	필라 패딩 점퍼	1개
					50	K2 패딩 점퍼	1개
					53	머그하우스 겨울 점퍼	1개
54	마이스트로 점퍼	1개					
55	네과 겨울 점퍼	1개					
56	콜롬비아 점퍼	1개					
57	헤라 화장품	11개					
58	실화수 화장품	3개					
59	마스카라 화장품	1개					
60	아식스 운동화	1켤레					
61	리복 운동화	1켤레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4년 8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연도 사건번호	연도 압수 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14-41034	14-1442	이현규	절도	성명불상	5	자전거(ICON)	1
14-34028	14-1188	하태훈	절도 등	성명불상	1	소울(자전거)	1
				"	2	코렉스(자전거)	1
				"	3	알톤(자전거)	1
				"	4	삼천리 자전거	1
				"	5	쿨리오 하이브리드(자전거)	1
14-32323	14-1117	이국진	특가법(절도)	성명불상	1	자전거 (FILA MOTOPOP 22SF)	1
12-4941	12-103	트란꾸억 토란	폭처법(집단 · 흉기등 상해)	이휴타이 (LE HUU THAI)	1	칼(전체 30cn, 칼날 18cm)	1
03-94707	03-3276	안병태 외 2명	사기 등	우병주	1	비디오테이프	1
14-41215	14-1444	권영규 외 1명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1	49CC텍트(적색)	1
				"	2	오토바이 열쇠	1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내지 폐기됩니다.

2014년 8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14 형제 5474	2014 압제 105	이임중	절도 등	성명 불상	1	오토바이 (마이다스 투)	1